

研究報告書 96-11

設計責任保險(共濟)制度의 導入 및
施行方案

金 龍 夏 崔 秉 浩
吳 昌 洙 金 修 三
曹 榮 俊

韓 國 保 健 社 會 研 究 院

제 출 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 귀하

1995년 10월 16일 귀조합과 계약체결한 “설계책임보험(공제)제도의 도입 및 시행방안”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996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연 하 청

研究陣

연구책임자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자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창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수삼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조영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윤병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실장)

원상선 (과학기술처 엔지니어링진흥과 과장)

권상원 (과학기술처 엔지니어링진흥과 전과장)

조규능 (과학기술처 엔지니어링진흥과 서기관)

장훈기 (재정경제원 회계총괄과 서기관)

최광규 (건설교통부 건설기준과 서기관)

머 리 말

第4次 産業으로 불리는 엔지니어링産業은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의 두뇌집약적 산업으로 製造業, 建設業 등과 밀접한 聯關關係를 가지고 여타산업에 상당한 波及效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賦存資源이 빈약하고 상대적으로 고급의 技術人力資源이 풍부한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는 우리경제의 先進化의 선두주자로서 核心産業分野라고 할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타결은 엔지니어링産業에 있어서도 새로운 環境을 조성하고 있다. 市場開放은 국내경쟁기업에 대한 타격이 예상되면서도 동시에 엔지니어링産業의 海外進出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므로 엔지니어링産業에 일대 轉機를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經濟와 物質의 量的인 目的을 추구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나 高度成長過程을 통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最高의 것, 最多의 것을 취득하는 것만이 最優先 目標라는 그릇된 價値觀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줄줄이 이어지는 大型事故의 發生이라는 형태로 對價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過去의 『틀』 아래에서는 더이상 성장할 수 없으며 새로운 價値觀과 質的인 轉換없이 競爭에서 이겨 나갈 수 없다.

엔지니어링産業도 그 동안의 量的인 成長패턴으로는 UR이라는 競爭舞臺에서 이겨 나갈 수 없다는 共同의 認識위에서 새로운 轉換과 각종 제도적인 基盤의 合理的 再定立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러한 선상에서 設計責任保險制度의 도입방안이 검토되어지고 있다. 不實設計라는 암초앞에서 엔지니어링産業을 순항시키기 위해서 각종의 規制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이는 한편으로는 不實設計를 豫防하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엔지니어링産業의 신속적인 技術發展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의 역기능도 우려됨으로 不實設計로 부터 엔지니어링産業을 벗어나게 하면서도 엔지니어링産業이 전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先進的이고 새로운 合理的인 『틀』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本 研究는 엔지니어링産業의 발전을 가로막는 不實設計問題를 사전에 豫防하면서 엔지니어링産業의 創造的인 技術開發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制度的인 『틀』로서 設計責任保險制度의 導入 및 施行方案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基礎研究資料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엔지니어링共濟組合의 研究用役 依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本 研究에서 제시하고 있는 設計責任保險制度의 導入 및 施行方案이 關係專門家の 研究活動에는 물론 政府의 관련 政策樹立과 業務修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金龍夏 副研究委員의 책임하에 崔秉浩 副研究委員, 漢陽大學校 經營學部の 吳昌洙 教授, 中央大 土木工學科의 金修三 教授, 韓國建設技術研究院의 曹榮俊 先任研究員, 本院의 申鉉雄 研究員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들의 구체적인 擔當 研究分野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엔지니어링 産業의 現況과 特性 (金龍夏, 申鉉雄)

國內 不實設計의 現況과 課題 (金修三)

外國制度의 比較研究 (金龍夏)

專門職 責任保險理論 (吳昌洙)

設計責任保險制度의 模型 (金龍夏)

設計責任保險 導入時 關聯制度 改善方案 (曹榮俊, 崔秉浩, 金龍夏)

이 研究報告書를 작성함에 있어 研究陣들은 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위탁하여 준 엔지니어링共濟組合의 申東秀 理事長, 盧弘吉 專務理事, 李德烈 監事에게 감사드리며,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李東洙 企劃部長, 黃仁澤 振興課長에게 감사드리고 있다. 또한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助言과 協助를 해주신 科學技術處 엔지니어링振興課 원상선 과장, 권상원 과장, 조규능 서기관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財政經濟院의 會計總括課 장훈기 서기관, 建設交通部의 建設基準課 최광규 서기관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연구진행 과정에서 生産的인 討論을 해준 本院의 尹炳植 社會保險研究室長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진들은 본 報告書를 읽고 유익한 助言을 주신 本院의 원종욱 責任研究員에게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內容은 어디까지나 著者들의 意見이며 본 研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6年 11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延 河 淸

目次

要約	11
I. 序論	30
II. 엔지니어링 産業의 現況과 特性	32
1.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定義	32
2. 엔지니어링 産業의 主要分野	32
3. 엔지니어링 活動의 特性	33
4.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特性	34
5. 業種 및 分野別 申告業體 現況 및 生産構造	36
III. 國內 不實設計의 現況과 課題	43
1. 不實設計의 現況	43
2. 不實設計의 原因과 政策課題	46
IV. 專門職責任保險理論	59
1. 責任保險契約의 意義	59
2. 責任保險의 分類	60
3. 責任保險의 機能	65
4. 責任保險契約의 要素	67
5. 專門職業賠償責任保險	72
6. 建築士, 技師 專門 賠償責任保險	75
V. 外國制度 比較研究	83
1. 日本의 專門職責任保險	87
2. 美國의 專門家 責任保險	90

3. 프랑스 建築家 共濟組合	98
4. FIDIC의 一般用役 契約書上의 關聯條項	109
5. 國內의 責任保險	116
VI. 設計責任保險制度 模型	126
1. 設計責任保險制度의 定義와 基本構造	126
2. 保險對象	130
3.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	153
4. 保險金	157
5. 保險期間	158
6. 保險料의 算定	162
7. 保險者	167
8. 再保險 및 準備金	168
VII. 設計責任保險制度 導入時 關聯制度 改善方案	171
1. 設計責任 關聯規程	171
2. PLI의 導入時 關聯制度의 改善方案	179
參考文獻	192
EXECUTIVE SUMMARY	195
附 錄	199
附錄 I. LLOYD社의 建設業管理者 專門家 責任保險 申請書	201
附錄 II. 美國建設管理 協會 標準契約書 中 保險關聯 條項	225
附錄 III. 農業協同組合法 關聯條項	246
附錄 IV. 建設技術管理法 關聯條項	250
附錄 V. 專門職 責任保險(監理部門 適用例)	251

表 目 次

〈表 Ⅱ-1〉	技術部門別 엔지니어링 活動主體	36
〈表 Ⅱ-2〉	'94年度 類型別 엔지니어링 受注實績	37
〈表 Ⅱ-3〉	'94年度 技術部門別 엔지니어링 受注實績	38
〈表 Ⅱ-4〉	'94年度 業務範圍別 엔지니어링 受注件數	39
〈表 Ⅱ-5〉	'94年度 代價算定方法別 類型別 受注實績	39
〈表 Ⅱ-6〉	엔지니어링 共濟組合 資本金 規模	40
〈表 Ⅱ-7〉	엔지니어링 共濟組合 組合員 加入 및 出資座數 現況	40
〈表 Ⅱ-8〉	엔지니어링 活動構造의 比較	41
〈表 Ⅲ-1〉	監査院의 國內 公共 工事 類型別 不適定 指摘事項 現況	44
〈表 Ⅲ-2〉	建築物 構造體의 瑕疵原因別 比率	45
〈表 Ⅲ-3〉	日本 國庫補助 土木工事의 不適切한 事項 件數	46
〈表 Ⅲ-4〉	國內 建設業의 國家別 競爭力 比較	49
〈表 Ⅲ-5〉	엔지니어링 分野의 國際 競爭力 比較	50
〈表 Ⅲ-6〉	最高 技術保有國에 대한 技術力 比較	51
〈表 Ⅲ-7〉	우리나라 建設技術 水準의 變化	51
〈表 Ⅲ-8〉	事業活動分野別/業務領域別 엔지니어링 技術水準	52
〈表 Ⅲ- 9〉	既存資料에 의한 技術力 評價 總括	53
〈表 Ⅲ-10〉	設計過失 類型別 細部內容	55
〈表 Ⅲ-11〉	設計關聯 國內外 比較	56
〈表 V- 1〉	外國의 公共土木工事의 實施體制 比較	83

〈表 V-2〉	主要國의 設計保險制度	84
〈表 V-3〉	유럽의 公共事業에 대한 調査設計 管理의 實態	85
〈表 V-4〉	主要國의 保證制度	86
〈表 V-5〉	CM PLI(專門責任保險)를 取扱하는 現行 保險會社들의 比較	95
〈表 VI-1〉	契約當事者에 建設危險의 割當	149
〈表 VII-1〉	新舊法 對照	190

圖 目 次

[圖 II-1]	엔지니어링의 産業上の 位置	35
[圖 VI-1]	設計責任保險制度의 三面構造	127
[圖 VI-2]	保險料率 算定方案	162

要約

I. 設計責任保險(共濟)制度의 基本方向

○ 保證制度의 限界性

-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保證發行機關으로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설계책임보험과 관련있는 보증업무로는 瑕疵擔保 責任保證制度가 있으며, 이는 최종의 완성품에서 발생한 계약과 상이한 하자에 대한 보증임.
- 현재의 보증제도는 發注段階에서 설계자와 발주자간의 책임배분 조정(설계자의 업무범위 및 책임관계), 설계자의 계약 채무불이행 책임 설정, 발주자의 입찰 계약시 설계보증 의무가입요구 등의 제도부재로 인해 동보증상품개발의 필수조건인 事故 類型 및 責任範疇의 設定이 어려운 상태임.
- 특히 설계보증제도는 보증신청시 업계내에서의 보증인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고발생시 엔지니어링사의 連鎖不渡 現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특히 보증의 경우 보증자가 보증신청인에게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책임담보제도라고 할 수 없음.

〈表 1〉 유럽의 公共事業에 대한 調査設計 管理의 實態

영국	프랑스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ter plan의 작성 및 설계의 기본조건 결정은 발주자가 담당하고, 설계업무(예비·상세·실시)는 컨설턴트에 위탁한다. 다만 실시설계는 Contractor가 하는 경우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ter plan의 작성 및 설계의 기본조건 결정, 예비설계는 발주자가 담당하고, 상세설계, 실시설계는 컨설턴트에 위탁한다. 다만 실시설계는 Contractor가 하는 경우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ter plan의 작성 및 설계의 기본조건 결정은 발주자가 행하나, 기획·입안·설계업무(예비, 상세, 실시)는 발주자가 실시하거나 컨설턴트에 위탁한다. 다만 실시설계는 Contractor가 행하는 경우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조사는 Chartered Eng.라고 하는 컨설턴트의 유자격자가 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조사 및 최종검사는 발주자의 기술자가 실시한다. 다만 공사의 규모가 크거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조사는 통상 발주자의 기술자가 행하나, 그 경우에는 조사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법령의 구조물조사제도라고 하는 자격의 보유자가 조사를 행하는 경우도 있다(특히 교량구조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9000시리즈에 의거한 품질관리가 행해지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품의 최종검사는 발주자의 기술자가 실시한다. 다만 교량 등은 조사기술자가 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턴트의 하자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배상보험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턴트의 하자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배상보험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턴트의 하자책임이 있고, 그에 대하여 배상보험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품의 최종검사는 발주자(경우에 따라서는 제3의 컨설턴트)가 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의 평가는 점수제가 아니고 코멘트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결과의 공표는 하지 않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의 평가는 실시하고 있으나 결과의 공표는 하지 않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의 평가는 점수제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결과의 공표는 하고 있지 않다.

資料: Sakai Yoshikazu, 『유럽의 공공사업에 있어서의 감독·검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 『엔지니어링』,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1995, 12, pp.4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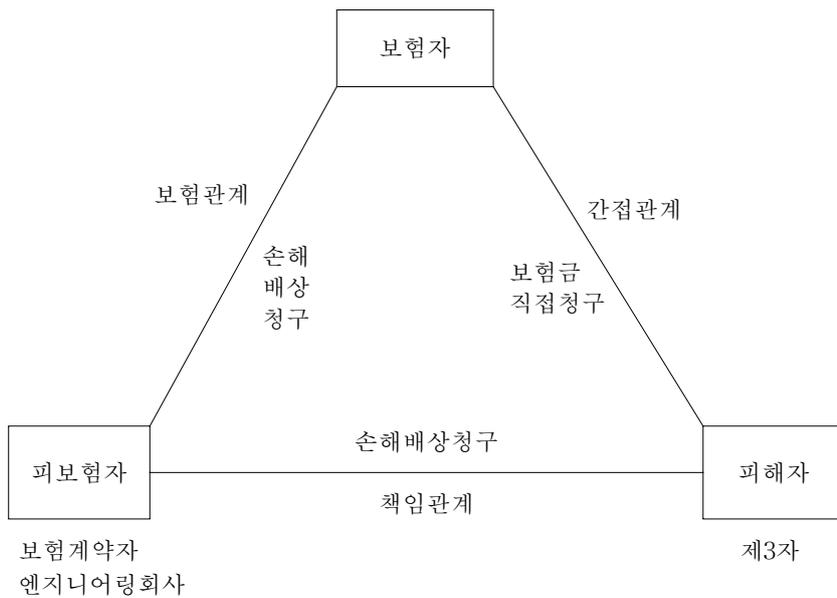
- 主要 先進國에서는 公共工事의 不實을 豫防하기 위하여 設計段階부터 嚴格한 管理를 하고 있음.
- 영국, 프랑스, 독일의 설계단계에서의 관리행태는 <表 1>과 같으며, 특히 3개국 공통적으로 설계자에 대한 賠償保險制度가 활용되고 있음.
- 專門責任保險의 導入現況
 -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발주한 가양대교 신설공사와 성수대교 복구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감리회사가 專門責任保險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LI)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전문책임보험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設計責任保險制度의 導入
 - 국내에서 설계업무의 수행중 직업상 상당한 주의 업무를 게을리 함에 따라 당해 설계업무의 대상이 된 완성품에 멸손 또는 훼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사고에 기인하는 타인의 身體障害(사망 포함) 혹은 財物損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設計責任保險制度를 도입함.
- 共濟制度로 導入하되 長期的으로 保險制度로 轉換
 - 보험과 공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공제의 경우 보험에 비하여 加入의 範圍가 制限的이지만, 보험과 공제는 그 목적이나 기능에 있어서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保險과 共濟의 차이점으로는 첫째, 공제는 수익이 발생하면 공제 조합원에게 배당됨으로 보험에 비하여 保險料率이 낮아질 수 있으며, 둘째, 보험은 보험자가 求償權을 행사할 수 없는 반면, 공제는 공제자가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어 대형위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재보험에 의하여 위험을 분산시켜야 하나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를 기피할 수 있다는 것 등임.
 - 설계책임보험제도의 도입시 시행초기에는 보험사고 관련 통계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보험료의 산정과 보험자의 危險分散機能이 극히 제한적으로 될 수 밖에 없음.
 - 이때, 보험으로 시행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선결이 요구되나, 공제로 시행할 경우에는 공제업무에 따른 손익이 조합내에서 危險分散되므로 공제사업 초기에 있을 수 있는 통계의 제약에 따른 보험료율 산정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제의 형태로 도입하되, 관련 보험사고통계가 축적되는 등 보험시행 여건이 조성되면 보험의 형태로 轉換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設計責任保險制度의 基本構造
- 설계보험계약도 사적 경제주체가 당사자로 되어 체결하는 保險契約이므로 그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 설계책임보험제도의 법률관계를 보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책임보험계약 관계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가 제3자로서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논리구조상으로는 다음의 [圖 1] 과 같이 보험자(보험회사, 엔지니어링공제조합)·피보험자(엔지

니어링회사)·피해자간에 기본적으로 각각 三面의 法律關係를 형성하고 있음.

- 설계책임보험제도의 三面構造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인 가해자(엔지니어링 회사)와 제3자인 피해자간에 손해배상의 책임관계가 성립하고, 보험계약자(가해자-엔지니어링회사)와 보험자간에는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保險契約關係가 성립함.

[圖 1] 設計責任保險制度의 三面構造



Ⅱ. 設計責任保險制度의 導入方案

1. 保險對象

- 保險對象으로 設計業務段階 中 어떤 範圍까지 包含하여야 할 것인지를 決定하여야 할 것임.
 - 현재 建設교통부에서는 建設공사에 對한 監理保險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最近에 發주된 公公공사에서 監理者 責任保險을 적용시킨 바 있는 만큼 監理보험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별도로 추진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 監理업무를 포함한 모든 설계분야를 설계책임보험제도의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建設교통부 等 相關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基本設計와 實施設計항목만을 公제항목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保險範圍는 원칙적으로 契約에 訂하여진 範圍내에서 보장이 될 것이나 피보험자의 無過失 責任, 중차대한 과실이 아닌 過失責任이 보험의 범위에 포함될 것임.
- 一般的으로 保險範圍에서 適用除外되는 것은 다음과 같음(프랑스의 설계자 책임보험 참고).
 - 피보험자가 協約이나 契約에 의해 認定하는 責任에 한하며 자신이 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에 의해 이행되지 않은 행위

- 피보험자의 故意的인 行爲에 의해 일어난 재해
 - 형법상의 행위에 부수되는 범칙금
 - 관리행위, 일반적으로 商業的인 性格을 띠는 모든 행위
- 또한 保險의 例外條項으로 保障되지 않는 것으로서는 다음의 것이 있음.
- 火災나 爆發이 피보험자의 책임을 요하는 사실로부터 나온 결과일 경우
 - 광산개발로 인한 地層의 움직임
 - 지진, 홍수, 폭풍, 태풍, 해일이나 기타 지각변동 등의 天災地變的인 특성을 나타내는 자연현상들
 - 內戰, 暴動이나 國民蜂起 등 재해
 - 폭발, 열의 방출, 원자핵이나 방사능 전환으로 인한 放射災害, 또는 분자의 인위적 가속으로 발생하는 放射能 影響으로 인한 災害
- 工事保險과의 關係
- 관련 손해보험으로서의 공사보험은 설계-시공-감리의 프로젝트 과정 중 工事段階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설계책임보험은 設計段階 혹은 監理段階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됨.
 - 따라서 설계책임보험과 공사보험간에 보험영역이 중복되지는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영역이 조정될 수는 있음.

업무영역	설계단계	시공단계	감리단계
	↑	↑	↑
보험영역	설계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설계책임보험 (감리)

○ 保險事故 發生時 事故責任所在를 調査하고 判定할 紛爭審査委員會 (假稱)가 만들어져야 할 것임.

- 분쟁위원회는 법원의 1심판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임.

2.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

○ 保險契約者의 形態

- 보험계약자는 설계자(엔지니어링회사)가 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사업추진형태에 따라서는 설계자 單獨, 設計·施工者, 設計者 팀이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음.
- 한편 설계자와 발주자의 共同責任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설공사보험과 마찬가지로 발주자가 설계자와 함께 付保할 수도 있음.
- 피보험자는 設計者가 될 것임.

○ 任意制度 혹은 強制制度

- 설계책임보험은 원칙적으로 任意保險形態를 띠겠지만, 국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책임보험제도의 가입을 義務規程으

로 정함으로써 보험제도가입을 결과적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갖도록 함. 이를 위해 國家契約法과 技術用役契約一般條件 등 관련 법령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保險對象 範圍(建設業 : 全分野)

- 가입의 범위를 현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범위를 확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 검토를 15개 분야별 및 93개 專門分野別로 검토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보험대상 범위에서는 가입대상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짐. 먼저 국가계약법상에 손해보험에의 가입이 義務化되어 있는 계약대상을 중심으로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대상을 점차 확대시킴.

3. 保險金

○ 保險金 支給要件은 設計者의 專門的 責任에 起因하여 發生한 第3者를 包含한 損害에 대하여 클레임(損害賠償請求) 提起時 保險金 限度內에서 支給함.

○ 有限 : 無限

- 설계책임보험제도는 有限保險이 되어야 할 것임. 그 이유는 첫째, 완성품의 규모에서 설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5~15% 정도로 작다는 점, 둘째, 사고발생시 損害賠償하여야 할 금액이 設計技術用役에 대한 總代價 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 등임.

- 설계책임보험금은 件當 限度와 累積 限度를 두어야 할 것이며, 보험가입금액은 총 용역대가를 상한으로 하는 방안과 설계용역대가를 포함한 당 완성품의 총 비용을 상한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保險의 範圍(對人 : 對物 : 包括)
 - 설계책임보험제도는 피보험자가 타인의 生命·身體·財產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현재 包括保險形態는 그 배상의 객체가 對人·對物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해상보험, 건설공사보험, 개인 또는 기업의 종합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음.

4. 保險期間

- 保險期間은 瑕疵擔保 責任期間과 一致시키는 方案과 瑕疵擔保 責任期間 보다 延長시키는 方案이 檢討될 수 있음.
 - 민법상의 책임기간과 국가계약법상의 책임기간 중 기간이 긴쪽을 보험책임기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民法上の 責任期間
 - 擔保責任期間의 起算點: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은 目的物의 引導日임. 「工事契約一般條件」에서는 검사를 필한 날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민법과는 상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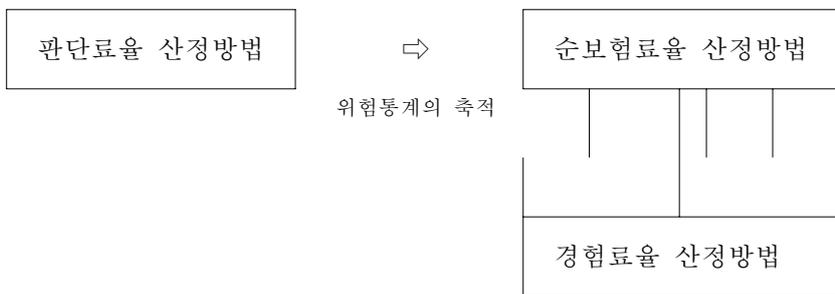
○ 「國家契約法」上の 責任期間

- 擔保責任期間의 起算點: 「國家契約法」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날임. 여기서 인수일은 발주처의 계약관리측면을, 민법상의 인도일은 시공자의 측면을 표현한 것이며 양자간 차이는 있을 수 없음.
- 責任期間: 「國家契約法」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總理令이 工種別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5. 保險料

○ 保險料率 算定方法

- 초기에는 判斷料率 算定方法에 따르고, 관련 위험통계가 축적되면 순보험료율로 전환하되 經驗料率 산정방법을 사용하여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保険料 負擔方法

- 설계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발주처가 대가를 지급하고 정산처리(제1안)하는가, 아니면 계약자가 대가의 일부분으로 처리(제2안)하는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설계책임보험제도에 대한 보험료는 발주자가 직·간접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발주자가 경비항목에 명시하여 직접 부담하는 형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설계용역에 따른 예상되지 못한 위험에 대한 分散費用도 설계용역원가에 명시적으로 산입토록 하여 엔지니어링회사의 經營合理化를 유도하여야 하기 때문임.

○ 保険料 費用算入 方案

- 人件費에 包含시키는 方案: 정부부문에서 지급하는 대가에 수급인의 작업위험을 고려하여 産災保險料를 인건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료를 계상하지는 않음. 즉, 인건비에 보험료의 비용을 계상하는 것은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用役關聯 代價基準 혹은 豫定價格 作成準則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技術料 등에 包含시키는 方案: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기술료는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技術蓄積을 위한 대가를 말하고 있어 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보험료를 기술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技術料에 보험료를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 기술료의 정의에 대한 補完作業이 필요함.

6. 保險者

- 設計責任保險制度의 保險者는 크게 두 가지 方向으로 論議될 수 있음.
 - 첫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保險者로서의 役割을 수행하는 방안임. 이 방안은 ① 현재 설계관련 위험에 대한 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② 본 보험제도의 추진의도가 公共工事의 不實設計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만큼 公共性이 강하다는 점, ③ 공제조합이 할 경우 보험금 이외의 경비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점(이윤을 남기지 않음) 등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一般 私保險會社에서 상품을 개발하여 인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현재 삼성화재보험에서 이미 專門家 責任保險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판매실적은 없음. 경쟁을 통한 보험상품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점에서는 사보험 시장에서 自由競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설계책임보험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분간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單獨 保險者로 하되, 장기적으로 사보험시장에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보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與件造成과 能力培養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임.

7. 準備金

- 保險者が 保險契約者を 對象으로 한 原保險契約을 순조롭게 締結하기 위해서는 保險者が 引受하는 危險에 對備하여 充分한 準備金の 確保가 必要함.
- 현재 건설공제조합 등이 行하고 있는 보증업무가 보증사고의 發生으로 危기에 처해 있는 사례를 볼 때, 保險者の 健實性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금의 확보가 필수 불가결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일정한 責任準備金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자의 담보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出 연금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재보험에의 가입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Ⅲ. 施行을 위한 關聯法令 改正方案

○ 國家契約法 施行令(제53조)의 檢討

- 第53條(損害保險의 加入)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第53條의 의미를 해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발주자가 가입의 주체로 되어 있으며 임의조항임.
 - 당해계약의 목적물의 범위가 문제시 될 수 있으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6조 제1항에서는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설계책임보험의 대상범위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음.
 - 손해보험이 공사보험만을 한정적으로 의미하는 것인가 혹은 포괄적으로 해석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따라서 國家契約法 施行令 第53條는 설계책임보험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본 내용을 설계책임보험제도 도입의 根據事項으로 삼는 데는 문제가 없으므로 본시행령을 개정하기 보다는 그 하위 규정인 技術用役 一般條件을 개정하여 설계책임보험제도에의 가입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技術用役契約 一般條件 改正(제○조 제1~6항 設計責任保險(共濟) 新設)

- 제1항: 계약상대자는 施行令 第78條(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계약 중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한 공사) 및 시행규칙 제23조(입찰참가 사전자격심사 및 부대입찰의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設計責任保險(共濟)制度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항: 계약목적물에 대한 保險(共濟)加入金額은 건당한도와 누적한도액을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 제3항: 設計責任保險(共濟)制度의 가입은 설계 시작이전에 하여야 하고 保險(共濟)期間은 당해 공사착공시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로 하되 공종별로 별도로 정하며, 被保險(共濟)자는 발주관서, 계약상대자 및 기타 설계와 관련있는 자로 한다.
- 제4항: 계약상대자는 설계책임보험(공제)제도가입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공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항: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의 設計責任保險(共濟)制度和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保險(共濟)約款과 당해 설계기술용역의 특성,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관서·계약자·보험(공제)사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6항(保險(共濟)에 加入된 境遇의 特例): 업무상 과실로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1의 1항과 2항 각호의 죄를 범한 자가 엔지니어링 진흥법 제○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책임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2의 벌칙을 설계부분에 한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엔지니어링사업의 代價基準 改正

-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 항목중 직접경비에 구체적으로 포괄일반보험료를 명시하고, 기술료에서는 보험료를 명시하는 방법이 있음. 이 경우 기술료에 있는 보험료는 실비를 계산하는 것으로 명시할 수 있음.
- 第15條(直接經費):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말한다), 책임보험(공제)료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그 실비를 계산한다.
- 第17條(技術料): 기술료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책임보험(공제)료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단, 보험료의 경우 실비를 계산한다.

○ 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令의 改正與否 檢討

- 법 제13조 2항 7의 「組合員의 倒産防止를 위한 保險」조항이 設計責任保險(共濟)制度의 근거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設計責任保險(共濟)制度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 개정없이도 현행 제13조 2항의 7을 근거조항으로 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됨.

- 共濟制度導入을 위한 施行規則의 改正
 - 공제사업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공제료에 관한 사항,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제정함.
 - 法 第16條 3항 追加: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共濟事業 施行規則 制定時 記載事項
-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① 공제사업의 범위·종류, 피공제자, 공제목적과 공제계약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 ② 공제금액 및 공제기간에 관한 사항
 - ③ 공제계약의 체결절차에 관한 사항
 - ④ 공제료의 수납·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 ⑤ 공제금액, 공제사업의 종류와 보험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 ① 공제금의 지급사유
 - ② 공제계약의 무효원인
 - ③ 공제자의 면책사유
 - ④ 공제자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 ⑤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받는 손실
 - ⑥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의 원인과 해지할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

- 공제료에 관한 사항
 - ① 예정사고율 또는 예정사망률에 관한 사항
 - ② 예정사업 비율에 관한 사항
 - ③ 예정이율에 관한 사항
 - ④ 공제료(부가공제료·위험공제료 및 적립부분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 ⑤ 미수공제료의 계상범위 및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책임준비금 기타 준비금에 관한 사항
 - ① 책임공제사업에 있어서는 미경과 공제료적립금과 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 ② 장기공제사업에 있어서는 공제료적립금·미경과 공제료적립금 및 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 ③ 계약자배당준비금에 관한 사항
 - ④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 재보험(재공제)에 관한 사항

I. 序 論

최근 대형교량의 붕괴, 지하철공사 부실, 대형아파트공사의 부실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전반적 제도개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公共工事に 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93)』에 의하면 유형별 부실요인중 설계 부적정이 40.9%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設計成果 品質向上 對策이 요구되고 있는 바,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不實設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不實設計에 따른 책임소재의 명료화가 요구된다. 즉, 계약체결시 發注者·設計者·施工者間의 부담책임 약정의 누락으로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의 책임주체가 불명확하게 되어 설계자에게 의한 손해액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損害賠償能力의 확보대책이 필요하다. 設計瑕疵에 의한 책임이 판명된다 하여도 설계업자의 영세성으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기 힘든 상황이며, 현행 보증금납부제도는 설계부실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장치로서는 미흡하다. 특히 설계부실여부가 설계완성후 상당기간 경과후에 판명될 경우에 대비한 손해배상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셋째, 技術用役契約 一般條件에서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의무이행에 따른 각종 保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부실한 설계로 인하여 발주기관 등에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기술용역업자에게 손해액을 구상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엔지니어링사의 技術革新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국제적 규범에 준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내 엔지니어링시장의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국제규범의 틀속에서 政府契約制度의 先進化, 契約書의 標準化 등 관련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며, 엔지니어링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 혁신대책이 필요하다. 개발된 신기술의 응용에 따른 높은 위험부담으로 경제성보다는 安全性 위주로 설계를 지향하여 엔지니어링 기술혁신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設計不實에 따른 損害賠償制度의 도입시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필요하나 관련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현행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보증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專門職責任保險制度, 프로젝트보험제도, 保證制度 등 각국의 전문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증보험제도의 실시와 관련된 기초자료 연구(기술인력, 기술분야 및 수준, 업체 현황, 사고발생사례 등),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형 검토, 발주자·설계자간, 설계·시공·감리간의 책임한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本 研究의 目的은 市場開放에 대비하여 엔지니어링 산업의 技術革新을 促進하고 설계하자 손해액배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設計責任保險制度의 導入方案을 연구함으로써 엔지니어링 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데 있다.

本 研究에서는 設計責任保險制度 관련 법규 및 문헌 연구, 설계책임공제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엔지니어링 산업 및 설계 관련 위험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주요국의 설계책임공제 자료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I장의 서론에 이어 II장에서 엔지니어링 산업의 현황과 특성을, III장에서는 국내 부실설계의 현황과 과제를, IV장에서는 외국 제도 비교연구, V장에서는 전문직책임보험이론을, VI장에서는 설계책임보험제도 모형, VII장에서는 설계책임보험제도 도입시 관련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II. 엔지니어링 産業의 現況과 特性

1.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定義

엔지니어링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사업관리등의 활동(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2조)을 의미한다.

2. 엔지니어링 産業의 主要分野

가. 妥當性 調査

한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한 대체안을 조사하고 모든 기술면을 재검토하며 비용과 편익의 경제적 평가를 하는 단계이다.

나. 設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으며 기본설계란 구체적 설계조건이 정해지고 건설에 필요한 사업 및 사업물의 기본적 제성질 및 재원을 결정하는 단계를 말하며, 실시설계란 구체적인 설계조건이 주어진 기본설계를 기초로 생산면, 조직면, 환경면, 보전면, 건설면에 필요한 도면, 시방서 등 전반적인 세부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다. 監理

시공계획 및 공정표, 시공도면, 품질 및 규격관리 시험성과, 구조적 안전, 설계도면의 변경, 사용자재의 적합성, 공정, 기성고 및 준공도 검토,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의 작성, 기계장치의 검정 등의 업무단계이다.

라. 試運轉

건설공사 종료후 성능달성여부, 생산운전시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 입회하에 유용성의 운전, 본 공정의 부분 운전, 시제품 생산·설비부하의 확대, 연속보증운전 등의 업무단계이다.

마. 事業管理

사업의 여러단계의 각종업무를 종합조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관리업무를 말하며 다종다양한 일의 통합, 인정, 가격, 인원투입, 시방 등의 균형적조정, 각분야 전문가의 조직화에 의한 협력체계의 결정, 전체업무의 통합조정 등의 업무단계이다.

3. 엔지니어링 活動의 特性

엔지니어링 활동이란 지식을 재료로 하고 인간의 창의력, 판단력, 종합력을 도구로 해서 效用의 創出能力이 있는 유형의 장치 또는 설비를 생산하고자 하는 제반활동으로 감사적 측면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엔지니어링의 本質에서 비롯되는 특성으로서는 원가산정의 곤란성, 과정 및 결과평가의 곤란성, 비용 및 효과분석의 곤란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의 감사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건설업의 경우 綜合化 趨勢가 강화되면서 시공과 용역의 업역 구분이 없어지고 양부문간에 연계와 피드백 효과를 극대화하여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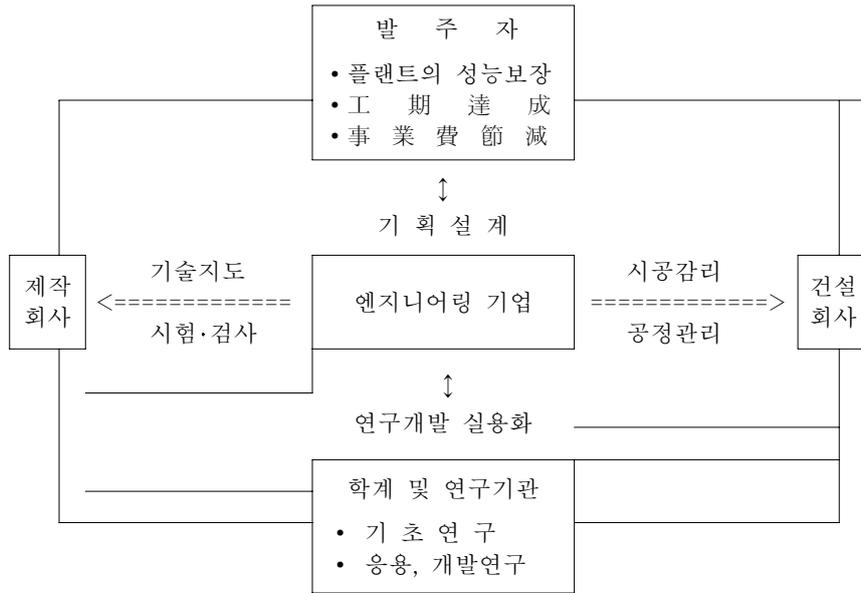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用役과 施工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설계도서의 시공성 결여, 산업구조의 비효율성, 생산성의 저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대형화·전문화·계열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개편이 요구되고, 또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의 체질강화를 위해 영·미형과 같이 독립된 기술조직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技術力 向上을 유도할 수 있다.

4.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特性

엔지니어링서비스 산업은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의 소프트웨어적 특성과 하드웨어적 특성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圖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개발 기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과의 밀접한 연관과 함께 학계 및 연구기관들과의 기술교류도 활발하다.

엔지니어링서비스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發注者의 요청에 따라 학계, 연구기관과 협조하여 프로젝트를 기획·설계하고, 필요기자재 생산회사의 지도 및 물품의 시험·검사를 행하며, 施工者의 시공감리, 공정감리를 통해 성능이 우수한 시설물을 구축하는 일로 규정할 수 있다. 비록 엔지니어링은 시스템건설비의 약 5~10% 대가에 불과한 업무이지만 기술, 경험 등 노하우의 유기적·종합적 활용을 통하여 시스템의 기초가 되고 관련부문의 효율성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

[圖 II-1] 엔지니어링의 産業上 位置



이밖에도 엔지니어링 서비스산업을 타산업과 비교하여 보면, 기존의 ‘기술용역육성법’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할 것을 기반으로 하여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의 대응력을 제고시키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며 엔지니어링 기술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관련 단체의 설립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다.

5. 業種 및 分野別 申告業體 現況 및 生産構造

가. 業種 및 分野別 엔지니어링 産業現況

엔지니어링 活動주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表 II-1>과 같이 총업체 900개사 중 專業業體 522개사, 兼業業體 247개사, 全擔部署 131개사이며, 엔지니어링활동을 주된 영업수단으로 하는 전업체 및 겸업체는 769개사로 전체의 85.4%, 엔지니어링활동을 주된 영업수단으로 하는 전담부서¹⁾는 131개사로 14.6%를 차지하고 있다.

<表 II-1> 技術部門別 엔지니어링 活動主體('95年 12月)

주된 기술부문	전업회사	겸업회사	전담부서	합계
기계	42	19	17	78
전기전자	24	10	6	40
통신정보처리	60	53	18	131
화학	7	3	5	15
건설	321	81	76	478
환경	2	8	4	14
응용이학	58	69	2	129
기타	8	4	3	15
합계	522	247	131	900
'94년 합계	444	195	122	761
'93년 합계	302	107	60	469

資料: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업무편람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업체 900개사를 기술부문별로 살펴보면 建設部門이 478개사(53.1%), 通信情報處理部門이 131개사(14.5%), 應用理學部門이 129개사(14.3%), 機械部門이 78개사(8.6%)의 순으로 나타

1) 전담부서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기 위한 기업내에 설치된 대부분 대기업내의 엔지니어링 부서로서 기업내부(In-house)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나고 있다. 기술부문중 건설부문은 전업회사가 전체 전업회사의 61.5%를 차지하는 반면 겸업회사는 32.8%를 차지해 건설부문의 회사는 전업업체가 월등히 많음을 보여주었고, 응용이학부문은 반대로 겸업회사 형태가 많았다.

1994년도 類型別로 본 엔지니어링 수주실적을 보면 <表 II-2>에서와 같이 전업업체의 수주규모는 9,898억원(62.0%), 겸업업체는 4,211억원(26.4%), 전담부서는 1,850억원(11.6%)으로 총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수요규모는 약 1조 6천억원이며 이 중 전업업체와 겸업업체가 수주액의 88.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의 수주실적을 비교해보면 국내시장의 수주규모는 약 1조 4,253억원이며 해외시장 수주는 1,705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엔지니어링회사 類型別로 국내·외 수주 실적을 비교해보면, 업체수가 겸업업체보다 적은 전담부서가 해외실적에 있어서는 겸업업체보다 월등히 많음을 보여주어 전담부서가 해외수주에 있어서는 실적이 좋을 수 있다.

<表 II-2> '94年度 類型別 엔지니어링 受注實績

(단위: 백만원, %)

유형	업체수	국내		해외		합계		해외 구성 비율	구성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업업체	406	14,277	891,924	80	97,842	14,357	989,766	9.9	62.0
겸업업체	168	5,033	399,718	23	21,374	5,056	421,092	5.1	26.4
전담부서	76	984	133,699	28	51,314	1,012	185,013	27.7	11.6
합계	650	20,294	1,425,341	131	170,530	20,425	1,595,871	10.7	100.0

資料: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업무편람

한편 技術部門別로 수주현황을 살펴보면, 건설부문이 7,872억원(49.3%), 화학이 1,860억원(11.7%), 전기전자 1,485억원(9.3%), 기계부

분이 1,216억원(7.6%), 통신정보처리부문이 1,213억원(7.6%)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화학부문은 업체수가 전체 1.5% 밖에 되지 않지만 해외 수주실적이 많아 수주실적에서는 전체 11.7%를 차지하고 있다(表 II-3 참조).

화학부문은 해외수주에 있어서 국내 건수보다 건수면에서는 적으면서 수주금액이 더 많은 점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해외비율도 56.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건설부문은 건수면에서나 해외비율면에서나 해외실적이 저조하다.

〈表 II-3〉 '94年度 技術部門別 엔지니어링 受注實績

(단위: 백만원, %)

유 형	업체수	국내		해외		합계		해외 구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비율
기 계	100	1,414	120,200	12	1,378	1,426	121,578	1.1	7.6
전기전자	84	594	134,599	34	13,854	628	148,453	9.3	9.3
통신정보 처 리	115	926	120,011	11	1,268	937	121,279	1.0	7.6
화 학	30	173	80,902	40	105,100	213	186,002	56.5	11.7
건 설	1,340	12,377	778,650	15	8,515	12,392	787,165	1.1	49.3
환 경	106	396	53,618	1	5	397	53,623	0.0	3.4
응용이학	149	3,848	118,906	3	704	3,851	119,610	0.6	7.5
기 타	23	566	18,452	15	39,705	581	58,157	68.0	3.6
합 계	1,947	20,294	1,425,342	131	170,529	20,425	1,595,871	10.7	100.0

資料: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업무편람

1994년도 業務範圍別로 본 엔지니어링 수주건수는 상세설계가 10,272건(37.5%)이고, 시험 및 조사가 4,894건(17.9%), 기본설계가 4,730건(17.3%), 기본계획, 평가분석전문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基本設計와 詳細設計를 합한 설계부문은 15,002건으로 전체 54.8%에 달하여 업무범위별 엔지니어링 수주 건수에 있어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

〈表 II-4〉 '94年度 業務範圍別 엔지니어링 受注件數

일련번호	업무범위	건수	비율(%)
1	기본계획	2,000	7.3
2	타당성조사	984	3.6
3	기본설계	4,730	17.3
4	상세설계	10,272	37.5
5	평가분석전문	1,437	5.3
6	구매진달	427	1.6
7	시험 및 조사	4,894	17.9
8	감리	602	2.2
9	시운전	468	1.7
10	지도	111	0.4
11	유지보수	564	2.1
12	사업관리	254	0.9
13	기타	618	2.3
계		27,361	100.0

資料: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업무편람

〈表 II-5〉 '94年度 代價算定方法別 類型別 受注實績

(단위: 백만원)

유형별		실비정액 가산방법	공사비 비율방식	일괄지급	혼합방식	계
전업업체	건수	3,247	3,775	5,369	1,972	14,363
	금액	301,203	338,323	275,668	75,135	990,331
겸업업체	건수	943	955	2,205	953	5,056
	금액	143,872	91,600	155,945	29,673	421,092
전담부서	건수	305	355	302	44	1,006
	금액	39,546	106,099	33,508	5,293	184,447
계	건수	4,495	5,085	7,876	2,969	20,425
	금액	484,622	536,022	465,122	110,103	1,595,871

資料: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업무편람

代價算定方法別 類型別 수주실적을 볼 때 건수는 일괄지급방식이 가장 많은 반면 수주금액에 있어서는 공사비 비율방식이 많고, 다음으로

실비정액가산방법이 많은 것을 보여진다. 한편, 건수는 一括支給이 다른 방식보다 많으면서 수주금액은 적은 것으로 보아 수주금액이 적은 경우에 일괄지급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엔지니어링 共濟組合의 現況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자본금 규모는 아래 <表 II-6>과 같이 자본총계는 157억원상당에 자본금이 121억원 정도이다.

<表 II-6> 엔지니어링 共濟組合 資本金 規模('94. 10月 現在)

(단위: 백만원)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15,669	12,098	1,459	2,112

資料: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내부자료

<表 II-7> 엔지니어링 共濟組合 組合員 加入 및 出資座數 現況('94. 11月 現在)

업종	조합원수	출자좌수	비율(%)
계	768	120,598	100.0
전업업자	506	80,714	66.9
겸업업자	163	26,339	21.9
전담부서	99	13,545	11.2

資料: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내부자료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조합원²⁾수와 출자좌수는 전업업체가 66.9%를 차지하고, 겸업업체는 21.9%, 전담부서는 11.2%를 차지하고 있다.

2)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엔지니어링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조합에 100좌 이상 출자한 자, 단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는 50좌 이상 출자한 자(1좌당 출자지분액: ₩127,206)임.

다. 엔지니어링 産業의 生産構造

엔지니어링산업의 생산구조는 <表 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주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시공자의 3자 관계로 되어 있는 『英·美型』과 발주자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2자 관계로 되어 있는 『歐洲 및 日本型』으로 구분할 수 있다.

<表 II-8> 엔지니어링 活動構造의 比較

영·미형	구주·일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엔지니어-시공자의 3자 관계(엔지니어링 관계)가 기본 · 엔지니어는 발주자의 내부엔지니어인 경우도 있지만, 독립한 컨설턴트와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시공자의 2자 관계(갑을관계)가 기본 · 발주자, 시공사 각각이 다수의 엔지니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英·美型의 특징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프로젝트의 발굴, 타당성조사, 계획, 경제성분석, 설계, 입찰수속, 공사감리 등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일련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발주자와 시공사간의 公正과 公平을 기하고 프로젝트를 적정하게 추진하는 자로서의 위치를 부여

받고 있다.

歐洲·日本型の 特徵은 조사, 계획, 설계가 주된 업무이며 기획, 입안은 발주자가 담당하는 업무로서 발주자와 협력관계의 성격이 강하며 프로젝트의 추진에 있어서 독립된 조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發注者の 協力組織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歐洲·日本型和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Ⅲ. 國內 不實設計의 現況과 課題

1. 不實設計의 現況

우리나라 不實 設計의 實態를 분석하는 연구는 희소한 실정이다. 그러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국내 공사 추진 관행이 「調査·設計」보다는 「施工」 중심적인 집행 체제를 선호하여 설계에 관한 자료 수집에 소홀하여 왔다.

둘째, 공기를 단축하고 성과 지향적인 사업 집행 절차 등에 의해 設計 段階가 過小 評價되거나 시공과 병행되는 사례들이 허다하여 설계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 쉽지 않았다.

셋째, 부실한 사전 계획과 정치적 또는 사회적 압력에 의한 잦은 설계 변경 요건의 발생이 설계자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여 설계 상의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장애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설계를 뒷받침하는 「設計 能力」 또는 「技術 水準」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 체계와 실적을 갖지 못하여 설계 자체가 구조적으로 부실 요인을 잉태하고 있음을 간과하여 왔다.

다섯째, 「設計」라는 서비스 概念에 대한 理解가 不足하여 단순 가격 경쟁 중심의 시장 운영이 설계의 질적인 수준 제고를 불가능하게 조장해 왔으며 이로 인하여 설계 부실 요인을 평가하는 데 부정확성을 유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실설계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분석, 대한건축학회의 분석과 일본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韓國建設技術研究院의 分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986. 1. 1.~1993. 6. 30.까지 감사원이 실시한 공공 공사 감사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그 실태를 제공하고 있다(이태식 외, 1993).

<表 III-1> 監査院의 國內 公共 工事 類型別 不適合 指摘事項 現況

유형별	토목		건축		설비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계획 및 제도부적정	274	15.1	66	9.8	164	14.0	504	13.8
설계 부적정	799	44.1	258	38.5	437	37.2	1,494	40.9
계약 부적정	106	5.9	76	11.5	104	8.8	286	7.8
부당시공	473	26.1	206	30.7	266	22.6	945	25.8
시공관리 부적정	110	6.1	39	5.8	132	11.2	281	7.7
기타	49	2.7	26	3.9	72	6.2	147	4.0
계	1,811	100.0	671	100.0	1,175	100.0	3,657	100.0

상기 분석에 의하면 설계 부적정에 의한 요인이 전체의 40.9%로서 제일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土木工事에서 설계가 부적정한 상태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위에 나타난 설계 부적정 지적사항에는 설계구성 각 내용별로 부실내용이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정밀한 부실요인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예: 현장조사, 구조계산, 견적, 공법 등).

나. 大韓建築學會의 分析

대한건축학회는 1978~1990년까지 국내 주요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건물 구조체의 하자보강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대한건축학회, 1992).

〈表 III-2〉 建築物 構造體의 瑕疵原因別 比率

하자 원인	비율(%)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	57.4
설계서에 관한 사항	23.0
시공에 관한 사항	19.6

위에서 제시한 하자원인별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構造計算에 관한 사항: 설계하중의 잘못 산정
지반조사 미비로 인한 구조해석 잘못
- 設計書에 관한 사항: 시공하기에 부족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 施工에 관한 사항: 재료(콘크리트, 강재, 철근 등)의 강도 부족

따라서 본 분석은 하자발생 구조물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지만 전체의 80% 정도가 설계부실이 주요인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다. 日本의 事例

일본 경제조사회가 1980년부터 1990년까지 국고보조 토목공사에 대한 부적절한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는 바 이를 통하여 일본의 실태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일본경제학회, 1992:20~21).

〈表 III-3〉 日本 國庫補助 土木工事의 不適切한 事項 件數(1980~1990年 合計)

기능별	부적절 건수	비율(%)
계약 부적절	8	5.4
공사 설계 부적절	39	26.2
설계과다 및 적산과다	37	24.8
공사 시행 부적절	4	2.7
공사 시공 불량	50	33.6
사업미실시 및 일부 미실시	6	4.0
기타	5	3.3
계	149	100.0

상기 자료에 의하면 설계관련 부적절한 사항이 약 51%에 달하고 있어 일본에서도 설계 부적절문제가 정부지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不實設計의 原因과 政策課題

가. 不實設計의 原因

부실설계의 원인으로는 크게 설계에 관한 制度上的 問題, 設計 技術力의 劣勢, 不適切한 設計의 修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制度上的 問題

제도상의 문제로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관리 및 진흥정책, 입찰·심사 제도, 설계관련 제기준의 불합리성 등이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설계는 건설기술의 한 분야를 구성하고 있는 바, 건설사업의 기획, 조사, 발주, 시공, 유지관리 등은 건설교통부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설계용역업무는 별개로 과학기술처에서 관장하고 있어 통일되

고 一貫된 管理政策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과학기술처는 엔지니어링 진흥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분야를 過小評價하고 제조업 중심의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근본적으로 건설관련 설계기술의 부족 및 문제점이 부실공사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정책상으로 외면하고 있다.³⁾

셋째, 건설교통부는 건설 엔지니어링의 가장 큰 실 수요부서이면서 관련 기술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부서로서 설계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管理 및 振興政策의 수립에 소극적이다(건설기술 진흥정책은 건설관리법에서도 수용하고 있음).

넷째, 건설의 설계 및 입찰제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創造的인 Idea」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개념이 배제되어 실비보상개념이 지배하고 있으며 다양한 창의력반영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다섯째, 入札方法 또한 가격중심의 경쟁을 조장하여 실비보상차원의 예산도 저가수주에 의해 파괴되어 부실설계를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사업수행단계에서 基礎調査期間이 짧고 조사비가 매우 적어 불확실한 자료에 의해 설계가 실시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설계기간의 변동이 매우 심하고 충분한 기술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환경이 지배하고 있다(예: 중부고속도로, 서울시 지하철 5호선 등은 실시설계와 시공이 병행되었음).

일곱째, 졸속한 건설공사의 추진이 設計審査를 경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설계상에 나타난 부실요인을 사전에 검색하는 기능이 거의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거의 동시에

3) 과학기술정책 관리연구소(STEPI), 『엔지니어링 핵심 공통기반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의 최종결과(안)』, (1995.6.23, 공청회자료)에 의한다.

시행되는 사례가 많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중앙설계심의 행위도 문제제기에 머물고 사후관리가 안되는 형식에 치우치고 있음).

여덟째, 설계의 기준이 되는 각종 技術示方書(총 12종)가 난립하고 있으며, 공종별 분류체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분야별 세부 사항만 강조하다 보니 전체적인 통일성이 미비되어 있으며, 요구수준이나 품질기준이 상이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예: 토목·건축 콘크리트 설계 기준이 상이함).

아홉째, 설계상 요구되는 각종 建設 機資材에 대한 표준적인 안전 및 품질 구비사항이 국가의 획일적인 체제에 의해 관리되므로 인하여 건설업의 현장특성이 배제되어 부실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Ready Mixed Concrete, Asphalt 혼합물 등).

2) 設計의 構造的인 不實要因

설계의 구조적인 부실요인 중에는 技術水準의 落後性도 지적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건설에 대한 기술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선진국 수준에는 다음과 같이 미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건설기술의 국제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모형이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로서 정밀한 비교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국내에서 인식하고 있는 기술력보다 더 큰 격차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다음 <表 III-4>에 나타난 바와 같이 EC(Engineering Constructor)화 부분, 사업관리능력, 조사기획기능 등에서 선진국 대비 열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III-4〉 國內 建設業의 國家別 競爭力 比較(大韓建設協會)

경쟁력 항목	비교 국가	관련 기술 주도국	일본	개발도상국
1. 정보수집·조사·기획 기능		△	○	□
2. EC(Engineering Constructor) 능력		△	○	□
3. 사업관리 능력		△	△	□
4. 파견사원 능력		○	△	□
5. 기자재 조달 능력		△	△	□
6. 기술접목 능력		○	○	□
7. 공사의 품질		○	△	□
8. 공사기간의 엄수		△	△	□
9. 교섭, 크레임처리 능력		△	○	□
10. 현지화 능력		△	○	□
11. 현지에서의 노무관리, 교육		△	○	□
12. 노무자 인건비의 코스트 다운		△	□	○
13. 파견사원 인건비의 코스트 다운		△	□	○
14. 외국·사회문화에서 적응 능력		△	○	○
15. 외국인과의 인간관계·신뢰감의 형성 능력		△	○	□
16. 자금조달 능력		△	△	□
17. 지불조건의 설정 능력		△	○	□
18. 건적 능력		○	○	□
19. 환리스크 대책		△	○	○
20. 컨트리 리스크 대책		△	○	○
21. 정부의 지원 체제		△	□	○
22. 종합		△	○	□

註: □: 강, ○: 동등, △: 약

資料: 『건설업의 미래전략』(대한건설협회)을 참고로하여 재편집한 것임.

한국산업은행은 “국내 건설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구하며 엔지니어링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한국산업은행, 1991).

〈表 III-5〉 엔지니어링 分野의 國際 競爭力 比較(産業銀行)

Project 모 형 (세분류)	국내시장에서 경합할 경우				해외시장에서 경합할 경우			
	타당성 조 사	설계	감리	유 지 관 리	타당성 조 사	설계	감리	유 지 관 리
아스팔트 도로 포장	○	○	○	○	○	○	가	○
시멘트 도로 포장	○	○	○	○	○	○	가	○
라멘 교	○	○	○	○	○	○	○	○
아치 교	○	가	○	○	가	나	나	가
사장 교	○	가	가	○	가	나	가	가
현수 교	○	가	가	○	가	나	나	가
콘크리트	○	○	○	○	○	○	○	○
사력	○	○	○	○	○	○	○	○
아치	가	나	가	가	가	나	가	가
항만 시설	○	○	○	○	○	○	○	○
해양 구조물	○	○	○	○	가	나	가	가
철도	○	○	○	○	가	가	○	○
터널	○	○	○	○	○	○	가	○
지하 구조물	○	○	○	○	가	가	○	○
상·하수도 시설	○	○	○	○	○	○	○	○
폐수·폐기물 처리 시설	○	가	○	○	가	가	○	○
건축물	○	○	○	○	○	○	○	○
콘크리트구조 고층 건물	○	○	○	○	가	가	○	가
철골구조 고층 건물	○	○	○	○	가	가	○	가
조립식 구조 고층 건물	○	○	○	○	가	가	○	가
건물 공조, 조명 설비	가	가	가	가	나	나	나	나
건물 자동화, 정보 통신	다	나	나	나	다	나	나	나
수력 발전 설비	가	가	○	가	가	가	○	가
화력 발전 설비	가	가	○	가	가	가	○	가
원전 시설	나	나	가	가	나	나	가	가
화학 공업 플랜트	가	가	○	가	나	가	가	가

註: ○: 국제경쟁력 보유부문임.
 가: 외국의 일부 지원을 받으면 국제경쟁력 보유가능 함.
 나: 외국기술공여자의 상당한 기술지원 요함.
 다: 국제경쟁력 없음.

〈表 III-6〉 最高 技術保有國에 대한 技術力 比較(産業銀行)

구분	시공 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한국	주요 개도국	한국	주요 개도국
단순기술	95~100	65~80	90	35
고급기술	65~ 80	30~40	30	0
첨단기술	20~ 35	5~15	0	0

註: 시공기술수준은 공법기술, 건설장비기술, 공사관리기술, 견적기술의 활용 기술수준치임.

건설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공동으로 1987년부터 건설기술수준을 11개 분야에 대해 계속 평가해 오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건설부, 1987:49~50; 이태식외, 1993). 분석결과에 의하면 건설기술의 종합적인 수준이 선진국대비 70% 정도에 머물고 있어 역시 기술적인 낙후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表 III-7〉 우리나라 建設技術 水準의 變化(建設技術研究院)

시설분야	1987	1993	증감
도로공항	76.4	78.4	+2.0
철도	74.2	-	-
하천시설	71.0	74.1	+3.1
터널	70.7	72.3	+1.6
댐	68.6	74.4	+5.8
건축물	67.0	70.2	+3.2
교량	66.7	69.8	+3.1
건축설비	66.4	69.3	+2.9
지하구조물	64.9	71.9	+7.0
수력발전시설	63.2	-	-
고층건물	62.3	66.2	+3.9
해안시설	61.8	65.0	+3.2
상하수도시설	59.7	68.8	+9.1
원전시설	50.2	61.5	+11.3
종합수준	65.9	70.1	+4.2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원에 의뢰하여 엔지니어링 기술 수준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과학기술처, 1994).

<表 III-8> 事業活動分野別/業務領域別 엔지니어링 技術水準(科技處)

사업별 업무영역별	Plant 설계 단계			Plant 건설 단계		사업 관리	평균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상세 설계	감리	시운전		
전력플랜트시스템	40	50	60	60	60	60	55
통신플랜트시스템	50	50	60	70	50	60	55
화학석유가스플랜트 시스템	40	40	60	90	50	60	51
제철플랜트시스템	30	30	50	60	40	50	41
기타 산업 플랜트	40	50	60	50	50	60	53
해양시설	40	40	50	60	40	50	45
육상철구조물	50	50	60	50	50	60	55
저장수송시스템	40	40	50	70	50	50	48
환경·위생시스템	50	60	70	70	60	60	61
도시지역개발시스템	60	60	60	60	60	60	60
교통망 정비 시스템	50	60	70	70	50	60	60
정보처리	40	40	50	50	40	40	43
지질·자원개발	60	60	70	60	50	60	60
조선	30	40	50	40	40	40	40
평균	44.3	45.7	58.6	57.8	49.3	55	51.9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건설기술중 설계기술은 선진국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表 III-9>에 나타낸 바와 같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김수삼, 1994:71), 이는 구조적으로 설계에 부실요인이 내재될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表 III-9〉 既存資料에 의한 技術力 評價 總括(先進國 水準 100 基準)

		기획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평균
도로포장	건설부 ¹⁾	72.0	75.0	75.0	85.0	70.0	75.4
	건기원 ²⁾	71.0	70.0	-	79.0	70.0	72.5
	산업은행 ³⁾	75.0	80.0	80.0	90.0	90.0	80.0
	평균	72.7	75.0	77.5	84.7	71.7	76.0
교량	건설부	66.0	68.0	62.0	73.0	62.0	66.2
	건기원	72.0	72.0	-	76.0	69.0	72.3
	산업은행	70.0	70.0	65.0	75.0	65.0	69.0
	평균	69.3	70.0	63.5	74.7	65.3	69.0
댐	건설부	75.0	64.0	62.0	77.0	65.0	66.0
	건기원	59.0	64.0	-	74.0	68.0	66.3
	산업은행	65.0	65.0	65.0	80.0	70.0	69.0
	평균	62.0	64.3	63.5	77.0	67.7	67.0
해안시설	건설부	72.0	62.0	53.0	70.0	68.0	62.0
	건기원	54.0	58.0	-	72.3	58.0	60.5
	산업은행	55.0	60.0	55.0	70.0	65.0	61.0
	평균	55.3	60.0	54.0	70.7	63.7	61.0
철도	건설부	66.0	70.0	70.0	85.0	75.0	73.6
	건기원	-	-	-	-	-	-
	산업은행	65.0	65.0	70.0	85.0	70.0	71.0
	평균	66.5	67.5	70.0	85.0	72.5	72.0
터널	건설부	65.0	68.0	65.0	83.0	68.0	69.8
	건기원	63.0	66.0	-	76.0	68.0	68.3
	산업은행	60.0	65.0	60.0	80.0	65.0	66.0
	평균	62.7	66.3	62.5	79.7	67.0	68.0
지하구조물	건설부	58.0	65.0	60.0	75.0	63.0	64.2
	건기원	60.0	63.0	-	71.0	66.0	65.0
	산업은행	60.0	65.0	60.0	80.0	65.0	66.0
	평균	59.3	64.3	60.0	75.3	64.7	65.0
상·하수 폐수, 폐기물	건설부	69.3	57.0	58.0	67.0	56.0	59.0
	건기원	58.0	61.0	-	69.0	61.0	62.3
	산업은행	60.0	60.0	65.0	75.0	65.0	65.0
	평균	58.3	59.3	61.5	70.3	60.7	62.0

註: 1) 건설부는 '87년도에 실시

2) 건기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하며 '93년도에 실시

3)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을 말하여 '91년도에 실시

〈表 III-9〉 계속

		기획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평균
건축물	건설부	59.0	78.0	61.0	73.0	61.0	66.4
	건기원	61.0	60.0	-	65.0	60.0	61.5
	산업은	70.0	90.0	70.0	85.0	70.0	77.0
	평균	63.3	76.0	65.5	74.3	63.7	68.0
고층건물	건설부	58.0	60.0	58.0	73.0	58.0	61.4
	건기원	58.0	62.0	-	68.0	66.0	63.5
	산업은	65.0	65.0	60.0	80.0	65.0	67.0
	평균	60.3	62.3	59.0	73.7	63.0	64.0
건축설비	건설부	73.0	63.0	76.0	56.0	63.0	66.2
	건기원	59.0	69.0	-	65.0	59.0	63.0
	산업은	70.0	60.0	55.0	75.0	60.0	64.0
	평균	67.3	64.0	65.5	65.3	60.7	64.0
수력발전 설비	건설부	71.0	69.0	53.0	72.0	45.0	62.0
	건기원	-	-	-	-	-	-
	산업은	75.0	75.0	60.0	80.0	55.0	69.0
	평균	73.0	72.0	56.5	76.0	50.0	66.0
화력발전 설비	건설부	-	-	-	-	-	-
	건기원	-	-	-	-	-	-
	산업은	75.0	75.0	60.0	80.0	55.0	69.0
	평균	75.0	75.0	60.0	80.0	55.0	69.0
원전시설	건설부	45.0	45.0	45.0	60.0	55.0	50.0
	건기원	47.0	49.0	-	67.0	65.0	45.6
	산업은	60.0	55.0	55.0	70.0	65.0	61.0
	평균	50.7	49.7	50.0	65.7	61.7	52.0
화학공업 플랜트	건설부	-	-	-	-	-	-
	건기원	54.0	53.0	-	71.0	68.0	61.5
	산업은	40.0	30.0	75.0	85.0	75.0	61.0
	평균	47.0	42.5	75.0	78.0	71.5	61.0
전체평균		62.8	64.5	62.9	75.4	63.9	66.0

3) 不適切한 設計를 修行하는 要因

설계 구성요소별로 부실한 내용이 발생하는 유형을 길성도(1993)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길성도, 1993:46~50).

〈表 III-10〉 設計過失 類型別 細部內容(1989~1990)

설계과실 유형	세 부 내 용
• 현장측량 부적정	- 시공측량 결과: 토량 증감, 구조물 위치 변경 등
• 현장조사 부적정	- 기존 시설물과 연결 부적정 - 용수·배수 시설 추가 설치
• 계획 부적정	- 시설물 계획을 위한 인구조사, 교통량 조사, 유량조사, 현장여건 등 조사 미흡 - 기수립된 상위 및 관련 계획조사 미비 - 선형·계획고 등 설계기술 미숙 등
• 설계구조물 현장 불일치	- 구조물 규격 부적정 - 토질조사 사항 활용 불충분 - 구조물 깊이, 기초처리 부적정 - 보호시설 부적정
• 구조계산 부적정	- 구조물 단면 및 철조물, 기초말뚝, 콘크리트량 부적정 - 설계기준강도 부적정 등
• 구조물 형식선정 부적정	- 암거시공 가능구간을 교량으로 설계 - 옹벽 형식선정 부적정 - 관경선정 부적정 등
• 토질조사 부적정	- 연약지반 조사 부적정 - 토질 분류 부적정
• 재료원(골재원, 토취장, 석산등)조사 부적정	- 선정시험 불충분 - 매장량 판단 부적정 - 운반거리 과다 또는 과소 등
• 공법 및 공사용 자재선정 부적정	- 호안공 선정 부적정 - 급수관, 하수관 등 관종선정 부적정 등
• 부대공사 부적정	- 안전시설, 가시설, 조정시설 등 부적정

길성도(1993)에 의하면 설계를 수행하는 각단계별로 부실요인을 잉태하고 있으며, 이는 不適切한 設計의 執行에 따른 結果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각종 과실내용이 설계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요소들을 부실하게 처리하여 나타나는 문제로서 설계자들의 업무처리 능력에 큰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특히, 설계 각 요소별 국내·외 경쟁력을 비교한 이태식 등의 연구에 의하면(이태식 외, 1993), 설계 전과정에 걸쳐 국내 기술이 열세에 있

음을 나타내고 있어 設計修行能力 涵養이 매우 긴급하고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表 III-11〉 設計關聯 國內外 比較

단 계	비교 항목 및 내용	국내	해외
1. 설 계 요 건	- 설계개념	C	A
	- 설계조건	A	A
	- 설계도면의 규격 및 치수	C	A
	- 설계서 승인 절차	C	A
2. 시방서 작성 요건 및 내용	- 자재규격, 자재선정 및 승인 방법	C	A
	- 시방서 승인 절차	C	A
	- 시공절차서 제출 및 승인	D	A
	- 시공방법	C	A
	- 품질요건	C	A
	- 적용기준	A	A
	- 일반시방서	B	B
- 특기시방서	B	A	

註: A: 구체적, B: 보편적, C: 형식적, D: 모호함

나. 政策課題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검토로는 크게 政府制度를 改編하는 경우와 설계용역업체 스스로 內實을 기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政府制度 改編方案

정부제도 개편 방안에는 설계용역시장 진입제도, 경쟁제도, 평가제도, 보상제도 등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계용역시장 진입제도는 과학기술처와 건설교통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설계용역법 管理政策의 一元化가 요구되며, 특히 설계용역업의

진흥정책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예: 최근에 Software 산업에 대한 관리, 개발을 일원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처에서 정보통신부로 통합 이 관하였음). 특히 設計用役의 登錄은 시장규모와 구조 및 소요기술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어야 하며, 특히 건설시장의 개방에 맞추어 적절한 전략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원화되어 집중관리가 부족한 상태이다.

설계용역의 경쟁은 설계의 질적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는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설계수행 능력, 해당과제에 대한 접근방법, Idea 도출 등을 사전평가하는 기능이 우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사용되고 있는 Proposal System 이나 Two Envelope System이 활용될 수 있으나, 가격보다는 能力評價 優先主義 採擇이 요구된다. 즉, 적격업자를 사전선택하여 이를 대상으로 Nego하는 방식의 선택이 발주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설계는 시공행위를 통해 현장에서 실현되는 역할로서 그 기능이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계는 현장의 시공성과 시설이 완성된 후 使用者의 便宜性(Fitness for Use) 등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전자는 발주자나 전문가에 의해 심의 평가된다면 후자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 또는 이용자에 의해 분석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설계의 전문성만을 내세워 이용자의 평가가 배제되거나 무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를 통하여 피해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저항이 나타날 것이므로 설계용역계는 이에 대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설계부실에 따른 보상체계가 國家的인水準에서 책임있게 정립되어야 한다. 기능별 보상에서 포괄적인 보상까지 보상심의와 평가 및 보상범위 결정방안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2) 設計用役業界의 內實 追求

설계용역업계의 내실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은 설계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는 다음 사항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설계과정별 적정한 業務修行方法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달성목표와 수준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설계는 요구되는 조건에 알맞는 設計基準(Design Criteria)과 設計指針(Design Guideline) 등이 미비하여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설계기술을 <表 III-11>에 나타난 세부항목과 같이 상세히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뒤떨어진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技術競爭 지향적인 경영이 필요하다.

설계용역을 금액보다는 Idea 競爭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의 종합화 기능과 전문성 기능을 분리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갖추는 노력이 요구된다.

설계기술의 專門化와 標準化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기술과 관리에 대한 직무교육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IV. 專門職責任保險理論

1. 責任保險契約의 意義

責任保險契約(Contract of Liability Insurance)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損害賠償責任을 질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계약이다(상법 제719조). 즉, 책임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損害保險契約이다(상법 제638조, 제719조). 이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직접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인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이른바 間接損害를 보상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손해보험과 다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행위를 신중하게 하여야 하고, 따라서 타인에게 人的 또는 物的 損害를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행위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데, 그러한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이 그 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험자에게 돌리기 위한 보험이 바로 責任保險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보험계약은 손해보험계약 가운데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는 보험이다.

2. 責任保險의 分類

책임보험에는 보험의 대상으로 되는 배상책임의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항공기·원자력·가스·제조물책임보험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그 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法理構成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책임보험은 배상책임의 객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對人·對物·包括責任保險으로 나눌 수 있고, 피보험자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個人·企業·職業責任保險으로 나누어지며, 보험금액의 한도유무에 따라 有限·無限責任保險으로 구분된다. 또한 보험가입의 강제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任意·強制責任保險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외에도 계약의 목적이나 보험급여의 방법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가. 賠償責任의 客體에 따른 分類

피보험자가 무엇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가에 따라 책임보험을 對人·對物·包括責任保險으로 나눌 수 있다.

1) 對人責任保險

對人責任保險(Personal Injury Liability Insurance)은 피보험자가 他人의 生命 또는 身體의 傷害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처럼 대인책임보험은 배상의 객체가 사람인 경우로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중 대인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운송보험중 승객배상책임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2) 對物責任保險

對物責任保險(Property Damage Liability Insurance)은 피보험자가 他人의 物件 기타 財産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처럼 대물책임보험은 배상의 객체가 물건 기타 재산인 경우로서 운송보험중 화물배상책임보험, 자동차책임보험 중 대물책임보험, 선박보험중 충돌책임(collision liability)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3) 包括責任保險

包括責任保險(Comprehensive Liability Insurance)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生命·身體·財産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는 그 배상이 객체가 대인·대물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해상보험, 건설공사보험, 개인 또는 기업의 종합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나. 被保險者主體에 따른 分類

피보험자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책임보험을 個人·企業·專門職業責任保險으로 나눌 수 있다.

1) 個人責任保險

個人責任保險(Personal Liability Insurance)은 피보험자 자신이 個人的인 責任으로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여기에는 개인종합책임보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자책임보험 등이 속한다.

2) 企業 또는 營業責任保險

企業 또는 營業責任保險(Business or Commercial Liability Insurance)은 피보험자의 企業活動 내지 營業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영업용자동차책임보험, 제조물 책임보험, 기업종합책임보험, 항공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책임보험, 도급업자책임보험, 임차인책임보험, 선박수리업자책임보험, 차량정비업자책임보험, 창고업자책임보험, 오염배상책임보험, 경비업자책임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3) 專門職業責任保險

專門職業責任保險(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은 일정한 專門職業에 종사하는 자가 피보험자로서 그 職務修行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공인회계사·변호사·의사·약사·건축사·회사이사·이용원·미장원 등의 책임보험이 이에 속한다.

다. 保險金額限度有無에 따른 分類

책임보험은 보험급여에 의한 보상한도의 유무에 따라 有限·無限責任保險으로 구분된다.

1) 有限責任保險

有限責任保險(Limited Liability Insurance)은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보험자가 一定한 限度에서만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처럼 보험보상의 한도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보통 보험계약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것이지만, 강제자동차책임보험의 경

우와 같이 補償限度를 法定해 두는 경우도 있다.

2) 無限責任保險

無限責任保險(Unlimited Liability Insurance)은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限度를 정하지 아니하고 보험자가 이를 모두 보상하는 보험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종합보험 중 무한의 대인배상책임보험이 이에 속하는 것이다.

라. 保險加入의 强制性與否에 따른 分類

책임보험계약의 체결이 강제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任意·強制責任保險으로 구분된다.

1) 任意責任保險

任意責任保險(Voluntary Liability Insurance)은 책임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보험계약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任意에 맡겨 둔 것이다. 법률상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에 해당된다.

2) 強制責任保險

強制責任保險(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은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법률에 의하여 責任保險加入을 義務化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되는데, 보통은 벌금에 의한 刑事處罰을 받게된다. 이와 같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제책임보험을 다른 말

로 의무적 책임보험(Obligatory Liability Insurance)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책임보험, 자동차책임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이 계약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 내지 강제적으로 체결된다면 그 법률관계는 이미 일반적인 계약법리에 의하여 해결된 성질의 것이 아니라 社會保障制度로의 履行으로 인하여 團體法的 性格을 강하게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마. 기타 分類

위와 같은 분류 이외에도 責任保險契約의 目的에 따라 법적 책임부담이라고 하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과 배상금의 현실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고, 保險給與의 支給方法에 따라 先履行型·責任負擔型·免脫型責任保險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여기서 선이행형은 보험사고에 의해 피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그것을 이행한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책임부담형은 보험사고에 의해 피보험자의 책임이 확정되면, 그 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면탈형은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책임이 확정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책임을 면탈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책임보험의 전형 내지 이념형으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고평석, 1990:51~55).

3. 責任保險의 機能

책임보험은 경제생활에서 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危險을 分散시켜 보험자에게 그 책임을 돌림으로써 배상책임으로 인한 經濟的 損失을 막고자 하는 보험이라 할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의 배상자력의 확보에 의한 被害者의 保護에도 그 이념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에게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자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피해자인 제3자에게는 손해배상액의 확보로써 최소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은 加害者와 被害者를 동시에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 被保險者의 保護機能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상법 제719조) 책임보험은 바로 피보험자의 이익에 봉사한다. 즉,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여(상법 제724조 제2항, 제725조), 피보험자의 責任을 免除하여 주어 피보험자의 權利保護를 꾀하게 되는 것이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보험에 드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權利保護機能을 도외시킬 수 없다. 그리하여 공장주, 자동차운전자, 가스사업자 등 피보험자는 그 사고발생

의 개연율에 따라 적은 보험료로써 타인에게 지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자에게 돌림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나. 被害者の 保護機能

근대의 민사책임법리에 따르면 故意나 過失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한정된 범위내에서는 無過失責任 나아가서는 보상책임을 인정하며 또한 이러한 책임법리는 복지사회에로의 지향과 함께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대소사고에 대하여 당해기업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바 그 기업이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토록한 법률규정도 의미가 없을 것이며 더욱이 大型事故로 발생한 多數 被害者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배상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기업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에 대한 履行確保手段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각종의 고압가스사업자와 사용자, 원자력시설, 항공기여객운송업자와 같이 특히 위험한 기업시설이나 자동차 및 각종 체육시설과 같이 하나의 위험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러한 시설 자체가 대량으로 존재하고 모든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危險에 露出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케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被害者救濟를 위하여 가해자의 賠償義務 履行을 確保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에 의하여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취지가 피해자구제에 있다고 한다면 이의 실효성을 위하여는 保險加入金額(보상한도액)도 적정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自衛手段이며 피해자의 救濟手段이지만 임의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자위수단이 강조되는 반면 의무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의 구제기능이 강조된다.

4. 責任保險契約의 要素

가. 責任保險의 目的

책임보험은 일반손해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특정물건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고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피보험자의 財産上의 損害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는 점에서 보험의 목적이 무엇이나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하여는 책임보험에서는 손해가 債務의 負擔 또는 財産의 減少라는 특수한 형태로 생겨나는 것이므로, 그 보험의 목적은 유형·무형의 특정재산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전재산이라고 한다. 그러나 책임보험은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소극보험이라는 점에서 그 보험의 목적은 특정한 개개의 재화가 아니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지는 賠償責任(消極財産)이며, 이 배상책임의 담보가 되는 것은 바로 피보험자의 모든 재산이라고 본다. 상법은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막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있으며(상 제720조 제1항), 영업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있다(상 제721조).

나. 被保險利益

책임보험은 손해보험에 속하고 있으나, 물건보험과는 달리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상 제668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被保險利益의 觀念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책임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재산적 급여를 하는 책임을 부담할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아 그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긍정하는 설과 이를 부인하는 설이 있다. 부인설은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사고로 인한 부담액이 피보험자의 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그 재산권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이 피보험이익이라는 從前의 通說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뜻의 피보험이익은 책임보험계약의 要素로 논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 좁게 풀이할 때에는,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일정한 財貨를 保險의 目的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經濟的 利益이라고 설명할 때에, 이것은 피보험자가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와 연관시켜 볼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자에게 돌려,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經濟的 損害를 벗어날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책임보험은 재산보험 또는 소극보험에 속하므로 그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재산적 급여를 하는 책임을 지는 사실과 관련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물건보험에서와 같은 보험가

액은 원칙으로 존재하지 않고, 超過保險·重複保險·一部保險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보상액은 단순히 保險金額과 損害額의 範圍 안에서 결정된다. 다만 예외로서 물건의 보관자의 책임보험(상 제 725조)의 경우와 같이 보험자의 책임이 일정한 목적물에 생긴 손해로 제한된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있는 때에는 중복보험의 경우(상 제672조)에 준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상 제725조의 2).

다. 保險事故

책임보험에서는 일반손해보험과는 달라 보험사고의 원인인 사고에 의해서 먼저 손해를 입는 것은 피보험자 이외의 제3자인 피해자이고,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느냐 지지않느냐, 또 그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결정되어야만 비로소 피보험자인 加害者の 損害를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때를 기준으로 보험사고로 할 것이냐는 이론상 다툼이 있다.

1) 損害事故說

이것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賠償責任을 지게되는 原因이 되는 事故가 發生한 것을 保險事故로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설에 대하여는 피해자는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한 가해자의 배상 의무는 아직 잠재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 손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가 소멸하면 가해자의 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는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책임보험에서 손해사고가 바로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2) 損害賠償請求權說

이것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로부터 그 책임에 관하여賠償請求를 받은 것을 保險事故로 보는 입장이다. 상법 제722조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賠償請求를 보험사고로 볼 여지를 주고 있다. 이 설에 의하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상의 절차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패소한 경우 또는 피해자인 제3자의 배상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그 방어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상법 제720조)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3) 責任負擔說

이것은 피보험자가 법률상의賠償責任을負擔한 것을 保險事故라고 하는 입장이다. 상법 제719조는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責任을 진 경우”라고 규정하여 이 설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설에 따르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상법 제720조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일종의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참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방지비용을 계상한다는 것은 이론상 부당하기 때문이다.

4) 債務確定說

이것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할 債務가 確定된 것을 保險事故로 보는 입장이다. 상법 제723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債務가 確定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마치 상법 제657조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5) 賠償義務履行說

이것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損害賠償義務를 履行한 것을 保險事故로 보는 입장이다. 상법 제724조 제1항은 “보험자는 피해자인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이행을 보험금지급의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보험계약에서 피해자인 제3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제725조 참조)는 점에서 볼 때에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험사고로 볼 수는 없다(양승규, 1987:335~347).

5. 專門職業賠償責任保險

가. 概念

專門職業賠償責任保險(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직업에 따르는 사고(Occurrence)나 업무상의 不注意(Negligence), 怠慢 또는 失手(Errors/Omissions)로 타인에게

身體障害(Bodily Injury)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적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一般賠償責任保險(General Liability Insurance)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어떤 위험의 전문성여부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은 보험약관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념에 의하여 위험의 전문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일반배상책임보험약관상 구체적인 전문적 위험을 면책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위험담보에 적용되는 면책위험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며 모든 전문적 위험을 열거한 것은 아니다.

한편 위험의 전문성여부는 구체적인 擔保危險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직업 자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의 전문직업위험을 담보하는 경우에 의사의 치료행위상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때에는 의사의 전문직업상의 배상책임위험이지만 병원건물에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침대가 파손됨으로써 환자가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일반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침대가 파손되어 환자가 바닥에 떨어짐으로써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고자 수술중 부주의로 사망한 경우와 같이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일반배상책임위험과 전문직업배상책임위험이 경합한 경우에도 一般賠償責任危險과 專門職業賠償責任危險간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담보범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特性

1) 事故의 概念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의 손해보상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事故(Occurrence)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身體障害(Bodily Injury)나 財物損害(Property Damage)와 같은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Occurrence”라고 부른다. 그러나 일반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人格侮辱(Personal Injury)이나 廣告侵害(Advertising)의 경우에는 사고의 내용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형태로서의 “Occurrence”가 아닌 무형적인 것이다.

이에 비하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사고의 형태는 2종류로 대별되는 바 의사배상책임보험(Doctors Malpractice Liability Insurance)이나 미용사배상책임보험(Beauticians Malpractice Liability Insurance)과 같은 非行賠償責任保險(Malpractice Liability Insurance)은 일반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의 사고(Occurrence)와 똑같은 개념의 사고를 담보의 요건으로 하는데 비하여 회계사배상책임보험(Certified Public Accountant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과 같은 瑕疵賠償責任保險(Errors and Omissions Liability Insurance)은 일반배상책임보험의 인격모욕이나 광고침해와 같이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직업상의 결함있는 행위로 타인에게 물리적인 재산피해를 입히게 되는 사고대신에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專門職業의 瑕疵(Errors and Omissions)與否를 담보의 기준으로 한다.

2) 擔保의 基準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損害事故(Occurrence)를 기준으로 담보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처음으로 제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하는 바 전자를 손해사고기준증권(Occurrence Basis Policy), 후자를 배상청구기준증권(Claims-made Basis Policy)이라고 부른다.

담보의 기준을 손해사기로 하는 경우에는 사고일자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서 일반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사고일자의 확정이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損害事故를 원칙적으로 담보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손해사기일에 상응하는 瑕疵있는 專門職務日字를 확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수입받은 소송사건에 관하여 3년에 걸친 소송결과 변호사가 변론상의 하자(Errors and Omissions)로 패소하였을 경우에 하자 있는 행위는 3년간의 소송수행기간중 어느 하루로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환자를 3년간에 걸쳐 치료하였으나 치료방법상의 하자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위의 예에서와 같이 의사의 하자있는 치료행위를 어느 하루로 확정할 수 없다.

이에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은 損害事故日字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처음으로 損害賠償請求를 제기한 날짜(The Date of Claims-made First)를 담보의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미용사배상책임보험과 같이 손해사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사고일자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損害事故(Occurrence)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3) 總補償限度額의 適用

일반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보상한도액에 관하여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는 1사고당의 補償限度額(Limit and Occurrence) 외에 보험기간 중의 모든 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액(General Aggregate Limit)을 설정하고 있으나 1986년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1사고당의 보상한도액만으로 제한하고 총보상한도액에 의한 제한은 없었으며 국문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현증권상으로도 원칙적으로 1사고당의 보상한도액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보상한도액에 의한 제한은 없는데 비하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은 전통적으로 1사고당의 보상한도액과 함께 보험기간 중의 총보상한도액에 의한 제한을 적용하여 왔다.

4) 保險約款의 多樣性

각종 전문직업위험을 담보하는 약관은 위험별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 없으며 보험자별로 危險査定(Underwriting)방법상의 태도에 따라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는 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약관은 이른바 “Tailor-made Policy”로서 보험약관별로 擔保範圍, 免責危險과 기타의 보험조건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6. 建築士, 技師 專門 賠償責任保險

가. 建築士 技師의 危險

건축사나 기사는 통상적으로 設計專門家(Design Professional)라고 부르며 설계전문가는 용역의뢰업체나 제3자로부터 전문직업무수행에

따른 배상책임 청구를 받을 위험이 있다. 건축사나 기사는 여러 종류의 구조물의 설계를 포함하여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건설을 감독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건축사나 기사에 대한 배상책임은 법적 측면에서 유사한 것으로 취급된다.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건축사나 기사는 업무수행에 적절한 주의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 건축사나 기사는 契約 不履行, 不法行爲 및 건축과 설계에 관한 法律 違反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계약에 기초한 행동은 계약법에 따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은 매우 중요하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을 받기 위하여는 보통 원고측이 건축사나 기사가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체상의 피해, 경제상의 피해를 입은 것을 증명해야 한다. 법률 위반으로 인한 배상책임의 예를 들면 방화문의 수나 지면 밑의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의 강도수준을 명시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나. 建築士, 技師에 대한 賠償責任請求의 類型

1) 認可받은 分野 이외의 活動

대부분의 경우 자격있고 지식있는 전문가들만이 설계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사나 기사는 전문직업의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사나 기사가 할 수 있도록 認可받은 分野 이외의 活動은 違法일 뿐아니라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의 증거가 된다.

2) 契約의 不履行

건축사, 기사와 건축물 소유자와의 관계는 각 당사자의 의무를 열거

한 契約書에 의하여 결정되며 각 당사자가 행하여야 하는 일들을 결정한다. 미국의 경우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서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건축사 기사는 계약서에 나타난 조건들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소유주가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건축사가 정해진 날짜까지 設計圖面을 제출하기로 계약을 하고 이행하지 못한 경우 追加費用에 대하여는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출지연으로 인하여 물품공급업자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또 고용된 건축사가 어느 금액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빌딩을 설계하도록 의뢰받은 경우 超過費用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있다. 실제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위험은 계약서의 조항만큼이나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利害의 衝突

건축가 기사가 고용된 경우 주인(소유주)과 대리인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건축사, 기사는 소유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들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소유주에게 명백히 알린 경우가 아니면 건축사, 기사는 下請業者나 物品供給者로부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충돌이 발생할 경우 건축사, 기사는 자기가 받은 경제적 이득에 기초하여 소유주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4) 圖面이나 設計에서의 過失

건축사, 기사의 배상책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 건물이나 구조물의 설계나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과실 때문에 발생된다. 특정한 협약이 없는 경우 건축사, 기사의 설계나 도면작성이 완벽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사 기사의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

능에 부합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다른 전문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過失의 有無는 동일직종의 신중한(prudent) 전문인의 平均的인 技術이나 力量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바닥이나 지붕이 적정한 구조적 받침이 없어서 붕괴된 경우와 같이 설계에 대한 건축사, 기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과실의 판단은 고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주관적인 결정을 필요로 한다.

설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실은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 빌딩의 결함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인 경우 손실은 결함을 고치는 비용으로 측정된다. 그러나 결함이 큰 경우는 존재하는 빌딩 자체의 가치와 올바른 도면과 시방서를 따라 건축되었을 경우 빌딩의 가치와의 차액으로 평가된다.

5) 敷地調査

건축사, 기사에 대한 배상책임청구는 지면, 지하면, 경사도, 정면도 등에 대한 敷地調査, 縱斷面圖, 土壤狀態 등과 관련하여서도 발생된다. 이러한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프로젝트 소유자이며, 추가적인 조사작업은 계약자이고,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건축사, 기사이므로 과실이 있는 쪽을 판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건축사, 기사가 작성한 도면없이 건물이나 구조물을 건설할 수 없으므로 어느 경우든지 건축사, 기사는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6) 材料나 裝備의 選定

건축사, 기사에 대한 배상책임은 재료나 장비의 선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건축사, 기사는 사용되는 재료를 보증하지는 않지만 사용될 材

料的 類型(type)을 지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 기사가 재료나 장비에 대한 배상책임을 한정시키는 것은 어렵다. 만일 재료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나 장비가 기술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프로젝트 소유자로부터의 배상책임을 면하더라도 계약자나 하청업자로부터 배상책임에 직면하게 된다.

材料나 裝備의 選定과 관련된 배상청구는 건축사, 기사와 그들의 고객사이에서 나타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가 프로젝트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하고 프로젝트 소유자가 건축사, 기사에게 재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7) 建設費用의 上昇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인하여 건축사, 기사에게 계약자가 제기하는 배상책임청구는 도면이나 시방서에 나타난 물량이 잘못되었거나 도면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지정된 건설과정비용이 계약자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

8) 建設監督의 過失

건축사의 배상책임은 실제건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배상책임과는 별개이고 다른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계약에 의하여 建設監督의 義務를 맡는 경우 건설이 시방서에 따라 진행되는지 혹은 재료가 도면에 따라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등과 같이 제한적인 감독의 의무가 있을 수 있다.

9) 第3者에 대한 賠償責任

과거에는 건축사, 기사의 배상책임은 소유주나 계약자에 국한되었으

나 최근에 들어서 建築士의 過失로 身體나 財産의 損失을 입은 제3자도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防禦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청구에 대한 방어는 건축사, 기사에게도 적용된다. 건축사, 기사는 원고측이 받은 손해에 책임이 없고, 원고측에 대한 의무위반이 없었으며, 건축사, 기사의 행위와 原稿의 損失과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원고측에 대응할 수 있다.

라. 建築士, 技師 專門賠償責任保險

건축사, 기사 전문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표준적인 증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건축사, 기사 전문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자들은 각각의 보험증권을 제공하며 각 보험자마다 요율과 언더라이팅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付保되는 범위나 조항들은 유사한 점들이 많다.

1) 保險加入合議文

건축사, 기사가 전문직 업무수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過失, 失手, 不作爲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모든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축사, 기사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서도 일반배상책임보험과 같이 방어비용, 화해 및 추가비용에 대한 규정들이 있다. 많은 증권들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사전승인이 없이 청구나 소송을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자들은 비정상적인 피보험자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에 대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 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 해결될 수 있었던 금액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들을 추가하고 있다.

가) 付保地域

증권마다 付保地域이 다를 수 있다. 대부분 증권에서는 공산권국가들을 제외하고 세계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있으며 또 소송이 제기되는 지역도 어느 곳이든 관계없이 부보범위를 넓히고 있다.

나) 賠償請求基準

건축사, 기사 배상책임보험은 모두 배상청구기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배상은 보험기간 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다) 保險金額

보험자가 보상하는 청구에 대한 보상금액은 배상책임보험금액의 한도와 면책금액규정에 따른다.

건축사, 기사 전문배상책임보험의 補償限度는 한 청구당 한도액과 총한도액이 있다. 한 청구당 보험자가 부담하는 한도액(방어비용포함)은 각 증권에 명시되어 있다. 또 일년기간 동안에 하나 이상의 배상청구가 발생할 경우 保險者가 補償하는 限度額이 정해져 있으며 보험자는 그 이상의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청구금액이 화해나 판결로 결정이 난 경우 면책금액은 공제가 된다. 피보험자가 화해에 동의하고 보험자가 배상금액을 협의하여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면책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免責部分

면책조항의 수나 성격은 보험증권에 따라 다르다. 많은 증권들이 모든 수행업무에 공통되는 면책조항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토목, 전기, 구조물, 기계, 건설 등에 따른 각각의 追加的인 免責條項들을 가지고 있다. 또 건축사, 기사가 교량이나 터널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이나 지하나 지표구조의 조사 등과 관련된 위험들은 이서(Endorsement)로서 제외될 수 있다.

3) 條件部分

건축사, 기사 전문배상책임보험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 배상청구나 소송의 발생시 피보험자의 의무
- 증권양도시 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요구
-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경우 보험계약해약 가능
-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배상청구권을 보험자에게 양도

V. 外國制度 比較研究

선진 외국에서의 공공토목공사 실시체계를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설계단계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表 V-1〉 外國의 公共土木工事의 實施體制 比較

국명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공공사업 실시기관	건설성	내무성 개발국	육군 공병대	텍사스 주교통 국지방 사무소	펜실바 니아주 교통국	뉴저지 주항만 공사	캘리포 니아주 교통국	교통성	바이에 른주내 무성건 설총국	건설, 운수관 광성 도로국	
소관업무	도로, 하천 행정 등	댐, 관개 사업 등	항로 준 설사업, 치수사업 영선 등	도로의 건설유 지관리 등	도로, 항공, 철 도 등의 건설관리	공항터 미널의 건설 관리 등	도로의 건설 관리 등	도로의 건설 관리 등	도로의 건설 관리 등		
실시 체 제	계획 조사	직영 및 외주	직영 및 외주	직영	직영 원칙	직영 또는 외주	직영 원칙	직영 또는 외주	주로 외주	직영	직영
	지방 설명등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상세 설계	외주	직영	직영 원칙	직영 원칙	직영 또는 외주	직영 또는 외주	직영 원칙	외주	직영 원칙	직영 원칙
	시방서 작성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원칙	직영 및 외주	직영 원칙	외주	직영 원칙	직영 원칙
	적산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원칙	직영 및 외주	직영 원칙	외주	직영	직영 원칙
	시공 관리	직영 및 외주	직영	직영	직영	직영 원칙	직영 원칙	직영	외주	직영	직영 원칙
CM의 활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드뎀	10%	없음	없음	없음	없음	

註: 『(주)국제건설기술협회』 조사에 의함.
 資料: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미국공공사업에서의 CM제도』, 『엔지니어링』, 1994. p.40.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공공사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설계단계에서도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의 설계단계에서의 관리행태를 보면 <表 V-1>과 같다. 특히 3개국 공통적으로 설계자에 대한 배상보험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로서 프랑스, 벨기에가 있고 사업별로 보험의무 가입을 시행하는 국가로서는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핀란드, 남아공화국 등이 있다. 엔지니어링 단체가 보험담보를 수행하는 국가로는 스웨덴, 아일랜드, 노르웨이, 호주, 덴마크 등이 있다. 즉 대부분 선진국가에서 不實設計時 責任擔保를 위하여 책임배상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表 V-2> 主要國의 設計保險制度

구 분	시행국가
• 보험제도 의무화	프랑스, 벨지움
• 통상적으로 프로젝트보험 제시행	미국, 네덜란드, 핀란드
• 간헐적으로 프로젝트보험 제시행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부실설계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제도 혹은 보증제도는 각국의 技術用役契約 一般條件上에서 규정될 수 있다.

예로써 미국 EJDC Form, 일본 건축사무소협회 연합회, FIDIC(국제용역기술자연합회)의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비교하여 보면, 국가별로 建設環境이 다르므로 국가마다 보증제도에 약간씩 차이가 나겠지만 계약관리의 효율성, 클레임 및 분쟁해결의 신속성, 그리고 국제관행의 준수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3개의 제도에서는 계약의 완성을 보증하는 保證債券(Surety Bond) 한 가지만을 요구하되 그 비율을 용역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화하는 동시에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로 정한다. 해당 보증기관도 국제적 신용도와 재정능력이 있는 기관으

로 엄격히 제한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조건 작성시 미리 물가 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을 적절히 예측하여 보증금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정한다면 保證金の調整 및 追加納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表 V-3〉 유럽의 公共事業에 대한 調査設計 管理의 實態

영국	프랑스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ter plan의 작성 및 설계의 기본조건 결정은 발주자가 담당하고, 설계업무(예비·상세·실시)는 컨설턴트에 위탁한다. 다만 실시설계는 Contractor가 하는 경우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ter plan의 작성 및 설계의 기본조건 결정, 예비설계는 발주자가 담당하고, 상세설계, 실시설계는 컨설턴트에 위탁한다. 다만 실시설계는 Contractor가 하는 경우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ter plan의 작성 및 설계의 기본조건 결정은 발주자가 행하나, 기획·입안·설계 업무(예비, 상세, 실시)는 발주자가 실시하거나 컨설턴트에 위탁한다. 다만 실시설계는 Contractor가 행하는 경우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조사는 Chartered Eng. 라고 하는 컨설턴트의 자격자가 행한다. • ISO 9000시리즈에 의거한 품질관리가 행해지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조사 및 최종검사는 발주자의 기술자가 실시한다. 다만 공사의 규모가 크거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조사는 통상 발주자의 기술자가 행하나, 그 경우에는 조사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법정의 구조물조사제도 라고 하는 자격의 보유자가 조사를 행하는 경우도 있다(특히 교량구조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턴트의 하자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배상보험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턴트의 하자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배상보험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턴트의 하자책임이 있고, 그에 대하여 배상보험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품의 최종검사는 발주자(경우에 따라서는 제3의 컨설턴트)가 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품의 최종검사는 발주자의 기술자가 실시한다. 다만 교량 등은 조사기술자가 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품의 최종검사는 발주자의 기술자가 실시한다. 다만 교량 등은 조사기술자가 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의 평가는 점수제가 아니고 코멘트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결과의 공표는 하지 않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의 평가는 실시하고 있으나 결과의 공표는 하지 않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의 평가는 점수제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결과의 공표는 하고 있지 않다.

資料: Sakai Yoshikazu, 『유럽의 공공사업에 있어서의 감독·검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 의 개요』, 『엔지니어링』,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1995, 12, pp.43~44.

외국의 보증제도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국가에서 계약이행 등을 위한 보증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表 V-4〉 主要國의 保證制度

	입찰보증	이행보증	비고
미국	입찰가의 20% 또는 300만불중 적은 금액	계약가의 10%	계약가의 40~50%의 하도급대금지불보증제 시행
(메사츄세츠주)	(입찰가의 5~10%)	(계약가의 5%)	(계약가의 5% 이상의 하도급대금지불보증제도 시행)
일본	입찰가의 5% (실제면제)	계약가의 10% (실제공사완성 보증인 요구)	하자보증금제도 미시행
영국	미시행	정부공사계약약관은 면제, 토목학회약관은 계약가의 10% 이내	-
프랑스	미시행	계약가의 3~5%	-
서독	미시행	계약가의 5% 이하, (면제기능, 공사비의 일정률을 은행에 예치하여 기성금의 5%를 지급유보)	-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용역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실이나 인명피해에 있어서 용역업자와 발주자간의 責任所在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형적으로 어느 일방의 전적인 책임사항에 대해서도 근원적인 원인이 다른 타방에 있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糾明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타방의 책임이 있는 원인으로 인해 어느 일방이 계약불

이행을 한 경우 다른 타방이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책임과 권한조항에 적절히 추가하고 있다. 어느 일방의 전적인 責任事項으로 돌릴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용역업자와 발주자가 공동책임을 지고 쌍방간에 책임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1. 日本의 專門職責任保險

가. 概要

전문직배상책임보험으로서는 최초로 1963년에 도입된 醫師賠償責任保險은 의료보험제도의 확대보급과 맥을 같이한다. 충분한 사회환경의 적응성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제도가 확충되고 그 효용성이 증대됨에 따라 의료진 스스로 자구되어진 보완책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197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의 다원화 추세에 따라 專門職 危險에 대한 요구가 점증되는 현상이 빚어진다. 다시 말하면 경제규모가 일정 정도에 진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의식이 고양되고 소비자운동이 제 목소리를 갖게 되는 등 전문직 보험에 대한 자생적 개발분위기가 성숙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1971년 건축가 및 공인회계사, 1972년 약사 및 집골사, 1973년 여행업자, 침술사 및 의약품도매업자, 1974년 수의사, 1975년 변리사, 사법서사 및 토지가옥조사사, 1976년 변호사 등의 이른바 전문직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 매년 개발되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다. 공인회계사보험은 일본 공인회계사협회와 손해보험 6개사간에 단체계약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당사자간의 爭訟事項(직업상상당주의의무, 일반재산의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액의 계정등)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해소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최종적인 해결방안으로 강구되어야 하며 실무상 화해나 중재에 의한 방법이 보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상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손해사정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감사 또는 회계분야의 학자 1인, 법률학자 1인, 공인회계사 2인, 변호사 1인으로 구성되는 賠償責任審査會가 보험회사의 자문기관으로 독립되어 전원 합의에 의하여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통한 손해배상 문제의 해결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공인회계사외의 기타 專門職保險의 境遇에도 거의 대부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보험제도는 개발역사가 오래지 않고 직업위험 특유의 사정기술상의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일반대중의 권리의식의 양양, 배상액의 고액화 등의 추세를 감안할 때 분쟁해결을 위한 심사기관의 설치는 동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일본에서는 일부의 위험(예컨대 의사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 직업위험에 대한 분쟁이 크게 일지는 않고 있지만 책임의 엄격화 경향과 더불어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나. 建築家賠償責任保險

건축가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設計의 缺陷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건축가가 피보험자가 되며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2인 이상의 건축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원을 피보험자로 한다. 물론 강제가입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전원가입이나 일부가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위험의 역선택을 배제하는 측면에서 실무상 전원가입의 경우만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인수한다.

1) 擔保하는 損害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인 기타 업무보조자가 설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말미암아 당해업무의 대상이 된 건축물에 멸손, 훼손이 생긴 경우 그 사고에 따른 손해 및 그 사고에 의한 타인의 신체장해(사망 포함), 재물손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法律上的 損害賠償責任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담보한다. 이 보험의 담보범위는 건축물의 設計業務에 限定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업무, 지질조사, 측량, 건축물의 평가, 감정 등의 업무에 대한 책임은 담보되지 않는다. 제3자에 대한 손해는 설계 자체보다도 공사감독에 기인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보험목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된다.

2) 保險事故

보험금지급의 요건으로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발생시킨 건축물 멸손사고가 보험기간중에 발견되어야 하므로 보험사고는 건축물멸손의 발견이 된다. 그러나 단순한 사고발견주의는 아니며 原因事故主義를 병용하고 있다. 동일보험기간중에 설계업무의 수행과 사고의 발견이 행하여진 경우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기간중에 발견된 사고인 경우에도 보험기간 개시전에 수행된 업무에 기인하는 때는 다음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첫째, 당해업무의 수행시(피보험자가 하자있는 설계도서를 인도한 때)에 동종의 보험계약이 당해보험자와의 사이에 체결되어 있을 것. 둘째, 그러한 보험계약이 당해보험계약의 시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을 것. 다만 최초의 보험계약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개시전 1년간에 수행한 업무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할 것(보험책임부담보조항), 다시 말하면 최초의 보험계약

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기간중에 건축물멸손사고가 발견됨을 요하는 것과 동시에 설계업무의 수행시부터 사고 발견시까지 보험계약이 계속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계약하에서는 업무수행시부터 사고발견시까지 계속적으로 付保된 부분을 한도로 하여 보험자는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약관에도 業務修行時와 事故發見時에 보험금액이 차이가 있는 때에는 적은 쪽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美國의 專門家 責任保險

가. 概要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은 전문직업내용이 사람의 身體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非行賠償責任保險(Malpractice Liability Insurance)과 瑕疵賠償責任保險(Errors and Omissions Liability Insurance)으로 구분되는 바 전자는 사람의 신체에 관한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으로서 의사배상책임보험(Doctors Malpractice Liability Insurance) 및 미용사배상책임보험(Beauticians Malpractice Liability Insurance)이 이에 속하며 후자는 사람의 신체 이외의 전문직업에 관한 보험으로서 이에 관한 주요보험으로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공인회계사배상책임보험(Certified Public Accountant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건축사 및 기사배상책임보험(Architects and Enginee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변호사배상책임보험(Attorneys/Lawye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보험중

개인배상책임보험(Insurance Brokers/Agent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정보처리업자배상책임보험(Data Processo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부동산중개업자배상책임보험(Realto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신탁자배상책임보험(Fiduciarie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종묘판매업자배상책임보험(Seedmen'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등 이다.

나. 主要 專門職業 賠償責任保險의 概要

1) 醫師賠償責任保險

의사가 醫療業務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醫療事故(Medical Incident)로 수진자에게 신체장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한다. 미국은 의사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병원배상책임보험(Hospital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과 의사배상책임보험(Physicians, Surgeons and Dentist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을 구분하고 있는 바 양자의 차이점은 후자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의사 고유의 전문직업상의 醫療事故만을 담보하는데 비하여 전자는 의사 고유의 의료사고 외에 병원에서 환자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이나 의약품 기타 의료처리기구의 결함에 기인된 生産物危險(Products Risk-이는 본래 일반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이다)까지 담보하는 점에 있다. 의료사고(Medical Incident)라 함은 의사 본인의 의료행위는 물론 의사의 보조자인 간호사, 의료기사의 醫療補助行爲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치료행위는 물론 시술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부작위) 발생하는 사고를 포함하며(Failure to Render the Professional Services)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처음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Claim-made Basis)를 담보의 기준으로 한다.

2) 公認會計士賠償責任保險

공인회계사로서의 피보험자가 회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주의, 오기 또는 탈루에 의하여 피감사인의 재무에 관한 서류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虛僞로 기재하였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漏落된 것을 허위가 아니거나 누락되지 아니하였다고 증명함으로써 피감사인의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동 보험의 담보위험은 상기와 같은 점에서 피보험자가 회계업무수행 중 타인에게 입힌 身體障害(Bodily Injury)나 有體物에 입힌 물리적인 손괴(Destruction of Tangible Property)에 대한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아니한다. 또한 名譽毀損(Civil Libel)에 관하여는 약관에 따라 담보위험으로 하거나 면책위험으로 하기도 하며 담보기간 중에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사고를 담보의 기준으로 한다(Claims-made Basis Policy).

3) 建築士 및 技師賠償責任保險

건축사나 기사로서의 피보험자가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不注意나 怠慢으로 인하여 도급업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한다. 동 보험은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담보하여 身體障害(Bodily Injury)를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人格侮辱(Personal Injury)은 담보하지 아니한다.

또한 동 보험은 손해배상청구기준증권(Claims-made Basis Policy)이며 소급담보시에는 遡及擔保日字(Retroactive Date)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만기후의 확장담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의 延長擔保條項(Extended Reporting Period Endorsement)을 첨부하여야 한다.

4) 辯護士賠償責任保險

변호사로서의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직무상의 하자로 수입인에

게 입힌 재산상의 金錢的 損失(Monetary Loss)을 보상한다.

변호사의 전문업무의 범위는 소송업무 외에도 변호사와 고객간의 통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管理業務나 信託業務를 포함하며 또한 그러한 업무는 변호사 자신에 의한 경우 외에 변호사의 被用人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담보하는 손해의 종류에 관하여 위탁인으로 한정된 타인의 金錢的 損失만을 보상하되 유체물을 손괴함으로써(Destruction of Tangible Property)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아니하며 아울러 身體障害(Bodily Injury)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담보하지 아니하나 名譽毀損에 관한 人格侮辱(Personal Injury)은 특약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다.

담보의 기준에 따르는 보험증권의 형태는 손해사고기준증권(Occurrence Basis Policy)과 배상청구기준증권(Claims-made Basis Policy)이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다.

5) 任員賠償責任保險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피용인은 고용관계인데 비하여 임원은 위임관계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수입인이 된다. 회사의 이러한 任員(Director)이나 被用人(Employee)이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주의로 회사에 입힌 金錢的 損害(Monetary Loss)에 대하여 피용인의 경우에는 身元保證保險(Fidelity Insurance)으로 담보하는 반면에 임원의 그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바로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으로서 구체적인 책임부담의 대상은 그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가 된다.

한편 임원의 업무수행상의 瑕疵로 발생하는 책임의 형태는 個人的인 것과 會社의 責任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동보험약관의 담보위험도 구분되어 選擇擔保(Optional Coverage)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호사 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동 보험은 보편적으로 賠償請求基準證券(Claims-made Basis)으로 담보한다.

6) 美容師賠償責任保險

동 보험은 이용사나 미용사의 이·미용업무중 전문직무상 하자로 인하여 고객에게 입힌 身體障害(Bodily Injury)나 재산손해(Property Damage)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의사배상책임보험과 함께 背任賠償責任保險(Malpractice Liability Insurance)에 속한다. 동 보험은 하자배상책임보험(Errors and Omissions Liability Insurance)과는 달리 사고가 일반배상책임과 같이 “Occurrence”이나 의사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사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일자를 어느 특정의 한 날짜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損害事故를 기준으로 담보하고 있다.

7) 種苗販賣業者賠償責任保險

동 보험은 종묘 판매업자가 판매한 씨앗이 불량품이거나 상표가 잘못 부착됨으로써 씨앗의 購買者가 입은 損害를 보상하며 약관의 형태는 손해배상청구기준증권(Claims-made Basis Policy)이 일반적이다.

본래 제품의 하자에 기인된 배상책임은 일반배상책임보험으로서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의 담보분야인 점에서 동 보험은 담보위험에 있어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과의 중복여부가 문제되는 바 동 보험은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으로하는 生産物 自體(Products Itself)의 위험만을 담보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담보위험의 중복을 조정한 것이다(지수현, 1995 :54~487).

다. 建設管理 專門職責任保險

다음의 <表 V-5>은 건설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 전문직 책임보험을 취급하는 현행 보험회사들의 약관을 비교한 것이다. RA/MCO社, PUA社, CMAA Lloyds社, CNA社, Continental社의 CM약관 기준을 살펴보면 PUA社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CM을 위해 따로 약관을 작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CM에 대한 정의 자체를 약관에 따르 두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약관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보아도 이들 내용들이 CM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表 V-5> CM PLI(專門責任保險)를取扱하는 現行 保險會社들의 比較

일반 사항	RA/MCO	PUA	CMAA Lloyds	CNA	Continental
약관이 CM을 위해 작성되었나?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착오가 적기에 완전히 부보되나?	예	예: 부주의, 착오, 누락의 경우	예	예: 별도의 배서를 통하여 가능	예
예상되는 예외사항 비용이 있나?	아니오	예	아니오	삭제- 별도의 배서를 통해	아니오
CM이 정의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약관의 조항					
손실의 정의	경제적손실에 대한 혹은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에 대한 기관 또는 개인을 보상해야 하는금액	형벌, 과료 벌금, 감봉 혹은 회수, 철회를 제외함.	벌금, 손상, 과료 및 법률에 의해 보험지급 불가 항목을 제외한 판결, 제정, 분쟁해결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벌과금 손해를 제외함.	보험가입자가 지급해야 할 모든 보상금액, 단 벌금, 과료, 형벌 등은 제외됨.

資料: CMAA, *Construction Manage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 A Review of Lloyds of London Form CM/94*. 1994. 9.

〈表 V-5〉 계속

약관의 조항	RA/MCO	PUA	CMAA Lloyds	CNA	Continental
벌과금 (Punitive Damages)	보험약관 발금주에 의해 요구되어지지 않으면 제외됨.	제외됨.	제외됨.	제외됨.	제외됨.
방어비용 (Defense Costs)	한도내에서, 공제여부에 달려 있음.	한도내에서, 공제여부에 달려 있음.	한도내에서, 공제여부에 달려 있음.	한도내에서, 공제여부에 달려 있음.	한도내에서, 공제여부에 달려 있음.
해결조항 (Settlement Clause)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요구함. 보험가입자가 동의를 거절하고 소송, 상소를 제기할 경우 보험사의 책임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1) 분쟁이 해결되어지는 금액 2) 그것을 거절한 날 까지 발생한 클레임 경비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요구함.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의 추천을 초과하는 재정 및 판결에 대해 책임이 있음.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요구함.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의 추천을 초과하는 재정 및 판결에 대해 책임이 있음.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요구함.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의 추천을 초과하는 재정 및 판결에 대해 책임이 있음.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요구함.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의 추천을 초과하는 재정 및 판결에 대해 책임이 있음.
부보되는 행위 (Covered Acts)	부주의한 행동,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수나 누락	선언부에 명시된 전문적인 용역에서 발생하는 행위, 착오나 누락	보험가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에 의한 혹은 보험가입자에 의해 전문적인 용역이 제공되어지는 착오 또는 행해진 부주의한 행위, 실수나 누락	전문적인 용역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부주의한 행위, 실수나 누락	보험가입자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 혹은 보험가입자의 그릇된 행위

〈表 V-5〉 계속

약관의조항	RA/MCO	PUA	CMAA Lloyds	CNA	Continental
부보되는 자 (Covered persons)	선언부에 명시한 주체, 전문적인 행위를 한 현재 및 과거의 사람, 상속인 및 법적대리인	선언부에 명시한 주체, 전문적인 행위를 한 현재 및 과거의 사람	선언부에 명시한 주체, 전문적인 행위를 한 현재 및 과거의 사람, 상속인 및 법적대리인	선언부에 명시한 주체, 전문적인 행위를 한 현재 및 과거의 사람, 상속인 및 법적대리인	선언부에 명시한 주체, 전문적인 행위를 한 현재 및 과거의 사람, 상속인 및 법적대리인
약관이 적용되는 지역 (Policy Territory)	미국, 그의 부속지역 혹은 캐나다	미국 및 부속 지역에서 제기된 클레임, 캐나다, 혹은 보험사가 방어해야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가 없는 지역. 보험사는 보험사의 승인하에 부보되는 지역을 벗어난 클레임을 보험가입자가 해결하고자 한다면 방어비용과 해결비용을 변상함.	전세계	전세계, 단 보험사가 북아메리카를 벗어나서 제기된 클레임을 방어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가 없는 지역	전세계, 미국이나 그의 부속지역 혹은 캐나다에서 제기된 클레임
주의 사항 (Awareness Clause)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확장된 보고기간 (Extended Reporting Period)	30일 자동 보고조항	확장된 발표는 없음.	만기 보험료의 100%에 대해 1년간 보장	포함함 단 보험요율과 계획은 그때 유효함.	만기보험료의 100%에 대해 1년간 제공함.

<表 V-5> 계속

약관의 조항	RA/MCO	PUA	CMAA Lloyds	CNA	Continental
공제조항 (Deductible)	별도의 공제 조항은 별도의 부주의한 행위, 착오 혹은 누락에 대해 동반클레임의 수에 관계없이 각각에 대해 단 한번 적용됨.	하나의 클레임으로써 취급되는 관련 클레임	하나의 클레임으로써 취급되는 관련 클레임	하나의 클레임으로써 취급되는 관련 클레임	하나의 클레임으로써 취급되는 관련 클레임
과실있는 업무행위 (Faulty Workmanship)	선언적인 구제약관을 통해 정의됨.	전문적인 활동약관에 포함됨.	제위험약관에 의해 제외됨.	건설, 조립 및 기타에 대해 제외됨.	제외됨.
다른 보험	약관은 어떤 다른 유효하고 수집가능한 보험을 초과함.	약관은 어떤 다른 유효하고 수집가능한 보험을 초과함.	약관은 초과함.	약관은 초과함.	다른 약관이 초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한 약관은 초과함.
클레임의 정의	부주의한 행위, 착오나 누락을 한 다른 사람에 의해 제기된 중재에 대해 출두명령의 용역	보험가입자에 적절하지 않은 용역에 한정되지 않은 돈과 용역의 요구	클레임을 유발한 상황의 통지가 부보됨.	상황부보에 대한 통지는 별도약관에 의해 추가됨.	잘못된 행위를 진술하도록 하는 요구 (그러나 경고 조항은 포함됨)

3. 프랑스 建築家 共濟組合

건축가 전문책임보험은 保險法과 다음에 나오는 一般/特殊 條項들의 적용을 받는다. 건축가 협회에 가입한 건축가들만이 현 계약의 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 契約 目的

건축가 전문책임보험의 목적은 건축가로서의 정상적인 행위에서 기인하는 職業的 責任에 대한 金錢的인 結果로부터 보험 가입자를 보호해주는 데 있다. 보험에서 보장대상은 일부 예외조항외에는 특수 조항 범위내에서 뚜렷한 재해인 경우에 부여된다. 보험은 계약의 效力 發生日과 契約 解約이나 滿期日 사이에 제기되는 요구사항들에 적용되며, 요구사항들이 피해를 유발시키는 사실에 연관되어 있을 때 적용된다. 그렇지만, 따로 떨어진 別個의 建物들에서 야기된 손실일지라도 이 사실들은 하나의 재해를 구성한다고 간주한다. 보험에 든 건축가가 주관한 작업이 동일한 프로그램의 적용하에, 동일한 고객을 위해 이루어지고 또 위에 인용한 피해 건물들 전체에 적용되는 시장을 갖춘 동일한 기업에 의해 실시된다는 조건에서 비록 이들 재해가 동일한 기술적 원인에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결정한다. 특수 조항을 조건으로 하고, 이 재해로 인해 잠정중단의 효력발생이나 해약전 피보험자가 완수한 일로부터 責任所在 問題가 제기된다 할지라도 잠정중단 기간동안이나 해약 후에 일어나는 재해에 대해서는 더이상 보장이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일정한 조항들을 조건으로 하고, 해약조항에 따라 피보험자는 解約 效力 發効日에 완공되는 공사에 대해 앞서 인용한 보장의 유지에 동의할 수 있다. 이 보장의 유지는 최근 3년간의 연 평균 총 보험료의 4배로 정해진 一時拂 保險料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보장 요구는 해약 통고로부터 2달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 例外條項

보험으로부터 제외되는 조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① 피보험자가 協約이나 契約에 의해 認定하는 責任으로서, 이

협약이나 계약없이 피보험자는 이 책임을 떠맡지 않으며, 실제로 자신이나 자신이 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에 의해 이행되지 않은 행위

- ② 피보험자의 故意的인 行爲에 의해 일어난 재해
- ③ 형법상의 행위에 부수되는 범칙금
- ④ 관리행위, 일반적으로 商業的인 性格을 띠는 모든 행위

손해나 책임이 다음의 요소들로부터 기인하는 경우에도 보장으로 부터 제외된다.

- ① 火災나 爆發, 화재나 폭발이 위의 제1항의 보장에 해당이 되며 피보험자의 책임을 요하는 사실로부터 나온 결과일 경우
- ② 광산개발로 인한 地層의 움직임
- ③ 지진, 홍수, 폭풍, 태풍, 해일이나 기타 지각변동 등의 天災 地變的인 특성을 나타내는 자연현상들
- ④ 內戰, 暴動이나 國民蜂起 등 재해와 이러한 사태 사이의 관련을 입증해내는 것은 보험업자의 일이다.
- ⑤ 폭발, 열의 방출, 원자핵이나 방사능 전환으로 인한 放射災害, 또는 분자의 인위적 가속으로 발생하는 放射能 影響으로 인한 災害

다. 契約의 成立 및 期間

계약은 피보험자와 보험업자가 署名을 한 순간부터 완전히 성립하는 것이다. 契約의 成立 순간부터 보험업자는 契約 履行을 계속한다. 특수 조항이 정하는 날짜와 시간으로부터, 특수조항이 없으면 보험 납입금을 지불한 그 다음 날 정오부터 契約의 效力은 발생한다. 동일 조항들은 계약에 합당하게 적용된다. 계약은 특수조항이 예시한 기간동

안 체결된다. 위 제1항에서 언급한 보장은 후에 나오는 바와 같이 계산되고 지불되는 연납입금을 통해 매년 확보된다. 그렇지만, 피보험자의 死亡이나 모든 職業活動의 中止時에도 이 보장은 법적인 시효때까지 그대로 지속된다. 단, 징계처분에 의해 건축가 협회에서 제명될 경우는 예외이다.

라. 解約

다음과 같은 경우 정상적인 만기일 이전에 계약은 해제될 수 있다.

1) 被保險者나 保險業者에 의한 解約

3년마다, 적어도 3달의 事前通報期間을 거쳐 계약의 효력만료일에 해약 가능하다. 그렇지만, 두번째의 3년 주기가 지난 후에는 위에 규정된 바와 같은 형식과 기간으로 해약이 매년 제기될 수 있다.

2) 保險業者에 의한 解約

- ① 보험료의 支拂 不履行時(보험법 L.113-3항)
- ② 가입시나 계약기간 동안 위험의 신고에 있어서 誤謬나 不正 確한 點이 있을 시(보험법 L.113-9항)
- ③ 제8항에 예시된 계약기간 동안 작업의 分類評價書 提出을 하지 않은 경우
- ④ 재해가 있는 후, 피보험자가 보험업자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다른 계약들을 해약할 권리를 가졌을 경우(보험법 R.113-10항)
- ⑤ 협회원의 유고나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보험법 2절 L.121-10 항의 규정들에 적합한 방법으로 건축 사무실 재산을 이전할 경우

3) 被保險者에 의한 解約

- ① 보험증권에서 언급한 加重事由의 消滅時, 그리고 보험업자가 그에 따른 보험금의 인하를 거부할 경우(보험법 L.113-7항)
- ② 재해가 있는 후, 다른 계약을 보험업자가 해약했을 경우(보험법 R.113-10항)

4) 自動的인 解約

- ① 피보험자가 懲戒處分에 의해 건축가 협회에서 除名되었을 경우
- ② 보험업자 承認의 申請 撤回時(보험법 L.326-12항 문단 1, R.326-1항)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약에 있어서, 해약전 기간에 부수하는 보험금액은 보험업자가 취할 수 없다. 보험금이 사전에 지불되었다면 피보험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피보험자에게 해약할 권리가 있을 경우, 등기우편을 통하거나 본사에 영수증을 신고함으로써, 아니면 사법외적인 행위를 통해 자유롭게 해약을 할 수 있다. 해약의 권리가 보험업자에 있을 경우에는, 사법외적인 행위나, 피보험자의 가장 최근 주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해서 해약할 수 있다.

마. 一般的인 特性을 나타내는 災害의 申告/ 災害의 加重

현 계약은 피보험자의 신고가 있는 후에 성립된다. 그러므로 피보험자는 보험업자가 災害의 程度를 評價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인정되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 ① 아주 한시적인 특성을 가진 건축공사, 다시 말해 일년 이하의 기간동안 진행되는 작업
- ② 피보험자의 감독하에 진행되었고 監督院의 事前 拒否 對象이 될 수도 있었을 건축물, 그리고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경우

계약이 진행 중인 동안 피보험자는 등기우편으로 특수조항이나 특별 협약에 제한적으로 명기된 모든 災害의 變更事項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신고는 변경사항이 피보험자의 행위에서 연유된 것일 경우 그 변경이 있기 전에 해야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순간으로부터 8일 이내에 한다.

새로운 상황이 계약체결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업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던가 아니면 좀더 높은 보험금을 조건으로 했어야 한다. 災害 變更이 재해가중을 야기할 경우 재해신고를 하지 않은 피보험자는 보험법 L.113-8항과 L.113-9항에 예시된 제재를 받게 되며 보험업자는 보험법 L.113-4항에 예시된 조건하에 열흘 동안의 事前通報期間을 거쳐서 解約을 하거나 새로운 보험금 액수를 提示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피보험자가 새로운 보험금 액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험업자는 열흘간의 사전통보기간을 거쳐 해약을 할 수 있으며, 재해의 가중이 피보험자의 행위에서 야기되는 경우 법원에 賠償請求를 할 수 있다.

재해 발생빈도의 증가나 재해수습비용의 증가와 같은 一般的인 技術的 特性의 가중시에는, 입법상 혹은 법해석상의 변화가 개인이나 집단의 責任所在를 加重시키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새로운 계약변경의 동기를 알림으로써 새로운 보험료를 제시할 수 있다. 가입자가 이 새로운 보험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한 후 열흘 후에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바. 다른 保險加入의 申告

현 계약이 보장한 재해가 다른 보험에 의해 적용되고 있거나 어찌 다 적용이 될 상황일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업자에 定式으로 申告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5항에 예시된 바와 같이 제재를 받게 된다.

사. 災害의 減少

보장받는 재해의 정도에 있어서 피보험자에 의해 縮小가 正當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험료는 줄어들 수 있다. 이 할인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을 후에 만기 보험료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아. 保險料

建築協會 會員은 보험업자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계산산출 방식은 후에 나오는 바와 같이 결정된다. 이 보험료 외에 보험계약에 대한 조세가 추가되며 그것의 회수는 금지되어 있지 않다. 또한 協同基金 形態의 會費도 추가된다. 보험증권에 가입시 회원은 특수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선금을 지불해야 한다.

프랑스 건축가 공제조합 정관 제2절에 의거하여 회원이 의무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납입금은 정상 납입금의 2와 1/2배이다. 매년, 적어도 3월 31일, 회원은 전년도에 행한 직업활동과 자신의 지휘하에 행해진 작업의 양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직접 지불해야 한다. 각 공사마다 작업의 분류평가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한다.

여러 명의 건축가가 동일한 작업에서 함께 일할 경우, 이들은 작업에서 자신들이 차지하는 이득에 비례하는 작업량에 대해서 각자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保險保障은 건축가들이 자신들이 행한 작업 분량을

정확하게 신고했을 때에만 작동되며, 다수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금액은 특수조항에 규정된 액수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없다.

같은 작업에서 함께 일하는 한 명이나 다수의 건축가들은 프랑스 건축가 공제조합에서 보장을 받지 못한다. 部分的인 保險料만을 받게 되는 보험회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보험료에 따라 줄어드는 보장만을 해줄 수 있다. 해당 건축가 중 한 명이 제12항에 예시된 규정을 조건으로 보장권리를 잃을 경우에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契約履行을 계속할 보험업자의 권리와 상관없이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등기우편으로 피보험자에게 독촉장을 보낸 후 30일이 지난 다음에야 보험보장은 정지될 수 있다.

보험업자는 위에 명시된 30일 기한의 만기후 10일이 지나면 해약할 권리를 가진다. 督促狀과 解約書 등기우편본의 복사본은 건축공제조합 회원이 속해있는 건축가 협회 지회에 제출한다. 보험료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보장보험의 중지는 납입일에 보험료를 내야하는 의무를 피보험자에게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인용한 계약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작업별 분류평가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피보험자는 10일안에 이 의무를 충족시킬 것을 명하는 재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받게 된다. 이 기한을 넘어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업자는 최근에 제출된 作業場別 分類評價를 基準으로 해서 계산하고 50% 더 추가된 임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는데 미제출된 분류평가를 받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임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업자는 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해야 하는 자신의 법적인 권리와 상관없이 보험보장을 중지시키고 현 조항의 8, 9절에 예시된 형식과 기한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독촉장과 해약서 등기우편본의 복사본은 건축공제조합 회원이 속해있는 건축가협회 지회에 제출한다.

작업별 분류평가에서 漏落이나 誤謬가 있을 경우, 회원은 보험법 L.113-10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 보험료 외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배상금액은 어떤 경우에도 漏落된 保險料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누락이나 오류가 그 특성, 중대성이나 반복횟수로 볼 때 詐欺性이 있다고 판단될 때, 위에 예시한 배상금 지불과 관계없이 보험회사는 재해에 지급된 보험금의 환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어느 때라도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申告의 分類評價와 監督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대표의 방문을 수락해야 하고 소지하고 있는 모든 서류자료를 동원해서 자신의 신고의 정확성을 증명해야 한다.

자. 災害 發生時 被保險者의 義務

재해가 발생하는 즉시로 피보험자는 災害의 擴散을 막거나 損失을 제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 ① 현 계약의 보장을 동원시킬 수 있는 재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즉시로, 적어도 5일 이내에 書面이나 口述로(영수증 확보) 보험업자에게 통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연한 사건이나 불가항력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보장을 박탈당한다.
- ② 최단 시일내에 災害 狀況, 밝혀졌거나 추정되는 災害 原因, 被害의 性格과 대략적인 査定額 등을 보험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현 계약이 보장하며 자신이 책임을 져야하는 재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통지, 편지, 호출장, 독촉장, 소환장, 사법외적 증명서와 소송문서, 본인 자신이나 직원에게 발송, 통보, 양도된 다른 문서들은 받은지 48시간 이내에 보험업자에게 전달한다.

피해액을 허위로 과장시키고 재해 증명을 위해 詐欺的인 方法이나 거짓 文書를 사용하는 피보험자는 재해 보장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다. 자기 자신의 보호와 재해 수습을 위해, 피보험자는 요구받은 모든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이동과 체제비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개인적인 지출을 할애해야 하고, 본인의 보호와 재해 수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해야 한다.

차. 特別 條項

현 계약에 의해 보장되는 責任所在의 問題를 제기하는 행위의 경우, 보장의 한계내에서 보험업자는:

- ① 민사, 상법 혹은 행정 재판에서 피보험자의 변호만을 맡으며, 소송을 주도하고 항소심을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다.
- ② 형사재판에서 희생자측이 변상을 받지 않은 경우, 변호를 주도하고 참가할 권한을 가지며 民法上 責任이 있는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항소심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보험업자는 피보험자의 동의하에서만 抗訴審을 실행할 수 있으며, 만약 피보험자가 고소된 대로 법정에 소환되면 민사상의 이익에 국한될 경우에 과기상고의 예외가 행해진다.

보험업자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보장의 범위내에서 피해자나 그들의 권리 소유자와 화해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진다. 보험업자를 통하지 않고 일어나는 어떠한 책임소재의 인정이나 타협, 중재합의도 항변할 수 없다. 희생자에게 응급처치를 해주었다는 사실이나 구체적 사실의 자백은 법적인 혹은 道義的인 義務로서 누구나가 해야할 구조행위인 경우에는 책임소재의 인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소송비용, 영수 및 기타 해결비용은 보장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다. 그렇지만, 많은 벌금형이 언도되었을 경우에는, 언도금액에서 각각의 몫에 비례해서 保險業者와 被保險者가 부담한다. 희생자나 그 권리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은 연금 형식이다. 그리고 배상금 지불의 안정성을 위해 주식의 매입을 지시받았다면, 보험업자는 보장에 있어서 보험금의 처분가능한 부분을 사용한다. 법 판결이 어떤 특별 보장도 명령하지 않았을 때 자본형태인 연금의 가치는 그 엄밀한 遺留分의 계산에 적용가능한 공식에 의해 계산된다. 만약 이 가치가 처분 가능한 보험금의 액수보다 낮으면, 연금은 보험업자의 책임이다. 그 반대의 경우, 보장되는 금액의 처분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는 자본형태의 연금 부분만이 보험업자의 부담이다.

카. 保險法 R.124-1項

재해가 있는 후에 피보험자가 저지른 의무이행의 위반으로 보험보장이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나 그 권리 소유자에 대한 배상을 면제받을 수 없으며, 보험업자는 保險金 未納에 대해 계약의 정기적인 해지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렇지만 보험업자는 피보험자에 대해 자신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청구소송을 행사할 수 있다.

타. 賠償

배상금의 지불은 양 당사자 사이의 妥協한 날, 혹은 실정법 판정으로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된다. 항고시에 이 기한은 이의신청의 철회 통보를 기점으로 계산한다.

파. 權限의 委任

보험법 L.121-1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업자는 자신이 지불한 배상금의 한도내에서 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에 대해 피보험자의 권리와 행위를 대리한다. 이 대리행위가 피보험자로 인해 보험업자에게 더이상 유리하게 행해질 수 없다면, 보험업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난다. 이 규정들의 예외로서, 보험업자는 피보험자의 자식, 직계존속이나 비속, 직원, 고용인과 피보험자의 주택에서 통상 기거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송권도 없다. 위에 언급한 사람들이 악의적인 행동을 할 경우는 제외된다.

하. 時效

현 계약에서 과급되는 모든 소송은 보험법 L.114-1항, L.114-2항이 정한 조건에 따라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으로부터 2년이면 시효가 끝난다.

4. FIDIC의 一般用役 契約書上의 關聯條項

가. 契約書 原文

1) 제16조 當事者들 間의 責任

16.1 設計者의 責任: 설계자는 만약 제5조 ①항의 위반이 발주자에 대해서 성립된다면 계약과 관련되거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16.2 發注者의 責任: 발주자는 설계자에 대한 의무의 위반이 성립된

다면 설계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16.3 補償: 만일 계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보상은 단지 다음 조건에 의해서만 지불된다.

- ① 보상은 그런 위반의 결과에 의해 합리적으로豫想되는紛失 또는 損傷의 당한 程度에 제한하고, 그 외에는 보상하지 않을 것이다.
- ② 어떠한 경우라도, 보상의 정도는 제18조 1항에 규정된 정도에 제한된다.
- ③ 만약 계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제3자와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어지면, 계약당사자가 지불할 수 있는 보상의 비율은 그의 違反의 程度에 기인한 책임의 비율에 제한되어진다.

2) 제17조 責任의 存續期間

청구가 전형적으로 제2편에 기인한 進行期間의 完了前에, 또는 법에 명기된 그런 빠른 시간보다 먼저 청구하지 않는 한, 발주자와 건설자 모두는 어떤 사건의 결과로 야기된 분실과 손상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어지지 않는다.

3) 제18조 補償과 保證(賠償)의 限界

18.1 補償의 限界: 제16조 하의 책임에 관해서 계약당사자가 다른 사람(당사자)에게 지불할 보상의 최대치는 제2편에 기술된 정도에 한정된다. 이 제한은 계약서 상에 달리 강조되어지거나 제31조 ②에 규정된 계약상의 보상을 침해하지 않는다. 각각의 당사자는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양을 超過하는 補償에 대해서

다른당사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拋棄하는데 동의한다. 계약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고 이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청구자는 청구의 결과로 야기되는 비용을 다른 당사자에게 완전히 상환해야 된다.

18.2 賠償(保證): 적절한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발주자는 계약과 관련되거나 계약 중에 발생한 제3자에 의한 그런 청구를 포함한 모든 청구의 不利한 效果에 대해서 설계자에게 배상한다.

- ① 제19조 조건상의 합의되어 보험자에 의해 보호되어지는 정도안에서 제외
- ② 제17조에 규정된 責任期間의 滿了後에 이루어진다.

18.3 例外: 제18조 1항과 제18조 2항은 아래와 같은 경우 청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① 계획적인 불이행 또는 분별없는 不正行爲
- ②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

4) 제19조 責任과 補償을 위한 保險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서면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① 제16조 1항 상의 발주자 책임에 대한 보험 가입
- ② 용역의 계획을 위하여 발주자와 설계자의 첫 초대(대면)한 날에 설계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것에 비추어 제16조 1항에 기인한 책임에 대해서 보험을 더 증가시켜야한다.
- ③ 민간/제3자의 책임에 대한 보험 가입
- ④ 용역의 계획을 위하여 발주자와 민간/제3자의 첫 대면한 날에 민간/제3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것에 비추어, 민간/

제3자의 책임에 대해서 보험을 더 증가시켜야한다.

⑤ 다른보험에 대한 영향(효과)

그러한 보험과 보험증가의 비용은 발주자의 경비가 된다.

5) 제20조 發注者の 財産保險

서면통지상 발주자에게 다른 요구가 없다면 설계자는 발주자에게 받아들여지는 조건에 保險에 加入할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 ① 제6조상에 제공되어지고 지불되어지는 발주자의 財産의 紛失 또는 損傷에 대해서
- ② 그런 재산의 사용중 증가하는 책임에 대해서 그러한 보험의 비용은 발주자의 경비가 된다.

나. 契約書 解説

白書(White Book)는 제16조 1, 2항의 계약의무위반에 대해서 계약상의 相互責任을 규정한다. 이 책임은 제16조 3항 ①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분실 또는 손실에 대해서 財政的으로 補償해야하며, 제18조 1항의 규정 정도 안에서 제한되어진다. 그리고 제16조 3항 ③의 다른 사람들과 공동책임의 경우는 책임의 정도에 대해서 지불되어져야한다. 책임은 제17조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정된다. 설계자는 기간이 지나 보험자로부터 付保 받지 못 하는 모든 청구에 대해서 발주자에게 보상을 받는다(제18조 2항). 그러나 만약 설계자가 故意的이고 分別力없는 불이행에 대해서 제한과 배상 모두를 제공받을 수 없다(제18조 3항). 설계자는 만약 합리적인 상업적 비율이 이용할만 하다면 계약상 義務의 違反 그리고 발주자에 의해서 요구되어 질지도 모르는(비계약상 그리고 법률상의) 民間에 대한 義務의 違反에 대해서 보험 부보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보장은 기본적인 부보의 초과하는 정도에서 설계자의 비용이 된다(제19조). 이런 주제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의견은 제3편의 알맞은 장에서 규정되어진다.

1) 제16조 當事者間の 責任

조항들은 공정하다. 보장이란 단어는 법률적 조건의 더 일반적인 조항(string)대신에 사용된다. 왜냐하면 經濟的 補償은 마음속에 그려진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평가들의 상황통치는 제16조 3항에 정의되어 있다. 제16조 3항 ③의 下部條項은 만약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비유용한 것을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한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의도되어 진다.

〈設計者間の 責任分配〉

제16조 3항은 별문제로 하고, 공사의 다른 단계에서 발주자에 의해서 고용되어진 다른 설계자들 사이에 책임이 나누어질지도 모를 때, 이러한 환경을 부보할 조항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계약이 성립되어질 당시 당사자 둘 사이에 설계자가 그가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중요하다.

2) 제17조 責任의 存續期間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청구가 유효하려면, 규칙적인 지적은 제2편에 규정된 기간 안에 주어져야 한다. 절차상의 동의는 白書(White Book)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따라서 관련법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몇 사례중 제41조의 경고는 충분할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필요할 지 모른다. 표면상으로 責任의 存續期間을 선택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관련

법은 선택권이 있거나 또는 없도록 존속기간을 명할지도 모르고 또는 약간의 위험 또는 모든 위험을 조절할지도 모른다. 관련법상에 명확한 표기의 결여 속에서, 10년은 합리적이고 법적 권한의 한 구역 내에서 받아들여질 것 같은 형태라고 제안되어진다. 가장 중요한 어려움은 존속기간이 경과하기 시작했을 때, 명시하고 있는 위험상에서 어떻게 결말을 짓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 어떤 조항중의 하나는: “관련법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그러한 날이 용역의 완전 또는 완료보다 늦어지면 안된다”. 관련법상의 보험안의 전문화되어지는 법률가 또는 중개인이 고려되어지는 것이 가능한 때에 추천된다.

3) 제18조 1항 補償의 限界

본문은 여기에 정한 한계에 대해서 사전 동의한 보상은 가능하게 고려된다: 제31조 ②항에 遲延된 支給은 한 예로 보여준다. 이런 형태는 다른 것을 고정 시킬 때 기억되어질 필요가 있다(예로서 지연된 이행). 동의된 보상은 정리된 損失 또는 利子(Interest)가 보다 더 친숙한 표현이 되곤 하는 곳에 사용된다. 이것은 번역(해석)을 쉽게 만들고, 넓은 응용을 증진시킨다.

4) 제18조 2항 補償

가) 제3자 請求

付保의 限界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제3자 책임의 조건은 발주자에 의해서 설립되고 동의되어야 한다. 그런데 TOR은 설계자에 의해서 얻어질 것으로 요구되는 양을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을 것이며, 긴급한 상황이 질문을 막는다면, 설계자가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양에 대한 제안에 명기하는 데 신중해야 할 것이다. 표

현된 조항은 제2편 A에 만들어져 있지 않다.

나) 發注者の 施工者에 대한 責任

발주자와 건설 시공자와 같은 제3자 사이의 契約上 技術者の 義務를 받아들일 때, 다음의 결과(효과)의 부인(거절)을 관계있는 문서에 삽입할때 제3자에 대한 설계자의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기술자, 기술자의 직원 또는 기술자의 대리인, 기술자의 대리인 직원(Staff) 모두는 계약서상의 그들의 의무 이행을 하던 중의 그들의 行爲와 漏落에 대해서 시공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

5) 제18조 3항 例外

책임이 계획적인 불이행 또는 분별력 없는 부정행위로부터 야기됐다면 책임의 한계는 주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토론 후 이 항은 하찮은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부정행위로서 그러한 항들 중에 대리로 선택되어진다. 왜냐하면 하찮은 부주의는 그런 사법권안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여겨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고의적인 부정행위는 분별력없는 것을 포함한 고의적인 행위와 혼돈된다.

Yellow Book 8장의 참고문헌 15는 “같은 지위(위치) 그리고 같은 환경에 있는 성실한 계약자(시공자)가 저지르곤하는 근면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의 위반을 행하거나 또는 누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하찮은 부정행위” 둘 다 포함하고 있다. 관련법은 불이행이 책임과 보상의 한계를 부인할 것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설계자의 책임은 계약서상의 의무의 이행과 관련해서 보다도 백서(White Book)상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6) 제19조 責任과 補償을 위한 保險

제19조는 발주자에게 만일 설계자가 특별히 위험을 대비해서 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런 付保의 費用과 일반적으로 설계자에 의해서 소유되어진 것을 넘어서는 付保의 증가한 재정을 요구한다. 설계자는 일반적으로 소유된 그의 보험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분리된 또는 직접적인 보상받을 권리가 없다. 일반적으로, 설계자는 관련법에 복종해야 한다. 만일 다른 것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설계자의 관리 상에 있는 신체적인 일들과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일에 사용하는 차량 또는 건물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할 법적인 의무에 응하고, 그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설계자는 설계자의 현재 보험의 총 양과 공제 정도 그리고 조정될 날짜를 계약서상의 기간과 계획에 보여주어야 하며 그 결과 발주자는 요구되어질지 모르는 추가적인 양을 숙고할 수 있다.

7) 제20조 發注者의 財産保險

제20조의 목적은 설비가 발주자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것을 제외한 설계자의 사용을 위해서 발주자에 의해 규정되어 질 때의 상황을 付保하는 것이다.

5. 國內의 責任保險

가. 建設工事保險과 專門責任保險

건설업법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특칙으로 부분적으로 일이 완성되었을 경우에도 대가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國家契約法)에서는 발주처가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회계예규인 건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工事保險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발주처가 경비의 일부분으로 保險料를 상환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專門責任保險(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LI)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損害保險條項을 준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保險體系는 상법에서 크게 人保險과 損害保險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사보험 및 PLI는 손해보험중 특장보험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PLI와 건설공사보험은 몇 가지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건설공사보험과 PLI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LI에도 設計者를 전문으로 하는 것과 監理者를 전문으로 하는 것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PLI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付保對象

- 建設工事保險: 공사물건, 건설설비 및 장비, 건설기계, 잔해물 제거 비용, 주위재산, 제3자보험 등
- PLI: 전문적인 행위 및 업무

2) 付保되는 主要 損害要因

- 建設工事保險:
 -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추락, 소화작업으로 인한 손해
 - 홍수, 범람, 강우, 강설, 사태, 해일, 폭풍
 - 지진, 지면침하, 토사붕괴, 암반붕괴

- 절도, 도난
- 누전, 합선 등 각종 전기적 사고·부실작업, 비숙련 기술, 부주의 (과실), 누락 또는 실수
- PLI: 専門家の失手, 漏落, 不注意

3) 付保에서 除外되는 事項

- 建設工事保險:
 -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 몰수로 인한 손해(다만, 파업, 폭동, 소요의 위험은 특약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故意나 重大한 過失로 인한 손해
 - 원자력 반응이나 放射能 汚染으로 인한 손해
 - 벌과금, 공사지연손실, 성능부족, 계약으로 인한 손실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결과적 (간접)손해
 - 건설용 기계, 설비, 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실(그러나, 이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건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함)
 - 設計缺陷으로 인한 손해
 - 주조, 재질, 제작결함(결함이 있거나 부적절한 재료의 사용 등)을 대체, 수선, 교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그러나, 이로 인하여 다른 정상적인 부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함)
 - 재고조사시 발견된 손해
 - 마모, 열화, 산화, 부식, 침식 등 정상적인 기후조건에 의한 손해
 - ‘제3자 배상책임부문’에서 진동이나 지지대의 제거 또는 약화로 인한 제3자의 신체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그러나 특별히 배서한 경우에는 담보할 수 있다)

- 피보험자의 자기부담액

- PLI:

- 피보험자의 용역계약 또는 고용계약하에서의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신체상해, 질병 또는 사망
- 보험의 가입 또는 유지 및 재정이나 재정문제에 대한 자문과 관련한 피보험자의 과실
- 피보험자의 부정직, 악의, 범죄행위, 고의적 위법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행하여진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 사용, 점유 또는 임차
- 자격있는 전문견적이 견적하지 아니한 공사견적에 관련된 과실
- 명예훼손, 모욕 또는 저작권, 상품권, 상호권의 침해
- 피보험자의 파산
- 도난, 분실 또는 파손된 서류의 재제작비용
- 다른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
- 직·간접을 불문하고 아래의 사유에 기인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된 법적인 책임(핵연료나 핵연료 연소후의 폐기물로부터 나온 이온화된 방사능이나 방사선에 의한 오염, 폭발성의 원자력설비나 그 부품과 같은 방사선, 독성, 폭발성 등의 유해한 성질을 가진 재물)
-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가중시키는 명시적인 보증 또는 하자담보의 제공. 단, 그러한 명시적인 보증 또는 하자담보의 제공이 없더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

4) 保險金의 支給

- 建設工事保險: 건당 혹은 사고당
- PLI: 클레임 발생시

5) 保險期間(擔保期間)

- 건설공사보험: 보통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임.
 - 시작: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시기와 작업의 시작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공사현장에 하역된 시점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
 - 종료: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종기와 공사가 완공되었거나, 발주자에게 인도한 시점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그러나 보험의 목적물이 순차적으로 인도되는 경우, 인도시점부터 해당 물건에 대한 책임은 종료된다(건설용 기계나 설비, 장비에 대한 보상책임은 공사장에 하역된 후 개시되며 현장에서 환수해가는 시점에서 끝난다).
- PLI: 1년단위 혹은 장기간, 공사완공후에도 담보가능, 보통 설계감리로 인한 사고는 완공후 수년간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시점부터 공사완공후 최소 3년 정도는 가입해야 한다.⁴⁾

6) 保險加入方法

- 건설공사보험: 프로젝트 단위
- PLI: 프로젝트단위 혹은 회사단위

7) 保險契約者

- 건설공사보험: 발주자, 시공사 중 보험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계약자가 되지만, 대개 공동명의로 付保하며 감리자도 付保가능하다.
- PLI: 전문가(설계자, 감리자) 혹은 회사

4) 실제로 H건설의 경우, 보험기간을 10년으로 하였고, J. Engineering의 경우 1년단위로 계약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도입된 성수대교 및 가양대교 감리회사의 경우 1년단위로 가입하고 있다.

8) 被保險者

- 건설공사보험: 발주자, 시공사중 하도급업자 등 모두 가능
- PLI: 발주자, 전문가 혹은 회사

9) 保險金額

- 건설공사보험: 공사목적물의 완성가액으로 함. 따라서 공사용 재료비, 노임, 운임, 보험료, 관세, 세금, 기타 경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함. 도급공사의 경우 보험금액은 도급금액으로 한다.
- PLI: 계약에 의한다.

나. 專門職 責任保險 適用事例

1996년 1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책임감리와 관련하여 도입된 PLI은 서울시가 발주한 가양대교 신설공사와 성수대교 복구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外國監理會社가 가입한 것을 시발로하여 전문책임보험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수대교의 경우 Sedgwick Professional Indemnity and Financial Institution Services(보험브로커)에서 Lloyd's 보험사와 여러 보험사를 보험자로 하고 기간은 1995년 6월 1일부터 1996년 5월 31일까지이며 補償金支給限度는 각각의 청구에 대하여 최소 5,000,000파운드이고, 대상은 公共責任에 대해서이다. 피보험자에 의한 각각의 청구에 대한 초과액은 200,000파운드이며 계약기간중에는 이 액수가 1,000,000파운드를 넘지 않고 그 이후에는 각각의 청구에 대하여 50,000파운드이다. 그리고 계약상의 책임보험과 사주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가양대교의 경우 Lowndes Lambert UK Limited(보험브로커)에서 Lloyd's 보험사와 여러 보험사를 보험자로 하고 기간은 1995년 6월1

일부 1996년 5월 31일까지 전문직업인의 付保對象에 대하여 건당 5,000,000파운드를 免責限度로 하고 공제액은 25,000파운드로 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해외합작회사를 포함한 모트 맥도날드그룹 주식회사, 합자회사 및 계열회사들로 하고 있으며, 전문직업인의 業務怠慢에 대하여 부보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개 현장의 保險證書만으로는 위험의 범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전문가의 부주의에 대한 사항을 부보한다고 하지만, 전문가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발생총액이나 건당 免責限度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보험증권에서는 건당 면책한도를 명시해 놓고 있지만 累積總額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누적총액의 경우에는 당해 프로젝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전역에 걸친 프로젝트 전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급시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건별로 어느 한도나 누적 건수까지 제한하게 된다면 실제 保險支給惠澤은 매우 줄어들게 되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보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험증서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한 檢討作業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PLI는 프로젝트단위로 구입하는 개별가입방식과 설계감리회사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하여 일괄로 가입하는 연간 包括契約方法이 있으며 그룹사(민간부문)에서 외국사에게 프로젝트별 감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個別方法을 권유하고 있다(삼성화재, 1996).

현재 우리나라의 가양대교건설공사에 외국감리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계약조건에서 외국 회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주자는 보험과 관련된 제반금액은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험료는 계약자의 부담이고 발주자에게 支給請求

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FIDIC의 경우 保險料 및 保險期間의 연장에 따른 비용은 발주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항과는 상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양대교 감리계약일반조건 제9조 보험〉

9.1 감리자는 용역수행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보험을 확보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보험료 지급의무를 진다. 보험료는 감리자 부담이며 본부 앞으로 청구할 수 없다. 최소한의 보험범위, 보험조건 및 보험회사는 본부에 의해서 수락되어야 한다.

- ①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용역이 수행되는 국가의 국내법이 요구하는 감리자의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이다. 용역의 일부가 하도급 되는 경우 감리자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경우 감리자는 하도급감리자로 하여금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상업일반배상책임보험: 제3자 또는 일반대중의 인적상해 또는 사망, 재산상의 손실 및 손해에 대한 감리자의 책임을 보전할 수 있는 책임보험이다. 감리자는 용역이 하도급 되는 경우 상기 의무는 하도급감리자에게 적용가능한 범위까지 하도급감리자에게 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자동차 종합보험: 용역수행도중에 감리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인적상해, 사망 및 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한국법상의 보험이다. 동 조건은 하도급감리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도급감리자에게 적용한다.
- ④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감리자가 범하든 또는 감리자가 범

적인 책임을 발생시키는 지위에 있는 자가 범하는 간에 여하한 과실,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거나 본부에 전문용역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므로써 야기되는 책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다.

- ⑤ 선박책임보험: 감리자가 소유하거나 빌린 선박을 담보하기 위한 선박책임보험은 최소한으로 하며 본부가 추가보험자가 된다.
- ⑥ 위험장비보험: 위험장비보험은 본부에 대한 대위권 포기를 포함해서 용역수행중 감리자가 소유하거나 빌린 자동장비, 모든 기계, 사무실에 대한 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며 모든 각각의 손실을 보험받는다.

9.2 본부는 용역수행 목적상 하도급감리자를 포함해서 감리자와 관련 있는 자의 한국 출입국시 필요한 생명, 건강, 사고, 여행 및 기타 보험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한국의 출입국 또는 타지역에 여행하게 될 그들 가족들에 필요한 각종보험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9.3 감리자는 상기 상업일반배상책임보험, 자동차종합보험, 선박책임보험을 발급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호받으며 본부와 동 고용인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하도록 합의한다.

9.4 감리자는 국내용역 수행을 착수하기 전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본계약상 감리자에 요구되는 보험이 발효되었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본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에는 본부도 추가 피보험자임과 보험 만기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동일요구사항은 국내용역의 착수이전에 모든 하도급감리자에게도 적용된다. 확인서는 상기 보험증서가 취소되거나 갱신될 경우에는 30일 전에 사전 서면

통지의 의무조항을 포함토록 하여야 한다.

9.5 감리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9.1에 의거 감리자가 부보하는 보험 및 재정적 조치의 모든 보험약관, 무담보 조항 및 자기부담금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9.6 감리자나 소속직원이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우리 본부나 제3자에게 위 보험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인적, 물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감리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국내에서 包括一般責任保險에 대한 사항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技術用役契約一般條件이나 監理契約特殊條件의 경우 보험과 관련된 조항이 없으며, 별도의 법에서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이나 감리대가기준에서는 인건비에 산재보험료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발주자가 설계자의 설계업무 수행책임에 대한 보험료를 직·간접으로 부담하게 된다면 技術用役契約一般條件 및 엔지니어링事業 代價基準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VI. 設計責任保險制度 模型

1. 設計責任保險制度의 定義와 基本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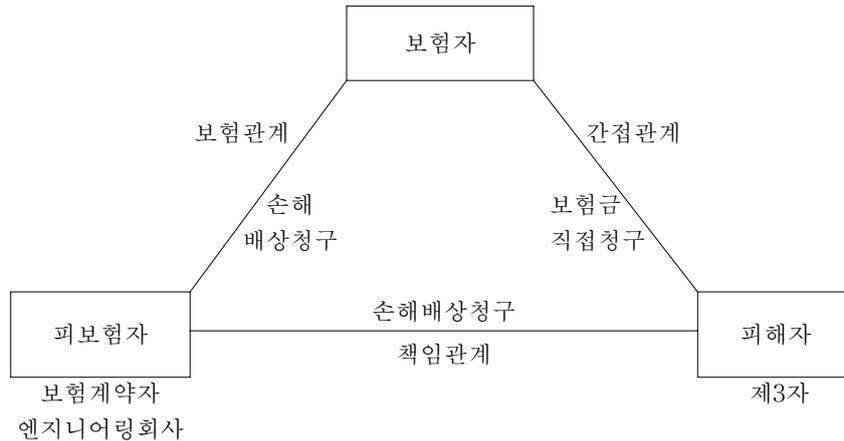
가. 設計責任保險制度의 定義

설계책임보험제도란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피보험자의 업무보조자가 국내에서 설계업무의 수행중 직업상 상당주의 업무를 게을리함에 따라 당해 설계업무의 대상이 된 완성품에 滅損 또는 毀損事故가 발생한 경우, 당해사고 또는 당해사고에 기인하는 타인의 신체장해(사망포함) 혹은 재물손실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이다.

나. 設計責任保險制度의 基本構造

설계보험계약도 사적 경제주체가 당사자로 되어 체결하는 보험계약이므로 그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설계책임보험제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책임보험계약 관계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가 제3자로서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논리구조상으로는 다음의 [圖 VI-1] 과 같이 保險者(엔지니어링 공제조합) · 被保險者(엔지니어링회사) · 被害者間에 기본적으로 각각 三面의 法律關係를 형성하고 있다.

[圖 VI-1] 設計責任保險制度的 三面構造



설계자 책임보험의 삼면구조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인 가해자(엔지니어링 회사)와 제3자인 피해자간에 손해배상의 책임관계가 성립하고, 보험계약자(가해자-엔지니어링회사)와 보험자간에는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계약관계가 성립한다.

다. 現行 保證制度的 限界와 改善可能性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保證發行機關으로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발주단계에서 설계자와 발주자간의 責任配分調整(설계자의 업무범위 및 책임관계), 설계자의 계약 채무불이행 책임 설정, 발주자의 입찰 계약시 설계보증가입 의무가입요구등 제도부재 등으로 인해 동보증상품개발의 필수조건인 사고 유형 및 책임범주의 설정이 어려운 상태이다.

설계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발주단계에서의 설계자와 발주자간의 責任配分 設定 둘째, 설계와 시공의 책임한계의 명확한 區分設定 셋째, 설계계약 입찰시 설계보증가입의 法的 義務化 措置 넷째, 설계보증가입 비용의 발주자 分擔原則 設定 등이 필요하나 현행의 설계부실에 대한 책임담보기능으로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설계보증제도는 보증신청시 업계내에서의 보증인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고발생시 엔지니어링사의 연쇄부도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증의 경우 보증자가 보증신청인에게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책임담보제도라고 할 수 없다.

라. 保險 : 保證

보험은 우연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평소에 일정금액을 각출하여 준비금을 형성시켰다가 만약 우연적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준비금으로써 종전과 같은 수준의 經濟的 回復을 상호보장하는 제도로서 자기책임 을 기초로 하는 사회기구안에 집합책임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채택한 경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보증은 법률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 이외의 자(보증인)가 대신해서 그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하나 일반적으로 경제상의 의미로는 당사자의 일방이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損害를 引受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보험과 보증을 용어상 혼동해서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그 조직·방법에 있어서 양자는 명백히 다르며, 보험료의 접수를 기초로 하는 유상계약에 의해 다수의 경제체가 유기적으로 맺어진 제도이다.

현재 엔지니어링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증업무가 있으나, 설계책임보험과 관련있는 보증업무로는 하자담보책임보증업무가 있다. 瑕疵

擔保責任은 최종의 완성품에서 발생한 계약과 상이한 하자에 대한 보증인 반면에 설계책임보험은 전문적인 직업상의 행위에 기인한 책임에 한해서만 보험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또한 책임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부실설계에 따른 危險分散을 위해서는 보험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 保險 : 共濟

共濟란 지역적 또는 직업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조합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각자가 응분의 각출금을 지급하여 共同的資金を 형성한 후, 조합원 중에서 우연한 재해나 불행한 사태에 조우한 경우에 소정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相互救濟制度이다. 따라서 공제는 그 목적이나 조직에 있어서 가장 보험과 유사한 제도이다. 그러나 공제는 보험과 달리 가입자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그 經營規模가 충분하게 크지 못할 경우에는 위험의 평균화를 이루는 것이 불충분하다. 즉 각출금(공제료)의 산출방법에 있어서 합리성이 결여되기 쉽다. 공제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면 공제조합원에게 배당됨으로 보험에 비하여 보험료율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반면에, 공제는 공제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대형위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재보험에 의하여 위험을 분산시켜야 하나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를 기피할 수 있다.

현재 건설공사보험상의 設計缺陷擔保 특별약관이 있다. 본 약관은 설계결함으로 인하여 결함이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때 첨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約款은 건설공사보험의 일부로만 된다는 점에서 설계업무 단독의 보험과는 구별되는 제도이다.

궁극적으로 보험과 공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엔지

니어링 공제조합이 설계책임보험업무를 수행할 경우 명칭은 공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공제로 할 경우 공제업무에 따른 손익이 조합내에서 위험분산되므로 공제사업초기에 있을 수 있는 통계의 한계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保險對象

보험대상으로 설계업무단계중 어떤 범위까지 포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監理保險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최근에 발주된 公共工事에서 감리자 책임보험을 적용시킨 바 있는 만큼 감리보험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별도로 추진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감리업무를 포함한 모든 설계분야를 설계책임보험제도의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항목만을 보험항목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 設計業務의 定義

1) 設計의 定義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으며, 基本設計란 구체적 설계조건이 정해지고 건설에 필요한 사업 및 사업물의 기본적 제성질 및 제원을 결정하는 단계를 말하며, 實施設計란 구체적인 설계조건이 주어진 기본설계를 기초로 생산면, 조직면, 환경면, 보전면, 건설면에 필요한 도면, 시방서 등 전반적인 세부사항을 작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2) 設計業務의 種類

가) 基本設計

- ① 주요설계수행지침
- ② 예비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

나) 實施設計

- ①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 ②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모집 및 정비
- ③ 설계요강의 결정
- ④ 설계지침의 작성
- ⑤ 도면 및 계산서의 작성
- ⑥ 공사수량계산 및 공사비 산정

다) 工事費 監理

- ①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②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 ③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 ④ 공정 및 기성고 사정
- ⑤ 준공도 검토

나. 設計者의 責任 및 權限

1) 設計者의 權限

A/E(Architect/Engineer: 이하 설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충실히 이

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權限을 지녀야 한다. 특히 이것은 入札 및 施工段階에서 관련이 있다. 설계자는 발주자를 위해 조언할 수 있어야 하고 발주자편에서 행동해야 한다.

AIA(미국건축가협회: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標準契約書에 따라 설계자는 건설현장에 있어서 최초의 발주자 대리인이 되고 계약을 조정하게 된다. 이것은 명확하게 “계약서류와 일치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표현하고 있다.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권한이 주어진 설계자는 역시 “..... 계약금액에서 조정에 의한 소규모 變更事項을 명령할 수 있으며 계약서류의 한도를 벗어나는 계약기간의 延長을 명령할 수 있다”(AIA, 1977) AGC(미국 건설협회: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 ASCE(미국 토목학회: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등에서 공표된 계약서는 계약서류에 명기된 자재나 인원을 투입할 경우 거절하거나 프로젝트 진행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을 때 설계자가 시공자에게 작업을 중지시킬수 있도록 조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설계자는 발주자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계자에 의한 지시는 발주자가 단독으로 契約業務를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주자가 시공자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권한을 지니게 된다(Irv Richter, Roy S. Mitchell, 1982: pp.54~59).

2) 發注者の 責任

계약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위해 행동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지만 책임을 위임할 수는 없다. 이러한 연유로 발주자는 그의 대리인의 지시에 대한 責任(Liability)을 지게 된다. 또한 발주자는 프로젝트 기간동안 설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주자는 良心을 갖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하며 책임있는 계약의 모든 부분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AIA 계약서 B141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다양한 발주자의 책임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설계자가 프로젝트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된 義務들을 살펴보면 즉각적인 代價支拂, 프로젝트에 대한 적절한 豫算編成, 충분한 情報의 補給 등을 들 수 있다.

3) 設計者의 專門的인 責任

설계자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설계자가 동일한 조건하에서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투입되는 합리적인 주의, 기술, 능력이 요구되어진다. 연방정부 계약서 Form 253에서는 다음과 같은 保證條項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정부 계약서 Form 253 보증조항⁵⁾〉

- (a) 설계자는 전문적인 품질, 기술적인 정확도, 모든 설계 및 도면, 시방서의 조정 및 이 계약에서 설계자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다. 부가적인 보상없이 설계자는 설계, 도면, 시방 및 기타 서비스부문의 실수나 결핍사항에 대한 교정이나 보정을 해야 한다.
- (b) 본 계약하에서 요구되어지는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검토, 승인, 혹은 수락없거나 대가지급이 없는 것은 본 계약하에서 어떠한 종류의 권리 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유발시키는 행동의 어떠한 원인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

5) Standard Form 253, *Architect-engineer Contract*, April 1975, Prescribed by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어져야 한다. 그리고 설계자는 본 계약에 의해 행해져야 할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의 이행을 태만히 한 설계자로 인한 정부가 입은 모든 종류의 손실은 적용법률에 따라 정부에게 책임(Liability)이 있으며 그 책임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c) 본 계약하에서 제공되어지는 정부의 권리와 처방은 법률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모든 종류의 권리와 처방에 부가되어진다.

보증조항이 계약에 포함되는 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설계자는 전문적인 실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責任(Liability)이 있다.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두가지 요소가 고려되어 진다.

- ① 계약의 特殊한 義務와 일치하지 않을 것.
- ② 專門的 基準의 概念에 포함되는 서비스를 행한 실수일 것.

수행되어지는 서비스에 대하여 논의된 바와 같이 설계자는 일반적으로 3가지 基本的인 役割을 수행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법적인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 ① 설계자
- ② 시공중 발주자의 에이전트(Agent)
- ③ 발주자와 시공사사이에 발생하는 분쟁해결 그리고 계약서류의 해석

그러므로 설계자는 계약측면의 책임과 전문기술측면의 책임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設計者의 契約的 責任

계약적인 책임은 간단하게 말하면 설계자가 계약적인 義務를 違反했느냐 하지않았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결정의 要點은 발주자와 설계자사이의 계약의 해석에 달려있다. 계약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의무는

명확하게 언급되고 함축적이기 때문에 계약의 언어를 정확하게 할수록 요구되어지는 무엇에 대한 분쟁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사항의 違反內容을 인지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다. 예를 들어 설계자가 명시된 기한까지 도면을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설계자는 계약에 의해 항상 建設工事期間 도중에 인스펙터를 활용하도록 했을지라도 어떤 기간동안은 현장에서 인스펙터를 고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확하지 않고 契約用語가 현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재정경제원에서 유권해석으로 계약서관련내용을 해석하여 일방적으로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통보하는 방식이었으나, 계약당사자가 재정경제원의 계약용어의 最終解釋(有權解釋)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고, 보다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관(대부분 법원임)에서 해결하도록 요구하게 될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5) 設計者의 專門的(怠慢) 責任

전문적인 책임의 일반적인 원인은 전문적인 기술제공의 怠慢에 기인한다. 설계자와 엔지니어에 대한 표준화된 기술제공사항은 醫師, 辯護士 및 기타 專門家들과 유사하다.

〈엔지니어의 기술제공사항에 대한 기준⁶⁾〉

고객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함에 있어서, 설계자는 그가 보통 훌륭한 조건을 갖춘 설계자들에 의해 주어지는 학습 및 기교의 정도와 동일한 지역에서 영업을 가지고 있고 가질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암암리에 표현해야 한다. 설계자가 그의

6) Paxton 대 County of Alameda의 판례: 259p. 2d 934(Cal. 1953).

기술제공업무를 동일한 지역에서 전문적인 영업을 하는 명성이 있는 요원에 의한 기술제공사항과 같이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그의 또 다른 의무이며 그가 고용되어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어지는 노력에 대하여 그의 학습을 적용하고 기교를 시험하는 데 그가 최선의 판단을 하고 합리적으로 근면해야 하는 것도 그의 의무이다.

怠慢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설계자에 대하여 그의 작업은 그러한 基準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이것은 설계자가 완벽하게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法廷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는 그들의 전문적인 기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보통 기교와 전문가 구성원의 경쟁, 그들에게 부과되는 책임에 대한 태만여부를 시험할 의무가 있다. 그러한 전문가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무결점을 기대하는지를 판결할 것이 아니라 단지 합리적인 경쟁과 영업행위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서비스를 구매한 것이지 보증을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⁷⁾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증언록은 전문적인 책임을 완수하도록 요구되어지다. 전문가는 적절한 營業의 基準, 기준으로부터 떨어진 特殊한 業務 事項 둘 다를 우선 완수해야 한다.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가 그의 전문적인 업무에 포함되어지는 기준과 관련하여 태만으로 기소된 경우, 그 기준이 일반 상식의 수준이 아닌

7) Allied Properties 대 John A. Blume and Associates, Inc.의 판례: 102 Cal. Rptr. 251, 1972.

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검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부된 사항이 상식의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지식에 포함될 경우 전문적인 증거는 결정적이고 무시될 수 없다”⁸⁾

발주자에 대한 설계자 책임인 경우 설계자는 設計, 資材選擇, 監理에 있어서 태만할 수 있다. 怠慢한 設計는 규정이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결점투성이인 시방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 시방서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정정될 수 있으나 때로는 너무나 애매하기 때문에 설계자는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소요되는 追加費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추가적으로 태만한 설계는 구조물을 설계하는 설계자에 의해 발생하고 이것에 의해 물리적으로 건설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예산내에서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그 예산은 이미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설계자에 의한 監理에 있어서 태만이 발생한 경우는 완성된 프로젝트가 명시된 설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혹은 완공된 구조체가 건축법의 적용시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자가 그러한 결점을 부보하지 못하는 계약하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이다.

다. 契約方法에 따른 設計者의 責任

1) 總額契約에 있어서 設計者의 責任

일반적으로 總額契約에서는 설계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설계자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標準工事契約에 의해 특정한 의무가 설계자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공자에 대해 특정한 權利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여기에서 설계자는 설계자(건축가) 또는 엔지니어로 불리워지며, 발주자의 요원으

8) Huber, Hunt and Nichols, Inc. 대 Moore의 판례: 136 Cal. Rptr. 603, 1977.

로서 판결권자, 중재인, 계약쌍방에 의한 契約遂行의 판단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AIA201A에서는 “설계자는 施工期間동안 뿐만 아니라 최종대가가 지불될 때까지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캐나다 건설계약서류위원회(Canadian Construction Documents Committee: CCDC, 1982년) 계약조건 3조에서는 Consultant라고 되어 있으며 “본 표준계약서에 설계자(건축가)와 엔지니어의 권한과 의무를 상세히 가진다.”라고 되어있다. Consultant는 발주자의 대리인으로 묘사되며 그는 건설수단, 방법, 기교, 절차 또는 순서에 대해 統制와 調整을 할 수 없고, 계약서류의 해석과 계약에 의한 쌍방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설계자의 建設契約에 있어서 기본적인 의무는 발주자의 支拂證明書を 발급하는 것이다. 이는 발주자의 기본적인 의무와 시공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대가수령을 두가지 사항과 관련이 있다.

설계자는 작업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계약서류의 문서화된 解釋事項을 발급하도록 요청되어진다. 이런 解釋業務가 캐나다 계약서에서는 附加的業務(Additional Instructions)라고 되어있고 도면이나 문서화되어야 하며, 반드시 계약서류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설계자는 계약 당사자의 要請에 의해 자신이 발급한 해석사항 또는 부가적인 업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설계자가 해석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이지만 아직까지 왜 부가적인 업무가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는 總額契約, 入札書類, 契約書類와 일치해야 한다는 조항의 속성을 불완전하게 이해하는데 기인한다.

總額契約에 있어서 입찰서류와 특별한 도면, 시방서 등은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완전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情報

를 제공하지 못한다. 설계자의 解釋業務 또는 附加的인 業務는 계약서류와 일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공자는 契約書類를 참조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하였고 계약서류는 계약 당사자 쌍방간에 합의한 기본사항이기 때문이다. 계약업무의 한 부분으로서 시공자가 행하는 모든사항은 이성적으로 명백하거나 이성적으로 입찰서류로부터 추측할 수 있어 시공자가 그의 見積과 入札價 내에서 그 비용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설계자는 계약서류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금액이나 기간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소규모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설계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契約事項과 一致하게 작업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가 법에 의해 도면에 명시하거나 설계회사항을 제외하고 적절하게 행해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이는 시공자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결함이 있는 것으로 判明이 난 방법으로 시공할 것을 시방서에 명기하고 있다면 이는 설계자의 책임이지만 그러한 사실은 대개 분명치 않다. 이는 시공자 설계자의 공동책임이 되는 분야인데 그 책임을 구분하는 것은 현대建設産業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2) 實費 精算 契約에 있어서 設計者의 責任

발주자 측면에서 實費精算契約(Cost Plus Fee: CPF)으로 인한 설계자의 책임은 總額契約일 때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CPF계약은 계약 자체가 느슨하여 발주자 및 시공자가 모두 빈번하게 지시가 요구되어지며 그가 작업진행 과정상 도면과 시방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훨씬 깊숙히 現場의 工事に 관여해야 한다. CPF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설계자는 工事契約의 節次와 시공기술의 풍부한 지식이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공사시작할 때 서류의 준비가 가능하고 건설과정 중에 대가의 지급을 확인하기 위해 建設費用의 屬性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설계자가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발주자에 의해 지불되어야 할 상환가능한 비용의 정의, 시공자가 fee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야 할 비상환 비용에 대한 정의, fee의 구성(비율, 정액, 필요시 조정할 수 있는 상태)이다. 대가의 支給申請 및 비용의 입증에 있어서 설계자는 비용과 관련하여 資材收入, 일정관리 등의 사항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認知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발주자는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자를 채용해야 한다. 설계자에게는 발주자에 의해 상환되어야 할 비용을 立證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주자에게는 계약서에 의해 합의된 사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주자는 공사시작때 이런 업무를 하는 現場要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발주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지불했다고 믿을 때에는 설계자를 非難하게 될 지도 모른다. 설계자는 공사초기에 발주자가 CPF 契約條項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정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3) 單價契約에 있어서 設計者の 責任

발주자는 Agent로서, 계약의 해석자로서, 계약이행의 판단자로서 설계자의 책임은 이전의 계약관계와 비교해서 책임이 동일하다. 單價契約에 있어서 시공자에게 대한 지불을 확인하는 설계자의 의무는 代價가 지불되어지는 근거가 되는 완성된 作業의 物量을 확인할 책임을 포함한다. 물론 설계자는 항상 다양한 종류의 계약에 있어서 그가 확인하는 대가금액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설계자나 그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作業의 檢査에 참여할 수 있다. 설계자와 시공자는 작업이 시행된 상태대로 檢査해야 하고 相互協議하여 檢査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간혹, 다른사람이 작성한 검측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닌데 왜냐하면, 설계자는 검측결과를 발주자에게 확인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시공자는 본사에 검측사항을 확인시켜 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작업에 있어서 행해져야 하는 契約管理와 費用算定을 하는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 그 업무를 검측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단가계약에 있어서 설계자가 그의 고객에 보장하는 기본적인 의무 중의 하나는 계약이전에 발생하고 사실은 이것이 훌륭한 契約關係를 유도하게 된다. 單價契約으로 체결한 몇 개 프로젝트에서는 경험과 능력을 구비한 일부 시공자들이 도박성 본능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단가를 적용하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낮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시공자들은 추가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다. 入札者들은 일반적으로 설계자보다 현장에 대한 經驗이 풍부하여 어떤 조건의 작업에서 물량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를 잘 예측해 낼 수 있다.

단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낮게 책정하는 또 다른 이유는 초기에 이뤄져야 할 作業項目과 초기의 부대업무에 대해 높은 單價를 책정함으로써 공사초기에 많은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공자는 자신의 金融費用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해나가기 위해 설계자는 업무 경비에 대한 총액허용치와 단가계약에 있어서는 최소한 주요한 항목에 대하여 단가가 왜곡됨이 없이 현실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쉽지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설계자가 최소한 자기 자신의 현실적이고 정확한 공사비용 見積方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 시공자를 결정하기(낙찰) 이전에 단가나 총액과 입찰금액을 비교해야 한다(Keith Collier, 1989: pp.69~73).

라. 設計責任에 대한 클레임

1) 設計責任에 대한 클레임의 增加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설계자의 1/3정도가 소송에 관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大型崩壞事故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설계자의 책임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빈번하게 변경되고 있는 법률, 건설시장의 개방 등도 설계자의 설계책임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設計關聯 紛爭은 설계료를 지불하지 못함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既存法律의 變更, 절차상의 변화, 설계자의 능력문제, 법원으로서의 접근성 용이, 사회의 변화 등에 의해 설계에 대한 클레임이 증가하고 있다.

가) 既存 法律의 變更

고객보다 다른 계약당사자에 의한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유용한 것으로 증명된 어떤 辯論은 가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명되어졌으며, 專門家의 失手를 살피기 위해 전문가의 증언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완화되어져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보호한다는 것보다 희생자가 보상받는 것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 때문에 기인한다.

나) 節次上의 變化

약간의 차이점과 최소한의 비용으로 클레임 제기자는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 수많은 被告者에 대해 법적인 활동을 행할 수 있다.

다) 訴訟費用을 堪當할 수 있는 設計者의 能力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는 드물다. 책임의 확장과 보험비용의 상승이 설계자가 지급받는 실질 설계비를 감소하게 될지라도 대부분은 법률적인 소송에 대응할만한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專門家責任保險에 가입하고 있다.

라) 法律體系로의 接近 容易性

법률적인 체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자는 辯護士를 고용한다. 법률이 생활에 가깝게 있으면 자연히 소송이나 클레임이 증가하게 된다.

마) 社會의 變化

최근에는 자신의 불평을 조용히 인정하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불평사항이 발생하면 당장 法律體系를 활용하고자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단위인구당 변호사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거대한 비개인적인 사회속에서 자신이 異邦人이라는 생각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도울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하고 이는 사회전반적인 無氣力症을 유발시켰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1960년대의 소비자 보호운동발생과 무관하지 않다.

바) 會社責任: 消費者保護主義

기업체를 보호하는 것보다 피해자를 보상하는 것이 현재의 주요한 爭點事項이다. 이를 위해 미국내에서는 消費者保護를 위한 保護法案이 적용되고 있다.

사) 設計重心性

사회구성원들의 증가된 자각은 社會資源의 分配와 인간행동의 조정자로서 설계의 주요 爭點事項으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장실청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의해 캘리포니아가 물의 소비를 억제하고자 할 수 있다. 그리고 훌륭한 環境 設計는 많은 범죄를 줄일수 있다. 특히 신도시계획, 학교설계, 쇼핑센터설계시 도로에 접하는 창문의 비율을 높이고 숨겨진 복도를 줄이며 다른 犯罪場所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설계단계에부터 적용시킬 수 있다.

아) 法令

상세한 建物과 住宅法의 신설(확장)에 의해 설계자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設計者의 責任이 확장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설계자가 태만하여 이러한 신설된 法令의 違反을 하게되면 설계자는 고객이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자) 業務의 增加

설계자는 고유업무인 기본설계 이외의 감리, 중재자 등 다른 업무도 수행하길 기대되어 지는 데, 만약 이러한 업무들에 의해 損失이나 失望을 경험한 고객이라면 즉각 設計者의 責任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2) 設計者에 대한 클레임

설계에 있어서 怠慢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다음의 예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설계자(건축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 우선 설계자(건축가)는 건물밑의 토양의 특성을 부적절하게 이해하여 부적절한 기초를 사용할 수 있다. 지붕설계를 잘못하여 하중을 지탱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방음이나 단열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하수처리를 잘못하여 하수가 건물안으로 역류하게 만들 수 있으며 계단의 난간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차양을 위해 보울트가 아닌 못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컨설턴트로서 시방서와 도면을 준비하는데 통지를 태만하게 할 수도 있다. 설계자(건축가)는 정상적인 설계자(건축가)가 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자신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설계태만은 불완전한 시방서작성이나 완전하지만 결함이 있는 시방서 작성을 말한다. 계획과 시방서는 명확해야 한다. 훌륭한 자재를 사용할 것을 기대했지만 기대이하의 자재로 시공할 수 있게 된다면 시방서가 태만하게 준비된 것이다”

설계자의 실수에 의해 클레임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事例는 다음과 같다.

- ① 도면에 현존하는 지형을 잘못 표기함.
- ② 발주자의 소유가 아닌 토지가 지도에 표기된 낡은 지도활용으로 도면작성
- ③ 건축법령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재 명시
- ④ 건축후퇴선을 위반한 건물설계
- ⑤ 특정자재를 사용함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고객에게 알리지 못함.
- ⑥ 추가작업(Extra Work)을 유발시킨 애매한 설계사. 한번도 시공된 적이 없는 프로젝트에 의해 집을 설계
- ⑦ 충분히 수납할 수 없는 수납장 설계

- ⑧ 고객의 예산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설계
- ⑨ 판매자의 주장에 따라 시험되지 않은 자재 명시
- ⑩ 부적절한 태양열시스템 설계
- ⑪ 에너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 ⑫ 지하의 고압선을 제대로 건축주에게 알리지 못함.
- ⑬ 건축주를 부보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면책조항을 삭제함.
- ⑭ 사용허가 이전에 필요한 충고를 하지 못함.

그리고 건설도중 관계있는 클레임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수 있다.

- ① 법령에서 승인되지 않은 자재설치를 허용
- ② 토양기술자의 자문없이 과도한 흙채움 실시
- ③ 변경시 법령을 위반함.
- ④ 결함있는 작업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함.
- ⑤ 적절한 감리권한 행사를 하지 못함.
- ⑥ 일반산업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주의사항을 시공자에게 경고하지 못함.
- ⑦ Consultant와 참여하여 검토하지 못함.
- ⑧ 불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는 시공자 발견시 작업중지 안함.
- ⑨ 대가지급과 증명서발급을 태만히 함.
- ⑩ 시공자소유 자재에 대해 대가지급시 지급불가능에 대한 경고를 못함.
- ⑪ 시공도면 검토시 설계의 잘못된 점 확인 못함.

3) 設計責任에 대한 特別契約의 必要性

합의에 따라 契約當事者는 작업의 이행여부를 결정한다. 고객과 설계자의 관계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合意基準의 근거가 되는 것은 계약서 그 자체이다. 건축주와 설계자사이에 발생하는 대부분

의 분쟁은 자체가 特別任務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계약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며 프로젝트에 적합해야 한다거나 건물에 대한 保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은 제외되어 있다. 그러면 설계자가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를 특별하게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문서화된 합의없이 많은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 ② 많은 사항들이 특별한 업무를 설정하지 못하는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임시서한 합의 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 ③ AIA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도 일반적인 사항만을 명시할 뿐이지 해당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부족하다.

4) 建設危險의 種類와 PLI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수대교의 붕괴, 삼풍백화점의 붕괴, 신행주대교의 붕괴, 팔당대교의 붕괴 등 각종 大型事故를 經驗하였으며, 이들 사고를 기화로 PLI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설계자의 부실, 감리자의 부실, 시공자의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設計者의 不實에 대해서는 회사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에 逢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자에 대한 책임부과의 일환으로 PLI를 정부차원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PLI의 근본적인 성격은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가 저지를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제3자인 保險會社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專門家 및 제3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부여토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위험의 종류에 따른 계약당사자(발주자, 시공자, 엔지니어)의 위험내용을 살펴보면 <表 VI-1>과 같다. 이 중에서 엔지니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는 失手와 漏落, 書類關聯 紛爭, 不實設計, 施工圖

面 등 다양한 위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 설계발주에 있어서 전문서비스 부실로 인해 발주자는 원하는 시기에 공사를 시행할 수 없거나, 시행중인 공사를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 즉 제3자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발주자의 경우에는 간접적인 피해자가 된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契約實務에 있어서 “전문가는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과 제3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발주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발주자가 전문가에게 대부분의 危險을 負擔시켜 왔다. 그리고 전문가는 완성된 조건에서 구조물을 설계해야 하고 그리고 건설과정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문제가 주어진다면 이에 상응하는 설계가 계약서에 의해 행해지도록 요구받았다. 발주자의 이러한 일방적인 태도는 전문가가 위험비용을 付保하기 위해 입찰가에 높은 경비를 삽입하거나 건설계약에 따른 소송을 유발시키게 되는 데, 크게 본다면 발주자가 결국 敗北者가 된다. 법정은 발주자가 전문가에게 부담시켰다고 생각하는 많은 위험에 대해 재할당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발주자는 그들 위험비용을 두번 지불하게 된다. 첫번째는 높은 입찰가에 포함된 경비이며 두번째는 법정소요비용이다. 이런 와중에서는 전문가도 패배할 수 있으며, 지연과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PLI에는 發注者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발주자가 대가의 일부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保險料를 계상해야 하지만, 발주자의 契約管理가 허술할 경우 발주자는 이중 위험을 부담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表 VI-1〉 契約當事者에 建設危險의 割當

위험의 종류	시공자	발주자	엔지니어	비고
현장접근로	-	●	-	가 나 다
지하 조건	-	●	-	
물량 변동	●	●	-	
기후(날씨)	●	-	-	
불가항력	-	●	-	
재정결함(부도)	●	●	●	
하도급자 결함	●	-	-	
현장 사고	●	-	-	
부실시공	●	-	-	
비경쟁관리	●	●	●	
인플레이션	●	●	-	
경제적 제약	-	●	-	마
기금	-	●	-	
재료와 장비	●	-	-	
노무 문제	●	-	-	
발주자제공 장비	-	●	-	
작업 지연	●	●	●	
주변환경 통제	-	●	-	
법령 및 규칙	-	●	-	
현장의 안전	●	-	-	
공공 무질서	-	●	-	
노동조합의 파업	●	-	-	
실수와 누락	-	-	●	
서류내용 분쟁	-	-	●	
부실설계	-	-	●	
시공도면	-	-	●	

註: 가: 시공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그러나 발주자는 사전조사계약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설계자는 예상되는 조건에 대하여 설계할 책임이 있음.

나: 시공자는 15~25%까지 위험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물량이 예측할 수 없는 지하조건에 의할 경우 발주자는 위험을 예측해야만 함.

다: 그 지역의 그 당시 정상적인 기후에 한함. 비정상적인 작업을 지연시키는 기후의 변동은 발주자의 책임임.

라: 물가변동 위험의 분담은 12~18개월 이내로 한정됨.

마: 보통 시공자의 위험임. 그러나 발주자가 일부 책임이 있을 경우가 있음.

資料: Edward R. Fisk, *Construction Project Administration*, Prentice Hall, 1992, p.224.

5) 專門家の 法律上 賠償責任

전문가의 법률상 배상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민법 제390조의 債務不履行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조항에 의거 전문가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채무의 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專門家が 損害를 배상해야 한다.

가) 不法行爲 責任(Torts)

용역기술자는 계약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기타 법적 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 設計者の 失手が 어떤 건축물의 붕괴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 제 3자의 재산 또는 인명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설계자는 不法行爲責任(民事)을 진다.

불법행위책임은 일반적으로 합리적 판단력을 갖는 사회의 평균인에게 기대되는 注意義務를 기초로 판단되는 과실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용역기술자의 경우 그 직무에 임하는 양심적인 용역기술자가 지킬 것으로 생각되는 가장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기초로 판단될 것이다.

FIDIC 표준계약서는 이 경우를 Gross Misconduct(현저한 과실)라는 용어를 쓴다. 과실은 故意(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경우) 외에 ① 결과 발생을 몰랐을 경우 ② 결과 발생을 알았지만 무관심한 경우 ③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용인한 경우등 그 사례가 동일하지 않다. 위의 경우 ① → ② → ③순으로 重過失이 될 것이다. 형법의 경우는 고의, 중과실, 경과실등 과실의 정도에 따라 형벌의 양을 달리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민사)의 경우는 이와 같은 과실의 정도에 따라 그 배상액을 달리하지 않다.

한편, 어떤 경우에 과실(Gross Misconduct)이 있다고 할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事例 研究 및 구체적 判斷基準에 관한 유형화는 당사자

간 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조정, 분쟁의 방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분쟁조정절차 및 보험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 이에 관한 조사 연구활동이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민법 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契約債務不履行 責任

계약체결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판단기준은 계약내용의 해석에 의할 것이지만 책임의 요소는 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기술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技術(Skill), 注意(Care), 誠實(Diligence)로 업무를 수행할 의무의 위반 ② 그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에 因果關係의 존재이며, ③ 이 인과 관계의 범위는 합리적으로 豫見할 수 있는 손해이다. 배상액 및 배상 유효기간을 계약조건으로 제한하는 것이 권장되며, 법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그러나, 계약당사간의 책임의 배분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施工方法에 관한 감리책임을 맡은 용역기술자가 어떤 시공방법이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시공방법을 승인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위험발생에 관한 책임이 시공회사에 있는지, 용역기술자에 있는지 법원의 판결은 동일하지 않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設計上의 責任形態

保險範圍는 원칙적으로 契約에 정하여진 範圍내에서 보장이 될 것이나 피보험자의 무과실 책임, 중차대한 과실이 아닌 과실책임이 보험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범위에서 적용제외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프랑스의 설계자 책임보험 참고).

- 피보험자가 協約이나 契約에 의해 認定하는 責任에 한하며 자신이 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에 의해 이행되지 않은 행위
- 피보험자의 故意的인 行爲에 의해 일어난 재해
- 형법상의 행위에 부수되는 범칙금
- 관리행위, 일반적으로 商業的인 性格을 띠는 모든 행위

또한 보험의 예외조항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 火災나 爆發이 피보험자의 책임을 요하는 사실로부터 나온 결과일 경우
- 광산개발로 인한 地層의 움직임
- 지진, 홍수, 폭풍, 태풍, 해일이나 기타 지각변동 등의 天災地變의인 특성을 나타내는 자연현상들
- 內戰, 暴動이나 국민봉기 등 재해
- 폭발, 열의 방출, 원자핵 이나 방사능 전환으로 인한 放射災害, 분자의 인위적 가속으로 발생하는 放射能 影響으로 인한 災害

한편 공사보험과의 관계를 보면, 관련 손해보험으로서의 공사보험은 설계-시공-감리의 프로젝트 과정에서 공사단계를 대상으로하는 반면, 설계책임보험은 설계단계 혹은 감리단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따라서 설계책임보험과 공사보험간에 보험영역이 중복되지는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영역이 조정될 수는 있다.

업무영역	설계단계	시공단계	감리단계
	↑	↑	↑
보험영역	설계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설계책임보험 (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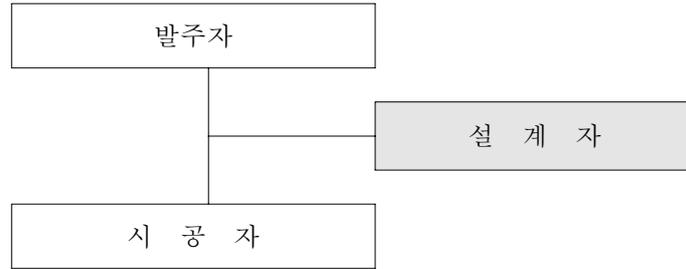
보험사고 발생시 事故責任所在를 調査하고 判定할 紛爭審査委員會 (假稱)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분쟁위원회는 법원의 1심판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3.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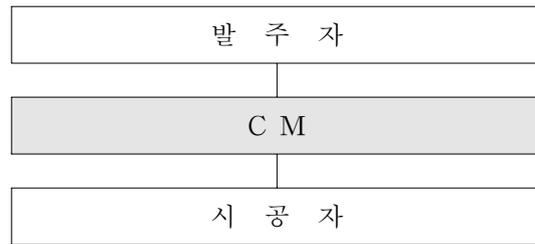
가. 保險契約者의 形態

보험계약자는 設計者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추진형태에 따라서는 설계자 단독, 설계·시공자, 설계자팀이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설계자와 발주자의 공동책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설공사보험과 마찬가지로 발주자가 설계자와 함께 付保할 수도 있다. 피보험자는 설계자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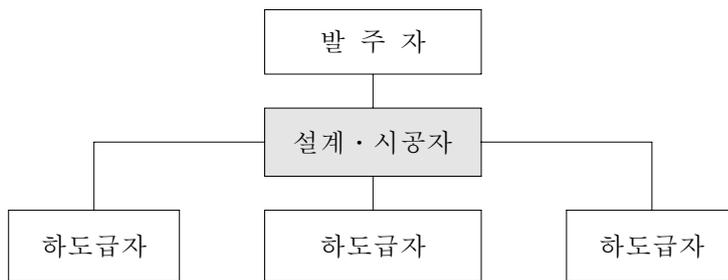
1) 單一 設計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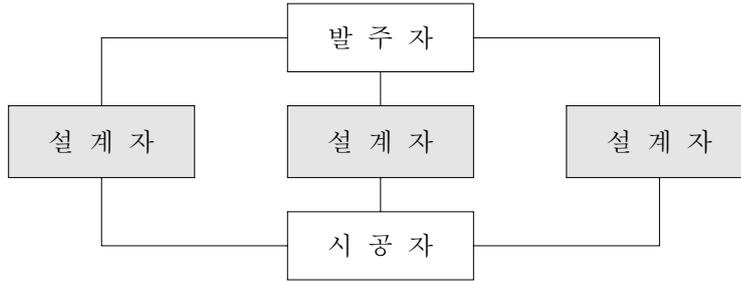
2) CM(Construction Management)



3) 設計・施工 結合



4) 多數 設計者



나. 發注者의 責任

계약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위해 행동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權限을 委任할 수 있지만 책임을 위임할 수는 없다. 이러한 연유로 발주자는 그의 대리인의 지시에 대한 責任(Liability)을 지게 된다. 또한 발주자는 프로젝트 기간동안 설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고 있다. 발주자는 양심을 갖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하며 책임있는 계약의 모든 부분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AIA 계약서 B141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다양한 발주자의 책임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설계자가 프로젝트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된 의무들을 살펴보면 즉각적인 代價支拂, 프로젝트에 대한 적절한 豫算編成, 충분한 정보의 보급 등을 들 수 있다.

다. 任意制度 혹은 強制制度

설계책임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任意保險形態를 띠겠지만, 국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책임보험가입을 義務規程으로 정함으로써 보험가입을 결과적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갖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가

계약법과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 조항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任意保險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보험계약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에 맡겨 둔 것이다. 법률상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에 해당된다.

強制保險은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법률에 의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되는데, 보통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제보험을 다른 말로 義務的 保險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책임보험, 자동차책임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이 계약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 내지 강제적으로 체결된다면 그 법률관계는 이미 일반적인 계약법리에 의하여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이행으로 인하여 단체법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라. 保險對象 範圍(建設業 : 全分野)

가입의 범위를 현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범위를 확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 검토를 15개 분야별 및 93개 전문분야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대상 범위에서는 가입대상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건설업 분야 등 사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공사 발주시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의 효과를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4. 保險金

保險金 支給要件은 설계자의 전문적 책임에 기인하여 발생한 제3자를 포함한 손해에 대하여 클레임(손해배상청구) 제기시 보험금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가. 有限 : 無限

유한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보험자가 일정한 限度에서만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처럼 보험보상의 한도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보통 보험계약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것이지만, 강제 자동차책임보험의 경우와 같이 보상한도를 법으로 정해 두는 경우도 있다.

무한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한도를 정하지 않고 보험자가 이를 모두 보상하는 보험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종합보험 중 무한의 대인배상책임보험이 이에 속하는 것이다.

설계책임보험제도는 有限保險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완성품의 규모에서 설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5~15%정도로 작다는 점, 둘째, 사고발생시 손해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설계기술용역에 대한 총대가 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설계책임보험금은 件當 限度와 累積 限度를 두어야 할 것이며, 보험가입금액은 총 용역대가를 상한으로 하는 방안과 설계용역 대가를 포함한 당 완성품의 총 비용을 상한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나. 保險의 範圍(對人 : 對物 : 包括)

대인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상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처럼 對人保險은 배상의 객체가 사람인 경우로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자동차책임보험이라 함) 중 대인보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이하 근재책임보험이라 함), 운송보험중 승객배상책임보험등이 이에 속한다.

對物保險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물건 기타 재산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처럼 대물보험은 배상의 객체가 物件 기타 財産인 경우로서 운송보험 중 화물배상책임보험, 자동차책임보험 중 대물책임보험, 선박보험 중 충돌책임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包括保險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生命·身體·財産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는 그 배상의 객체가 대인 대물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해상보험, 건설공사보험, 개인 또는 기업의 종합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설계책임보험제도는 대인 및 대물에 대하여 包括的으로 賠償責任을 가져야 할 것이다.

5. 保險期間

보험기간은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일치시키는 방안과 瑕疵擔保 責任期間 보다 연장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민법상의 책임기간과 국가계약법상의 책임기간 중 기간이 긴쪽을 보험책임기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 民法上の 責任期間

1) 擔保責任期間의 起算點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은 목적물의 인도일이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검사를 필한 날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민법과는 상치된다.

2) 일반적인 目的物

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1년이며, 인도를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다(제670조).

3) 토지, 건물, 기타의 공작물 및 지반공사

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5년이다(제671조 제1항).

4)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의 목적물

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10년이다(제671조 제2항)

나. 「國家契約法」上的 責任期間

1) 擔保責任期間의 起算點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의 목적물을 引受한 날이다. 여기서 인수일은 발주처의 계약관리측면을, 민법상의 인도일은 시공자의 측면을 표현한 것이며 양자간 차이는 있을 수 없다.9)

9)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 1995.7.10)은 「국가계약법」 또는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법리상 그에 배치될 경우 효력이 없다. 상기 시행령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개시됨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면 준공검사를 필한날로부터 개시된다. 상기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본 계약조건 제20조

2) 責任期間

상동조에 의하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총리령이 공종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아래와 같다.

가) 橋梁

- (1)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 (2) 길이 500m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 (3) 교량중 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 등 ‘가’ 및 ‘나’ 외의 공종: 2년

나) 터널

- (1) 터널(지하철 포함)의 철도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 (2) ‘가’ 외의 시설: 5년

다) 鐵道

- (1) 교량,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 (2) ‘가’ 외의 시설: 5년

라) 空港 및 索道, 港灣, 防波堤, 砂防, 干拓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 (2) ‘가’ 외의 시설: 5년

에 의한 양자간 기간상의 괴리를 감안할 때 본 계약조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상기 시행령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본다(그렇다고 상기 시행령의 개시일에 이의가 없다는 뜻은 아님. 전술 제1항 d 참조). 상기 법령과 계약조건이 동일한 정부부서에서 제정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건설계약 관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160

마) 道路: 2년

바) 댐

(1) 본체 또는 여수로 부분: 10년

(2) '가' 외의 시설: 5년

사) 上·下水道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관로매설 또는 기기설치: 3년

아) 관개수로 또는 매립: 3년

자) 부지정지: 2년

차)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2년

카)발전, 가스 또는 산업설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가' 외의 시설: 3년

타) 기타 土木工事: 1년

파) 建築

(1) 대형건축물(공동주택, 교정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 시설, 대규모소매점 등과 16층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10년

- (2) 대형 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내력벽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가’외의 건축물중 주요구조부: 5년
- (3) 건축물중‘가’ 및 ‘나’와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문: 1년

하) 專門工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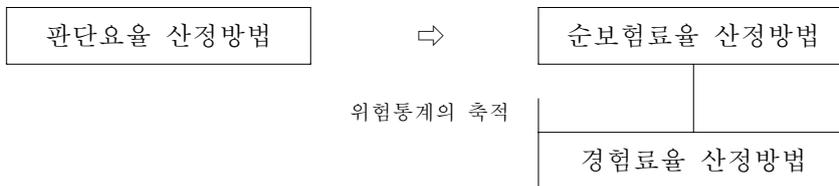
- (1) 방수, 지붕 또는 판금, 철근콘크리트, 승강기 또는 인양기의 설비: 3년
- (2) 토공, 석공사 또는 조적, 철물,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자동제어, 가스 또는 배연설비: 2년
- (3) 실내의장, 미장 또는 타일, 도장, 창호: 1년

6. 保險料의 算定

가. 保險料率 算定方法

보험료율 산정방법은 초기에는 判斷料率 산정방법에 따르고, 관련 위험통계가 축적이 되면 순보험료율로 전환하되 經驗料率 산정방법을 사용하여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圖 VI-2] 保險料率 算定方案



나. 判斷料率 算定方法

판단요율 산정방법이란 다른 요율산정방법과 같이 각종 통계에 입각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요율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위험선택자의 判斷에 따라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보험기술이 현재와 같이 고도로 발달되기 전에는 각종 보험분야에 걸쳐서 모두 이 방법을 사용했었으며 현재에는 해상보험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이 방법을 사용하는 주요한 원인은 첫째, 해상보험에서 취급하는 위험들이 異質적인 것이 대부분이므로 보험료율 산정에 있어서 기간을 이루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시키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설계관련 각종 위험이 이와 비슷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내 보험자간의 경쟁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이 극도로 심해서 다른 보험종목에서와 같이 보험자간의 협력이 없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다른 보험종목에 있어서는 기 보험자가 기지의 경험을 보험료율 산정기관에 모두 제공해서 보험료율을 공동으로 협력해서 산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셋째, 해상보험에서 보험대상으로 하는 위험종류가 광범위하고 그 반면에 종목별로 취급하는 위험의 수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통계에 입각한 科學的인 料率算定이 매우 곤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보험자는 인수하려는 위험 자체의 특성을 정확하고 또한 세밀히 파악해야 함은 물론 그외의 外部的 與件, 즉 계절, 기후, 항만시설, 항구에서의 도난가능성, 수출입국의 풍속, 습관, 정치정세 및 경제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보험부문은 해상보험부분 이외에도 있다. 과거 어느 보험자라도 인수해 본 경험이 없는 새로 생긴 특수위험에 대한 보험료율을 산정한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할만한 아무런 기초자료가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위험선택자의 판단에 따라 요율을 산정하는 수 밖에 없다.

다. 純保險料方法에 의한 保險料率 算定

순보험료방법에 의한 보험료율 산정이란 위험의 분류를 결정하고 이 분류에 속하는 危險의 損失率과 보험단위를 비교해서 보험료율을 산정한다. 즉 어떤 분류에 속하는 전위험의 손실율을 기초로 순보험료를 계산하고 이 손실액을 보험단위의 총수로 나눈 후 보험료율을 보험단위로 표시한다. 이러한 純保險料方法은 재해보험분야 중 각종 배상책임보험에 많이 사용된다.

순보험료방법에 의한 보험료율 산정에 있어서는 보험단위당 손실액에 따라 요율이 결정되는데, 일정한 보험기간의 보험단위당 손실액이 전기간보다 많을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그와 반대로 보험단위당 손실액이 적을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내린다. 순보험료방법은 보험료율의 충분성을 유지하려고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율의 公正性이나 公平性도 유지하려고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經驗料率 算定方法

경험요율 산정방법이란 보험료율을 개개 위험의 과거손실 經驗에 따라 上下로 조절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런 조절을 위해서 먼저 동질적인 위험을 동일 분류에 포함시켜 위험을 분류하고 그 분류에 속한 위험의 損失經驗을 토대로 표준보험료율을 산정해 놓은 다음 별도로 동일분류에 속하는 위험의 개별적인 과거 손실경험에 따라 표준보험료율을 상하로 조절한다. 즉 어떤 위험의 손실경험이 그가 속하는 분류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산출한 평균치에 해당하는 손실경험보다 좋은 경우에는 표준보험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나쁠 경우에는 표준보험료율보다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경험요율 산정방법은 주로 災害保險 중 단체건강보험, 노동자재해배

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신용보험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生命保險分野에 있어서는 단체생명보험에서 많이 사용된다.

표준보험료율을 상하로 조절하는 공식은 $\frac{A-E}{E} = M$ 으로 표시되며,

이 공식에서의 A는 어떤 특정한 개별위험의 실제로 입은 손실액이나 손실율을 말하고 E는 표준보험료율 산정시 추정했던 손실액이나 손실율을 말하며 M은 표준보험료율을 상하로 조절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험료율 산정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정한 保險期間의 經驗에 따라 보험료율을 설정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기간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음 기간에 적용할 때에는 이미 경과한 과거의 경험에 입각한 것이 되고 현재의 경험에 입각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개별위험의 질적 변화를 조속히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契約類型에 따른 保險料 算入方法

1) 總額契約(Lump Sum Contract)

총액계약은 어떤 일을 약정된 금액으로 약정된 기간내에 완성하고 대가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자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분급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 약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우리나라¹⁰⁾와 일본의 대표

10) 우리나라 기술용역계약조건 제13조:

1. 계약자는 기술용역을 완성한 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조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중략).
4.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계약수량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9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적인 경우이다. 총액계약시에는 총액내용에 설계책임보험료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별도 산입이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2) 單價契約(Unit Price Contract)

단가계약은 총액(Bill)과 단가(Unit Price)로 대가가 구성되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예산회계관계법령에서는 “총액단가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가계약의 특징은 수행 업무에 대하여 검측과정을 거치며 검측된 업무량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있다. 즉 총액계약과는 달리 실제 수행업무량에 일치하여 대가가 지급된다. 단가계약에서는 간접비에 설계책임보험료를 산입한다.

3) 時間基準豫約(Time-based Contract)

시간기준계약은 일정기간 발생한 비용을 약정된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하되, 비용의 주항목이 인건비이고, 그외에 경비, 예비비 등이 있다. 주로 월간비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人月契約(Man-month Contract)이라고도 한다. 보험료는 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

4) 利益加算原價契約(Cost-plus-fee Contract)

이익가산원가계약은 실비 정산계약(Cost Reimbursement Contract)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계약유형이다. 利益加算 원가계약과 전술한 시간기준예약을 모두 실비정산계약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 間接費에 보험료를 별도로 산입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5) 施工金額比例契約(Percentage Contract or Advalorem Contract)

시공금액비례계약은 감리계약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는 계약 유형으로서 계약금액은 시공계약금액의 일정비율로 결정된다. 대가는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별도산입이 곤란할 것이다.

7. 保險者

설계책임보험제도의 보험자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保險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① 현재 설계관련 위험에 대한 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② 본 보험의 추진의도가 公共工事의 不實設計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만큼 公共性이 강하다는 점, ③ 공제조합이 할 경우 순보험료 이외의 경비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점(이윤을 남기지 않음) 등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반 私保險會社에서 상품을 개발하여 인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현재 삼성화재보험에서 이미 전문가 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판매실적은 없다. 경쟁을 통한 보험상품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점에서는 사보험 시장에서 自由競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설계책임보험제도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분간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단독 보험자로 하되, 장기적으로 사보험시장에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보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與件造成과 能力培養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8. 再保險 및 準備金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원보험계약을 순조롭게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에 대하여 再保險을 통한 危險分散이 필요불가결하다.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자체담보력을 초과하여 인수하는 개별위험에 대하여 위험분산을 할 수 있으며, 재보험은 담보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양질의 위험에 대해 保險限度額을 極大化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위험에 대한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원보험회사에 법적 준비적립금 부담을 재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원보험사의 지속적인 사업확장을 위한 商品開發 및 販賣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 건설공제조합 등이 행하고 있는 보증업무가 보증사고의 빈발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자에 건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보험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보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으며,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재보험과 함께 보험자의 재정건실성을 담보하는 것은 準備金이다. 보험자는 그가 책임지고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보험자는 대체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손실금을 추정한다.

가. 平均值方法(Average Value Method)

평균치 방법이란 과거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실지급총액수를 발생건수로 나누어 평균치를 얻은 다음 이 평균치를 현재 발생한 보험사고건수로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평균치는 보험종목별로 보험자 자신의 과거경험에 따라 계산한다. 이 방법은 보험사고 발생건수가 많

은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保險金支給準備金 추정에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매우 간단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다른 방법에 비해 적게 든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방법이 정확한 것인지의 여부는 과거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손실규모가 현재나 장래의 손실규모와 같은 것인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나. 個別件別 推定方法(Individual Case Estimate Method)

개별건별 추정방법이란 보험자의 손해사정인이 발생된 보험사고마다 그 손해액수를 추정해서 보험금액준비금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산출된 수치에 수정치를 가하게 되는데, 이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손해부분 등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이 방법은 새로운 보험계약의 경우 과거의 손실경험에 관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 흔히 사용한다.

다. 數表方法(Tabular Method)

수표방법이란 보험금지급준비금을 각종 요소를 기초로 작성한 數表에 따라 산출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각종 수표란 재혼확률(Probability of Remarriage), 예정수명(Life Expectancy), 그리고 그밖의 요소들로서 이 방법은 주로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부문에서 사용한다.

라. 損失比率方法 또는 公式方法(Loss Ratio or Formula Method)

손실비율방법이란 보험료의 일정한 비율이 특정한 보험종목의 손실금 지급에 충족된다는 원리 하에서 그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保險金支給準備金으로 적립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노동자재해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는 과거 3년 동안 체결된 보험계약으로부터 받아들인 경과보험료에서 손실금지급경비를 보험한 금액의

65%를 보험금지급준비금으로서 적립하게 되어 있는 것이 통례이다.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이나 그 밖의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는 損失比率이 60%이다.

마. 이미 발생되었거나 아직 보고되지 않은 損失金(Incurred But Not Reported Loss or IBNR)의 推定方法

이미 발생되었거나 아직 보고되지 않은 손실금의 추정은 매우 곤란하나, 그 중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전년에 이런 경우에 사용한 보험금지급을 토대로 금년도의 손실금을 추정한다. 여기에는 흔히 금년도의 경험을 참작하는데 만약에 금년 보험사고발생건수가 현저히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전년도의 액수보다 늘려야 한다.

바. 損失金 支給經費準備金(Loss Adjustment Expense Reserves)

손실금지급경비준비금이란 신체검사비용, 변호사비용, 재산감정비용 등등 損害를 調査하고 사정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앞서 말한 보험금지급준비금은 오로지 보험금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손실금을 위한 준비금으로서 손해조사나 사정과 관련되는 일체경비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經費를 위한 準備金 確立이 필요하다.

VII. 設計責任保險制度 導入時 關聯制度 改善方案

本章에서는 設計責任保險制度의 導入과 有關한 制反사항을 검토하고 設計責任保險制度 도입에 필요한 制度적인 改善方案을 제시한다. 制度적 改善에는 保險契約에 필요한 契約制도의 改善과 더불어 關聯 法令의 改正을 포괄한다.

우선 設計責任保險制度 도입에 있어서의 해결되어야 문제점을 간략 하게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단계에서의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각각의 役割 및 責任分擔이 명확하지 않으며, 둘째, 설계단계에서의 하자 혹은 품질보증에 有關한 制도의 法規化가 未洽하고, 셋째, 설계하자(품질)에 有關한 책임(배상책임, 기간, 한도액 등)의 制度 화가 미비한 점등이다.

1. 設計責任 關聯規程(Irv Richter, Roy S. Mitchell, 1982: pp.54~59)

가. 一般規程

AIA 標準契約書에 따르면 설계자는 建設현장에 있어서 최초의 발 주자 대리인이 되고 契約을 조정하게 된다. 이것은 명확하게 “계약서 류와 일치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표현하 고 있다.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권한이 주어진 설계자는 역시 “..... 契約금액에서 조정에 의한 소규모 변경사항을 명령할 수 있으며 契約 서류의 한도를 벗어나는 契約期間을 延長을 명령할 수 있다(AIA, 1977). AGC, ASCE 등에서 공표된 계약서는 契約서류에 명기된 자재

나 인원을 투입할 경우 거절하거나 프로젝트 진행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을 때 설계자가 시공자에게 작업을 중지시킬수 있도록 조언을 할 수 있는 權限을 附與하고 있다.

설계자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설계자가 동일한 조건하에서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투입되는 합리적인 주의, 기술, 능력이 요구되어진다. 연방정부 계약서 Form 253에서는 다음과 같은 保證條項을 포함하고 있다.

聯邦政府 契約書 Form 253 保證條項NK¹¹⁾

- (a) 설계자는 전문적인 품질, 기술적인 정확도, 모든 설계 및 도면, 시방서의 조정 및 이 계약에서 설계자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다. 부가적인 보상없이 설계자는 설계, 도면, 시방 및 기타 서비스부문의 실수나 결핍사항에 대한 교정이나 보정을 해야 한다.
- (b) 본 계약하에서 요구되어지는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검토, 승인, 혹은 수락이 없거나 대가지급이 없는 것은 본 계약하에서 어떠한 종류의 권리 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유발시키는 행동의 어떠한 원인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설계자는 본 계약에 의해 행해져야 할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의 이행을 태만히 한 설계자로 인한 정부가 입은 모든 종류의 손실은 적용법률에 따라 정부에게 책임(Liability)이 있으며 그 책임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 (c) 본 계약하에서 제공되어지는 정부의 권리와 처방은 법률에

11) Standard Form 253, *Architect-Engineer Contract*, April 1975, Prescribed by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의해 제공되어지는 모든 종류의 권리와 처방에 부가되어진다.

보증조항이 계약에 포함되는 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설계자는 전문적인 실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責任(Liability)이 있다.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두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진다.

첫째, 계약의 특수한 의무와 일치하지 않을 것.

둘째, 전문적 기준의 개념에 포함되는 서비스를 행한 실수일 것.

수행되어지는 서비스에 대하여 논의된 바와 같이 설계자는 일반적으로 3가지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法的인 義務에 대한 책임이 있다.

1. 설계자
2. 시공중 발주자의 에이전트(Agent)
3. 발주자와 시공자사이에 발생하는 분쟁해결 그리고 계약서류의 해석

그러므로 설계자는 계약측면의 책임과 전문기술측면의 책임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문적인 책임의 일반적인 원인은 전문적인 技術提供의 怠慢에 기인한다. 설계자와 엔지니어에 대한 표준화된 기술제공사항은 의사,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들과 유사하다. 이 기준은 아래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엔지니어의 技術提供事項에 대한 基準¹²⁾〉

고객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함에 있어서, 설계자는 그가 보통 훌륭한 조건을 갖춘 설계자들에 의해 주어지는 학습 및 기교의 정도와 동일한 지역에서 영업을 가지고 있고 가질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암암리에 표현해야 한다. 설계자가 그의

12) Paxton 대 County of Alameda의 판례: 259p. 2d 934(Cal. 1953).

기술제공업무를 동일한 지역에서 전문적인 영업을 하는 명성이 있는 요원에 의한 기술제공사항과 같이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그의 또 다른 의무이며 그가 고용되어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어지는 노력에 대하여 그의 학습을 적용하고 기교를 시험하는 데 그가 최선의 판단을 하고 합리적으로 근면해야 하는 것도 그의 의무이다.

태만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설계자에 대하여 그의 작업은 그러한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이것은 설계자가 완벽하게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는 그들의 專門的인 技巧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보통 기교와 전문가 구성원의 경쟁, 그들에게 부과되는 책임에 대한 태만여부를 시험할 의무가 있다. 그러한 전문가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무결점을 기대하는지를 판결할 것이 아니라 단지 합리적인 競爭과 營業行爲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서비스를 구매한 것이지 보증을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¹³⁾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증언록은 전문적인 책임을 완수하도록 요구되어진다. 전문가는 적절한 영업의 기준, 기준으로부터 떨어진 특수한 업무 사항 둘 다를 우선 완수해야 한한다.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가 그의 전문적인 업무에 포함되어지는 기준과 관련하여 태만으로 기소된 경우, 그 기준이 일반 상식의 수준이 아닌 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검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부된 사항이 상식의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지식에 포함될 경우 전문적인 증거는 결정적이고 무시될 수 없다”¹⁴⁾

13) Allied Properties 대 John A. Blume and Associates, Inc.의 판례: 102 Cal. Rptr. 251, 1972.

나. PLI 保險料의 負擔 關聯規程

미국에서는 設計會社들은 PLI에 경험이 있는 브로커와 계약함으로써 많은 보험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어떠한 보험회사가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설계회사들은 보험 옵션을 평가함으로써 다른 保險約款들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배서, 제외사항 및 핵심약관으로부터 가능한 付保의 다양성, 保險業者의 安定性 때문에 설계자들이 보험약관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저가의 보험료에 매료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험회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쉽게 간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PLI의 성격에서와 같이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PLI는 설계회사 혹은 설계자가 가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부담해야 한다. 즉, 발주처에서 精算項目(Cost Reimbursable Item)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급하고 있는 설계대가에 설계자나 감리자의 자기보호를 위한 비용(PLI 보험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한다면 PLI보험료를 발주처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한다면 PLI保險料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의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장 실비정액 가산방식〉

제14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기술자의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는 별

14) Huber, Hunt and Nichols, Inc. 대 Moore의 판례: 136 Cal. Rptr. 603, 1977.

표3과 같다.

제1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그 실비를 계산한다.

제16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 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 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를 계산한다.

제17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제23조(인건비):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준칙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6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4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를 말한다.

〈과기처 특정연구사업관계법령〉

1. 인건비: 연구개발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주관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의하여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2. 여비
3. 기술정보활동비
4.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5. 재료 및 전산처리비
6. 시작품제작비
7. 연구관리비
8. 수용비 및 수수료: 인쇄·복사·인화비,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제세공과금, 공고료, 제수수료 등으로서 실제소요액으로 한다.
9. 개발보전비: 연구과제수행에 따른 제반 간접경비
10. 위탁연구개발비

1) 人件費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의 與否檢討

이상에서 살펴본 政府部門 技術用役의 費目에서 인건비라 함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는 “기술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하고 있고,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서는 연구요원의 급여를 말하며, 勤勞基準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말한

다. 또한 과기처 특정연구사업관계법령에서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즉, 현재 정부부문의 기술용역의 인건비에는 産災保險金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인건비 내에 기술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민법의 도급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 제664조~674조〉

- (1)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 (2) 도급은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도급의 일반적인 성질은 도급의 정의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일의 완성에 대한 약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기술용역계약도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기 때문에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일의 완성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정부부문에서 지급하는 대가에 수급인의 작업위험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료를 인건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료를 계상하지는 않다. 즉, 인건비에 專門責任保險의 費用을 계상하는 것은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용역관련 대가 기준 혹은 豫定價格作成準則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技術料 등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與否檢討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의 기술료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技術의 使用 및 技術蓄積을 위한 代價를 말하고 있어 전문책임보험의 비용이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技術料라 함은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하나, 근본취지는 전문기술을 제공함에 있어서 파생될 수 있는 제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책임보험료를 기술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술료에 責任保險料를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 기술료의 정의에 대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2. PLI의 導入時 關聯制度의 改善方案

가. 責任保險規程方式 關聯 法令

責任保險의 規程方式은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대체로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즉 ①일정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 때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과, ②제3자에 대한 책임의 확정이 없어도 제3자로부터 청구가 있으면 保險者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손주찬, 1983: 305).

책임보험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상법조항을 살펴보면 전자의 방식에 의해 보험사고가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責任保險契約의 保險者는 被保險者가 保險期間 中の 事故로 인하여 第三者에게 賠償할 責任을 진 경우에 이를 補償할 責任이 있다.

1986년 개정된 미국의 책임보험보통약관중 손해사고방식(Occurrence Form)은 전자의 예에 속하고 배상청구방식(Claim-made Form)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 자동차보험 등과 같은 일반적인 책임보험의 경우 전자의 방식에 의해 보험사고가 처리되지만 PLI의 경우 후자의 경우에 따라 보험사고가 처리된다는 특징이 있다. 賠償請求方式에 의한 PLI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청구가 제기되어야 한다. 이를 請求發生基準(Claim-made Basis)이라고 한다. “청구가 제기된다”함은 건설공사의 완성 이후 수년만에 청구가 발생하였다면 약관이 유효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PLI 約款은 사건 당 처리되는 자동차보험이나 일반책임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일반책임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공사의 완성과 함께 付保期間이 완료되지만 PLI의 경우 공사의 완성과는 관계가 없고 청구의 제기시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에도 청구제기 coverage 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회사와 coverage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약관에 기명으로 된 이전의 파트너와 고용인들은 그들이 회사에 있을 때 수행한 서비스에 대하여 coverage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AIA, 1995: 135~150).

전문가의 법률상 賠償責任과 관련된 조항은 민법 제750조의 不法行爲와 民法 제390조의 債務不履行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조항에 의거 전문가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채무의 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전문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關聯法令 및 制度

공사보험과 관련된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 제78조, 제79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6조이다. 공사보험과 관련된 조항들은 대부분 PLI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공사보험과 관련된 법률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53조 손해보험의 가입〉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적용대상등〉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정의〉

- ①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 ②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 공종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실시 설계·시공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 입찰참가사전자격심사 및 부대입찰의 공사〉

영 제13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사” 및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의 공사(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 제외한다) 를 말한다.

1. 길이 100m이상의 교량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고속도로건설공사
5. 간척공사
6. 준설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건설공사
12.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13. 폐수처리장건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15. 상수도(정수장을 포함한다) 건설공사
16. 하수도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공용청사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공동주택건설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 1995.7.10) 제36조 손해보험〉

-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78조(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계약 중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계약 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한 공사) 및 시행규칙 제23조(입찰참가사전자격심사 및 부대입찰의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예정가격(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손해보험 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에 하여야 하고 보험기간은 당해 공사착공시부터 발주기관 인수시까지로 하며, 피보험자는 발주관서, 계약상대자 및 기타 공사와 관련있는 자로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35조(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의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보험약관과 당해 공사의 특성,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관서·계약자·보험사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PLI를 도입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발주처가 대가를 지급하고 정산처리(제1안)하는가, 아니면 계약자가 대가의 일부분으로 처리(제2안)하는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진출한 外國監理會社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제2안과 같은 형태를 띠다고 볼 수 있으며, 예시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양대교 감리계약일반조건 제9조〉

9.1 감리자는 용역수행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보험을 확보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보험료 지급의무를 진다. 보험료는 감리자 부담이며 본부 앞으로 청구할 수 없다. 최소한의 보험범위, 보험조건 및 보험회사는 본부에 의해서 수락되어야 한다.

즉, 발주자가 보험료를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保險料가 代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이므로, 최소한의 보험범위, 보험조건 및 보험회사는 본부에 의해서 수락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음.

다. 設計責任保險(共濟) 導入時 制度改善方案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보험과 관련된 법률조항은 손해보험과 관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가 있으므로, 계약조건 및 대가기준에서 관련되는 조항을 추가한다면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 업무수행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다.

1) 國家契約法 施行令(제53조)의 檢討

-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53조의 의미를 해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발주자가 가입의 주체로 되어 있으며 임의조항이다.
 - 당해계약의 목적물의 범위가 문제시 될 수 있으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6조 제1항에서는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설계책임보험의 대상범위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 손해보험이 공사보험만을 한정적으로 의미하는 것인가 혹은 포괄적으로 해석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는 設計責任保險(共濟)制度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본 내용을 설계책임보험제도 도입의 근거사항으로 삼는 데는 문제가 없으므로 본시행령을 개

정하기 보다는 그 하위 규정인 技術用役 一般條件을 개정하여 설계책임보험(공제)제도에의 가입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技術用役契約 一般條件 改正(제○조 제1~6항 設計責任保險 新設)

- 제1항: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78조(100억원이상의 대형공사 계약 중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한 공사) 및 시행규칙 제23조(입찰참가 사전자격심사 및 부대입찰의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설계책임보험(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항: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건당한도와 누적한도액을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 제3항: 설계책임보험(공제)제도의 가입은 설계 시작이전에 하여야 하고 보험기간은 당해 공사착공시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로 하되 공종별로 별도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발주관서, 계약상대자 및 기타 설계와 관련있는 자로 한다.
- 제4항: 계약상대자는 설계책임보험(공제)제도가입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항: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의 설계책임보험(공제)제도와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보험약관과 당해 설계기술용역의 특성,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관서·계약자·보험사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6항(보험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업무상 과실로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1의 1항과 2항 각호의 죄를 범한 자가 엔지니어링 진흥

법 제○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책임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2의 벌칙을 설계부분에 한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엔지니어링사업의 代價基準 改正

-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 항목중 직접경비에 구체적으로 포괄일반보험료를 명시하고, 技術料에서는 保險料를 명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기술료에 있는 보험료는 실비를 계산하는 것으로 명시할 수 있다.
- 제1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말한다), 책임보험료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그 실비를 계산한다.
- 제17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책임보험료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단, 보험료의 경우 실비를 계산한다.

4) 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令의 改正與否 檢討

- 제13조 2항 7의 「조합원의 도산방지를 위한 보험」조항이 설계책임보험(공제)제도의 근거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설계책임보험(공제)제도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 개정없이도 현행 32조 2항의 7을 근거 조항으로 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 共濟導入을 위한 施行規則의 개정: 공제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공제료에 관한 사항,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 제16조 3항 追加: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보험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共濟事業 施行規則 制定時 記載事項

-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① 공제사업의 범위·종류, 피공제자, 공제목적과 공제계약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 ② 공제금액 및 공제기간에 관한 사항
 - ③ 공제계약의 체결절차에 관한 사항
 - ④ 공제료의 수납·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 ⑤ 재공제계약 및 재재공제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⑥ 공제금액 공제사업의 종류와 공제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 ① 공제금의 지급사유
 - ② 공제계약의 무효원인
 - ③ 공제자의 면책사유
 - ④ 공제자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 ⑤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받는 손실
 - ⑥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의 원인과 해지할 경우의 당사

자의 권리 의무

- 공제료에 관한 사항
 - ① 예정사고율 또는 예정사망율에 관한 사항
 - ② 예정사업 비율에 관한 사항
 - ③ 예정이율에 관한 사항
 - ④ 공제료(부가공제료·위험공제료 및 적립부분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 ⑤ 미수공제료의 계상범위 및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책임준비금 기타 준비금에 관한 사항
 - ① 책임공제사업에 있어서는 미경과공제료적립금과 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 ② 장기공제사업에 있어서는 공제료적립금·미경과공제료적립금 및 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 ③ 계약자배당준비금에 관한 사항
 - ④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表 VII-1〉 新舊法 對照

	現 行	改 正(案)
1.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조 제1항 ~5항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78조(100억원이상의 대형공사 계약 중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한 공사) 및 시행규칙 제23조(입찰참가 사전자격심사 및 부대입찰의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설계책임보험(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항: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공제)가입금액은 건당한도와 누적한도액을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 제3항: 설계책임보험(공제)제도의 가입은 설계 시작이전에 하여야 하고 보험(공제)기간은 당해 공사착공시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로 하되 공종별로 별도로 정하며, 피보험(공제)자는 발주관서, 계약상대자 및 기타 설계와 관련있는 자로 한다. • 제4항: 계약상대자는 설계책임보험(공제)제도가입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공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항: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의 설계책임(공제)보험제도와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보험(공제)약관과 당해 설계기술용역의 특성,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관서·계약자·보험(공제)사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6항: (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업무상 과실로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1의 1항과 2항 각호의 죄를 범한 자가 엔지니어링 진흥법 제○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책임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2의 벌칙을 설계부분에 한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表 VII-1〉 계속

	現 行	改 正(案)
2.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특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그 실비를 계산한다. • 제17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특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말한다), 책임보험(공제)료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그 실비를 계산한다. • 제17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책임보험(공제)료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단, 보험료의 경우 실비를 계산한다.
3.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6조 3항 追加: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제제도도입을 위한 시행규칙: 공제사업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공제료에 관한 사항,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제정함.

參考文獻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993.
- 강원희, 『손해보험론』, 보험감독원 보험연수원, 1992.
- 건설부, 『건설기술연구 장기발전 방향』, 1987, pp.49~50
- 고평석, 『책임보험계약론』, 삼지사, 1990.
-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국내엔지니어링 기술분석·평가 및 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1989.
- 과학기술처, 『엔지니어링 기술수준 평가 및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1994.
- 길성도, 「엔지니어링 사업의 부실방지 대책」, 『엔지니어링』,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1993. 6, pp.46~50.
- 김수삼,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국제 경영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1994. 11, p.71.
- 노상봉, 『특종보험손해사정』, 한국보험공사 보험연수원, 1988.
- 손주찬, 『책임보험계약의 문제점, 상법상의 제문제』, 박영사, 1983.
- 손찬현, 『엔지니어링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국제화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1987, pp.335~347.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관계법령 및 정관』, 1994.
- 이태식 외, 『건설기술수준 지표개발 및 장기 발전 방향』, KICT, 1993. 12.
- 재정경제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1995.
- 田邊康平·石田 滿 編, 『新損害保險書』, 문진당, 1985.
- 지수현, 『배상책임보험론』, 보험연수원, 1995, pp.54~487.

- 한국산업은행, 「국내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I, II」, 『산업기술』, 제299호, 300호, 1991.
- 한국기술용역협회, 『기술용역에 관한 예산회계법령 등 계약관계법령 개정연구』, 1992.
- _____, 『기술용역편람』, 1988.
- _____, 『일본엔지니어링업계 방문보고서 -정보교류 및 자료모집사업』, 1988.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미국공공사업에서의 CM제도」, 『엔지니어링』, 1994, p.40.
- _____, 『엔지니어링 강습회』, 1993.
- _____,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개선연구』, 1993.
- _____,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집』, 1994.
- _____, 『엔지니어링사업 성과품의 품질향상 대책방안 연구-신고제도와 계약제도를 중심으로』, 1994.
- _____, 『엔지니어링 실무편람』, 1993.
- _____, 「유럽의 공공사업에 있어서의 감독·검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개요」, 『엔지니어링』, Sakai Yoshikazu, 1995, 12, pp.43~44.
- 한정인, 『신생명보험수리』, 한국보험공사 보험연수원, 1985.
- AIA, *The Architect's Handbook of Professional Practice* 1, 1995, pp.135~150.
- Allied Properties v. John A. Blume and Associates, Inc., 102 Cal. Rptr. 251, 1972.
- CMAA, *Construction Manage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 A Review of Lloyds of London Form CM/94*, 1994.9.
- Edward R. Fisk, *Construction Project Administration*, Prentice Hall, 1992, p.224.
- FIDIC, *Standing Committee on Professional Liability Report 1983*, _____, *Standing Committee on Professional Liability Report 1986*,

- _____, *Client/Consultant Model Service Agreement*, 1991.
- Green, Mark R., 『위험과 보험 I』, 한국보험공사 보험연수원, 1981.
- _____, 『위험과 보험 II』, 한국보험공사 보험연수원, 1987.
- Huber, Hunt and Nichols, Inc. v. Moore, 136 Cal. Rptr. 603, 1977.
- Irv Richter, Roy S. Mitchell, *Handbook of Construction Law and Claims*, Prentice Hall, 1982, pp.54~59.
- Keith Collier, *Construction Contract*, Prentice Hall, 1989, pp.69~73.
- Paxton v, County of Alameda, 259p. 2d 934(Cal. 1953).
- Richard A. Kell, "How to Avoid the Litigation Trap: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Building Science Forum* 1993, p.24.
- Scope of Designated Services*, AIA Document B 162 (1977 ed)
- Toman-Cubbage, Cheryl, *Professional Liability Pitfalls for Financial Planners*, Printice Hall, 1988.
- Standard Form 253, *Architect-Engineer Contract*, April 1975, Prescribed by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EXECUTIVE SUMMARY

1. TITLE

A Study on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for Enginee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Mutual Aid)

2. OBJECTIVE

The study is aiming to provide the basic direction of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to Enginee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Mutual Aid).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wofold. The first is to cover the risks of the exposures that engineers' work generate, and the second is to enforce research development of engineering industry by securing engineers' creative design.

3. NECESSITIES

Construction projects often encounter unforeseen risks such as accidents being ascribed to design mistakes, which may lead to claims and disputes. Due to the UR Agreements passed in 1993, many of experienced foreign construction companies will come into our construction market.

Concerning these circumstances, it is anticipated that claims may

be increased by those companies and the impact can be tremendous unless the public construction owners are prepared for the risks. Therefore, it is required for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also should learn how to manage risks and explore a device for encouraging engineers' creative activities.

4. CONTENTS AND SCOPE

In order to accomplish the study objectives, the contents of study include:

- to Review Present Situations and Issues of Engineering Industry
- to Review Theory of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 to Review Situation and Issues of Insolvent Construction Design
- to Compare on Foreign Schemes for PLI
- to Develop Model of Enginee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 to Propose Amendments of Related Institutions

5. CONCLUSIONS

The basic direction of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for Enginee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Mutual Ai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ypes of Enginee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Although EPLI is introduced as mutual aid type in the beginning stage, in long-term, it is desirable EPLI is transformed into insurance types

reaching the circumstance(accumulating of related statistics etc.) satisfied.

Category: All areas of engineering industry from basic design to design inspection(faulty design, breach of contract, negligent observation of construction, negligent selection of materials/equipment, conflict of interest, negligent soil testing, increased cost of construction, practice beyond scope of professional license).

Compulsion: EPLI is principally defined as arbitrary insurance, but the firm which perform the construction of public work be need to take participate in EPLI. Especially, the firm which is insured loss insurance under contract law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also is required to enrolled in EPLI.

Insurance Amounts: EPLI will pay all amounts in excess of the deduction up to EPLI's limit of liability, which it will be legally obligated to pay as a result of a "wrongful act" occurring design object. the "wrongful act" must happen and "claim" therefore must be made on or after the "effective date" and before the end of the policy term stated on the Declarations.

Limits of Liability: The limit of liability shown on the Declarations is the maximum EPLI will pay for any one or more "claim" made during this policy term. This limit applies as excess over any deductible amount. The amount of the limit of liability in effect at the time of the actual or alleged "wrongful act", or the amount stated as the limit of liability for this policy term.

Premium: All premium for this policy shall be computed in accordance with our rules, rates, rating plans, and minimum

premiums applicable to this insurance. If the amount of the premium basis reported to EPLI is incorrect EPLI shall be entitled to an additional premium or "insured" shall be entitled to a premium refund, which will be based upon the correct amount of the premium basis.

Insurer: In initial stage, EPLI should be operated by engineering mutual-aid cooperation, but operation of EPLI should be opened to private insurance companies by stages.

附 錄

附錄 I . LLOYD社의 建設業管理者專門家 責任保險
申請書 / 201

附錄 II . 美國建設管理 協會 標準契約書 中 保險關聯
條項 / 225

附錄 III . 農業協同組合法 關聯條項 / 246

附錄 IV . 建設技術管理法 關聯條項 / 250

附錄 V . 專門職 責任保險(監理部門 適用例) / 251

附錄 I. LLOYD社의 建設業管理者 專門家 責任 保險 申請書

가. LLOYD사의 한 보험업자에 의한 건설업관리자 전문 책임보험 신청서 -보험 증권 작성용 -

신청자 숙지사항

1. 이 신청서는 건설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대리점 운영(Agency Operation)을 위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 책임보험제도이다. 보장이 첨부된 추가 설문지의 완성에 따라 보장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건설이나 “위험에 처해 있는” 운영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2. 모든 질문들이 완벽히 대답되어야만 한다. 즉, 깔끔하게 type 또는 print해 주고 만약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좀 더 공간이 필요하신 분은 다른 용지에 이어서 쓰고 질문 번호를 표시해 주십시오.
 4. 요구되는 신청서 및 부록을 완성해 주십시오.
 5. 이 신청서와 모든 부록(추가)형식은 회사의 사장(Principal)에 의해 서명 되어야 한다.
-

1. A. 신청자 이름: _____
 _____ 소유자(Proprietorship) _____ 조합 _____ 법인

B. 주소: _____
 시: _____ 군: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

C. 전화: _____ 팩스: _____

D. 지사주소(만일 적용된다면 분리된 추가사항을 사용하세요)

E. 설립날짜(현재 실체: current entity): _____

F. 직원수:	작년:	금년:
사장/공동소유자/관리자	_____	_____
기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 (설계 또는 기술자)	_____	_____
CMpractitioners	_____	_____
기타직원	_____	_____
전체직원	_____	_____

G. 지원자의 매면 전직업을 지적하십시오.

H. 전문가의 1번 부록을 완성하십시오.

2. A. 신청자의 이름에 변화가 있거나 어떤 다른 회사나 기구가 합병
 되어 있거나 신청자에게 합병되어 있지는 않는가? 신청자의 이
 름에 있어 어떤 미정된 변화나 미정된 합병할 것 또는 합병받을
 것이 있는가? _____에 _____아니오

* 만약 예라면 분리해서(다른종이에) 추가사항을 모두 자세히 기술
 해 주세요.

B. 지난해동안 총 청구(Billing) 중 신청자가 가장 높은 백분율을 얻어낸 4가지 주(states)를 기록하십시오.

_____ state % _____ state % _____ state % _____ state %

non-US(비미국국가) 공사로부터 얻어낸 수입 백분율을 기록하십시오.
_____ %

C. 청구(Billing)의 백분률로서 구분하십시오.

구조물: _____ %	건설관리 : _____ %
토목 공학: _____ %	HVAC : _____ %
구조 공학: _____ %	환경/토질/지형: _____ %
기계 공학: _____ %	내부 설계 : _____ %
전기 공학: _____ %	설계/시공 : _____ %
음향 공학: _____ %	기타 : _____ %
	전체 : <u>100</u> %

* 만약 예라면 별도의 종이에 추가하여 모든 세부사항을 써주십시오.

건설관리 - 서비스에 관한 대리점의 범위:

공사관리: _____ %	계획/조정 : _____ %
비용관리: _____ %	계약/공사행정 : _____ %
비용계획: _____ %	건설가능성 제고 : _____ %
유요성 공학: _____ %	건설 감사(Inspection) : _____ %
물품검사: _____ %	안전 서비스 : _____ %
Claims 분석: _____ %	기타(설명) _____ : _____ %
	합계 : _____ %

다리/터널/댐	_____	_____
항구의 수역/방파제/ 하역항구	_____	_____
공공시설물	_____	_____
석유(Petro)/화학	_____	_____
폐수	_____	_____
매립지/산업쓰레기	_____	_____
핵	_____	_____
기타;상세히 분류해 주십시오.	_____	_____
합계:	<u>100</u> %	<u>100</u> %

I. 당신은 향후 12개월동안에 대하여 위 백분율들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를 예측하였는가? 만약 그렇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J. 가장 큰 과제의 부록 3번을 완성하십시오.

K. 당신회사의 건설경영서비스 안내서의 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3. A. 고객 소개: 다음 각 범주로부터 얻어지는 신청자의 청구(Billing) 백분율을 표시해 주십시오

시공자: _____ %	대출기관 : _____ %
다른 설계전문가: _____ %	연방정부 : _____ %
상업인: _____ %	주정부 : _____ %
개인 발주자포함: _____ %	지방정부 : _____ %
법인: _____ %	다른 상세한분류 : _____ %
부동산개발업자: _____ %	다른 상세한분류 : _____ %

B. 지난 회계년도 동안에 단일 고객 또는 단일 계약에 의해 이끌어낸 것 중 신청자의 청구(Billing)의 20%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있는가?

_____ 예 _____ 아니오

- 만일 있다면, 20%이상으로 대표되는 각 고객에 대하여, 고객과 과제를 명백히 밝히고, 제공된 서비스를 기술해 주십시오.

C. 신청자 또는 어떤 하청업자(보조인,고용인: Subsidiary), 부모 또는 다른 기구가 지난 36개월동안 종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가?

① CM-AT위험등을 포함하는 실제 건설, 조립 또는 건립

_____ 예 _____ 아니오

② 컴퓨터 s/w의 개발, 판매 또는 임대

_____ 예 _____ 아니오

③ 실제 부동산 개발

_____ 예 _____ 아니오

④ 어떤생산등의 분배, 임대 판매,제조 및 과정 또는 뚜렷한 생산 과정

_____ 예 _____ 아니오

- * 만일 위 질문등의 대답 중 어느 것이라도 예라면 별도의 추가사항을 첨부하고 실체에 의한 연간 건설수익을 지적해 주십시오.

D. 신청자가 장소의 안정성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부가적으로 보험에 들(Assured on) 시공자의 백분률을 지적하라.

① 고객의 일반적 책임보험증권 _____ %

②시공자의 일반적 책임보험증권 _____ %

E. 신청자나 어떤 고용인, 부모 또는 관련 기구 등이 결산회계년도 또는 현 회계년도 동안에 설립된 어떤 Joint Venture(합작투자) 공사(Project)에서도 파트너로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

_____ 예 _____ 아니오

* 만약 예라면 신청자와 다른 합병 Joint Venture(합작투자) 당사자들 (Parties)의 진행공사 상태, 서비스 수행, 건설 유용성(Value), 기술 (해설: Description), 공사명 등을 각각 분리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F. 신청자에 의해 하청 계약된(Sub-contracted) 모든 전문서비스를 나열하고 각각의 총 청구(Billing)에 대한 백분율을 지적하라.

_____ % _____ % _____ % _____ %

G. a) 신청자는 연간 기반(기준:Basis)에 입각한 보험의 증명서 획득에 의해 그 상담인에게 전문적 고용보험의 증거를 요구하였는가? _____ 예 _____ 아니오

b) 신청자의 상담(Consaltant)의 몇 퍼센트가 전문 고용보험을 수행하는가? _____ %

4. 수익 와해(Breakdown): (CM 대리점(Agency)을 위한 고안이며 총 청구, 건설유용성의 위험시에는 부록(Supplement) 5를 보시오.)

A. 공동 보험사업 공사(Project): \$ _____ \$ _____

* 첨부하여 모든 세부사항을 적으시오.(공사(Project)명, 기술, 계약 유용성(Contract Value), 기타 J/V에 포함된 당사자들(Parties), 공사(Project)의 상태, 누가 공사(Project)를 운영하는지 등을 포함해서)

B. 설계(project)는 별도의 설계정책하에 보험화 된다.

\$ _____ \$ _____

C. 영구적으로 포기된 설계: \$ _____ \$ _____

* 별도의 추가사항에 포기한 상태와 이유를 포함한 모든 세부사항을 적으시오.

D. 실행가능성 연구, 기본 계획, 보고의견 등
\$ _____ \$ _____

E. 직접 상환할 수 있는 것 \$ _____ \$ _____

F. 기타 모든 다른 청구(Billing) \$ _____ \$ _____

G. 총청구(Total Gross Billing)(선별 되었든 아니든간에) 전문적 행위와 무관한 재산, 지대 또는 기타 소득을 포함시키지 마시오.

* Note: 신규회사들은 향후 12개월을 위해 산정해 놓은 총청구를 이용할 수있다.

내년 산정 \$ _____ 금년 \$ _____ 작년 \$ _____

관리

5. A. 신청자는 실내건물(In-house) 질관리 과정을 가지고 있는가?
_____ 예 _____ 아니오

B. 그것은 문서화된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_____ 예 _____ 아니오

C. 모든 적절한 직원 구성원들이 이 과정에 능숙한가?
_____ 예 _____ 아니오

* 위의 질문에 어느것이든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른 추가 용지에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D. 신청자는 동료감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_____ 예 _____ 아니오

* 만일 예라면 간략하게 언제, 누구에 의해서 행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E. 어떤 신청자 사장, 조합, 관리자, 주주, 고용인, 임시적인 가족회원이 신청자에 의해 판매되고 있는 전문적 서비스를 위한 어떤 설계에 대한 발주자들의 이권을 가지고 있는가?

_____ 예 _____ 아니오

* 만일 예라면 세부적으로 설명하라.

F. 신청자가 사장, 조합(동업자), 관리자, 임시 가족회원등을 대표하여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조합(동업자), 관리자, 주주 또는 고용주로서 나타낼수 있는가?

_____ 예 _____ 아니오

* 만일 예라면 세부적으로 설명하라.

G. 신청자가 조정 받고, 소유되거나 또는 신청자가 관계되었거나, 신청자가 다른 실체를 소유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가?

_____ 예 _____ 아니오

* 만일 예라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H. 새고객은 신청자의 경영위원회의 승인 내용을 인정하거나 신청자에 관한 적어도 3명의 파트너 관리자를 인정하는가?

_____ 예 _____ 아니오

* 만일 예라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I. 그 승인 내용은 신용결재를 포함하고 있는가?

_____ 예 _____ 아니오

MISCELLANEOUS

6. A. 부록1에 나열된 어느 개업자들이든 자신들의 전문적 행동의 결과로 책임자에 의한 규정적 행동의 주체가 되어 본적이 있는가?

_____ 예 _____ 아니오

* 만일 예라면, 별도의 추가사항에 모든 세부사항을 적으시오.

B. 얼마만큼의 개업자들이 지난해에 적어도 7시간이상의 형식적 계속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는가? 이것에는 전문적인 협회(Association)에서 지원한 세미나 및 그와 유사한 기능들이 포함될 수 있다.

C. CM 대리점을 위한 사용료(fee)와 계약(약정)을 지적해 주시오. 대리점(Agency)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계약의 형식	사용료(Fee)의 %	계약의 수(건)
CMAA	_____	_____
AIA	_____	_____
EJCDC	_____	_____
AGC	_____	_____

다른(_____)

D. 신청자는 모든 설계에 있어 서류상의 계약을 사용했는가?
_____ 예 _____ 아니오

* 아니오라면 구두 동의가 사용된 때의 상황을 설명하라.

E. 만약 비표준적이거나 수정된 CMAA, AGC, AIA 또는 EJCDC
계약 또는 문서상의 동의가 사용되었다면 신청인이 어떠한 계약
이나 동의를 점검하는데 누구를 사용하겠는가?

F. 신청인의 표준 전문적 서비스계약을 복사하여 첨부해 주시오.

보험

7. A. 조사후에 청구나 소송이 지난 10년내에 신청인에게 들어온 적은
없었는가? _____ 예 _____ 아니오

* 독립적으로 보험에 가입된 설계안에 대한 청구도 포함하여라.

B. 신청인의 어떠한 구성원도 신청인에 대한 청구가 발생함에 따른
상황, 증거없는 주장, 또는 논쟁에 주의하는가에 관한 조사는 있
었는가? _____ 예 _____ 아니오

C. 신청인이 현재 등록한 보험유형이 감퇴, 취소되거나 또는 제안된
피보험자의 거부로 그것에 관해 갱신한 적이 있는가?
_____ 예 _____ 아니오

8. 전 회사 및 기간(Tail)혜택에 관한 연장 청구를 포함하는 지난 5년
간의 보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아래의 정보는 정책번호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9. 적용(혜택: Coverage)의 한계와 요구된 공제를 지적

- a. 책임상의 적용(혜택) 한계
- b. 자가 보험액

신청자는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의 정확한 정보를 받기 위한 Statemen’s와 어떠한 부가 사항은 건설하여야 하고 실질적인사항은 축소생략 또는 잘못 언급되어져서는 안된다. 만약 이 신청서 날짜 후 나 위와 같은 정책의 수립날짜, 여기에 포함된 정보에 관한 어떠한 실질적인 변경부분이 있다면 이 신청서의 결과로 인해 제기한 정책의 제한, 조건, 기간(Terms)을 수정할 관리를 가진다.

이 신청서에 서명하는 것이 보증인을 보험회사에 완전히 구속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특별히 담겨진 진술들이 보험업자에 의해 보험증권이 등록되는데 의존할 진술들이 동의되었다.

이 신청서는 모든 소유자, 사람, 조합(동업자), 주주, 관리자 및 고용인을 대표했다.

_____	_____
신청자의 공인된 서명	제목

날짜	

모든 질문이 확실히 대답되게하고 모든 적용가능한 부가양식이 완성되도록 하시오.

나. 전문가 부록

이 신청서의 질문1.H에 부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 형식을 대신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사무실 주소를 말해 주시오.
2. 위의 1번에 대하여 응답하여 분류된 각 사람들에 대한 개인 이력서를 제공해 주시오. 그 이력서에는 다음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 a. 위치(직위)/ 지금 가지고 있는 직위(Title)
 - b. 신청회사에 있었던 연수
 - c. 출석한 대학, 학위 수여와 졸업년도를 밝힌 학력
 - d. 전문적 자격증 취득 및 취득년도
 - e. 고용주, 주소, 고용일과 직업명 그리고 설명을 곁들인 적어도 과거 10년동안의 경력
3. 위 1번에 대한 답으로 분류된 어느사람 중에도 전문적 자격증의 정지 또는 철회한 적은 없었는가? ____ 만약 있었다면 그 상황을 설명하라.
4. 위 1번에 대한 답으로 분류된 각 사람들에 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그들의 의무등을 다음에 간단히 설명하라.
 - a. 계획 수립 및 관리
 - b. 예산, 평가 및 비용감시와 제어
 - c. 계획 및 조정(Scheduling & Coordination)
 - d. 계약행정

- e. 질관리
- f. 안전 조정 및 관리
- g. 위험관리
- h. 기타 CM관련 책임들

나는 여기에 제출된 정보가 신청자의 전문적 고용보험의 일부분이
되며 같은 유형과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가정이 됨을 안다.

신청자의 공인된 서명

제목

날짜

다. LLOYD's에 의한 보험업자에 의한 건설업관리자
전문 책임보험 신청서 -Environmental Supplement-

신청인의 숙지사항

1. 이 형식은 만약 신청인이 질문 2D에 대한 언급으로서 환경적 공사를 위한 어떤 전문적 서비스를 현재 수행하고 있다면 완성될 수 있다.
2. 만일 어떤 질문이든 충분히 대답하기에 공간이 부족하다면 별도의 종이를 사용해 주시오.
3. 공백을 남기지 말아 주시오.

1) 이 형태의 공사를 수행하는 실제의 이름: _____

2) 이 형태의 공사를 신청인이 시작한 날짜: _____

3) 다음의 범주에서 전문가의 숫자를 지적하십시오.

	작년	금년
지질학자/수문학자	_____	_____
지질공학자	_____	_____
산업기사또는산업독물학자	_____	_____
화학자/생물학자	_____	_____

4. 지난해 동안 환경공사를 위해 전문적으로 지불한 것 중 가장 높은 비율의 4가지 주를 지적해보아라.

_____ _____ _____ _____

state % state % state % state %

5. 다음 각 범주로부터 획득한 신청자의 청구(Billing)의 백분율을 지적하라.

계약자: _____ %	대출기관: _____ %
기타 설계전문가: _____ %	연방정부: _____ %
상업인: _____ %	주정부: _____ %
개인 발주자포함: _____ %	지방정부: _____ %
법인: _____ %	다른 상세한분류: _____ %
부동산개발업자: _____ %	총: <u>100</u> %

6. 신청자는 땅이나 재산의 현재 진행중인 또는 미결인 매매에 있어 어디에서 매매자에게 설명하는가. 장소이름, 고객 & 가격을 포함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7. 신청자는 그의 계약 단서에 있어 항상 책임보험 조항의 한계 및 무해함을 보장 받을수 있는가? _____ 예 _____ 아니오

*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의 책임보험이 어떻게 신청자를 보호해 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8. 전체에 대한 백분율로서 수행된 서비스

	신청자에 의한 수행	제3자에게 하청된 것
a) 1단계- 회계감사	_____ %	_____ %
b) 2단계- 장소탐색	_____ %	_____ %
c) 3단계- 장소교정	_____ %	_____ %

- d) 환경적 여건의 입수
또는 의뢰(Submission) _____ % _____ %
- e) 토양/지질 - 위험하거나
오염된 물질에 관계되지 않은 기술적 공사
_____ % _____ %
- f) 환경적 영향력/보존 연구/
녹지조성(Landscaping)/ Parks other than the above
_____ % _____ %
- g) 석면/ 납의 경감 _____ % _____ %
- h) 기타(추가설명) _____ % _____ %

9. 신청자는 어디에서 위험물질을 실험하는가?

- a) 제출된 표본의 합법적인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신청자는 어떤식으로 확인하는가?

- b) 위험물질 표본의 처분에 대하여 신청자는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가? 그렇다면 세부 설명하라.

나는 여기에 제출된 정보가 신청자의 전문적 고용보험의 일부분이 되며 같은 유형과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가정이 됨을 안다.

신청자의 공인된 서명

제목

날짜

라. LLOYD's에 의한 보험업자에 의한 건설업관리자
전문 책임보험 신청서 -Claim Form-

신청자 숙지사항

1. 이 양식은 만약 신청자가 현재 또는 지난 5년동안 어떤 크레
임 소송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질문 7A 또는 B에 대한 대답
으로 A에 예 를 표시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
2. 어느 질문이든 충분히 답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도의 종이를
사용해 주시오. 소환장과 고소장의 복사본을 첨부하지 마시오.
3. 공백을 남겨두지 마시오.

1. 클레임에 포함된 사람들 모두의 이름과 회사의 이름

- a) _____
- b) _____
- c) _____

2. 연대 피청구자

- a) _____
- b) _____
- c) _____

3. 청구자의 성명: _____

4. 주장하는 오류의 날짜: _____

5. 어느 보험회사에게 이 크레임이 보고 되었는가? _____

6. 보험회사에 보고된 날짜: _____

7. 크레임의 현상태(○표 할 것)

Open In Suit(소송 중) Closed

8. 계류중인 크레임에 대한 기술

- a) 소환장에서 요구했던 금액: \$ _____
- b) 청구자(원고: Claimants) 안정 요구: \$ _____
- c) 안정을 위한 피고 측의 주장: \$ _____
- d) 날마다 방어비용으로 지불되는 총 금액: \$ _____
- e) 지불된 또는 미해결의 총 피해액: \$ _____

9. 만약 종결시 부과된 금액

배상(보상)금: \$ _____ 비용: \$ _____

10. 크레임에 대한 기술- 만약 미결 중이라면 추정 결정사항 포함하여: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고하십시오) 소환과 청구를 고착시키지 마시오.

a) 청구자에 기초한 청구에 대한 주장: _____

b) 사건의 설명: _____

나는 여기에 제출된 정보가 신청자의 전문적 책임보험 신청서가 되고 동일한 유형과 상황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될 것으로 인지한다. 이 크레임 부록은 구성된 것이 아니라 부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지불 책임의 고지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만일 귀사가 귀사의 현행 또는 소멸된 보험증권에 크레임의 통보를 하고자 한다면 귀사의 보험증권의 크레임 규정을 체크하고 귀사의 보험대표자로부터 충고를 구해보시오.

신청자의 공인된 서명

제목

날짜

마. LLOYD's에 의한 보험업자에 의한 건설업관리자
전문 책임보험 신청서 -Risk Supplement-

신청자 숙지사항

1. 이 양식은 만약 신청인이 실질적인 건설, 조립 또는 설립, 질문 3.C.i에 위험시 CM에 대해 언급한 것을 포함한 것을 현재 수행되는 어느 전문적 서비스와 연결했다면 완성될 수 있다.
2. 공간이 모자라면 종이를 더 쓰시오.
3. 빈칸을 남기지 마시오.

1. 이런 형태의 공사를 수행하는 법인의 이름: _____
2. 신청자가 이런 형태의 공사를 시작한 날짜: _____
3. a. 건설 과정(Operation)이 만약에 분리된 법인에 의해 수행되었다면 건설회사간의 관계를 설명해주시오.

- b. 만약 설계작업이 분리된 법인(Separate Entity)에 의해 수행되었다면 CM회사와 설계회사간의 관계를 기술하라. 또한 설계회사에 의한 건설 관찰(관측, 감시, 주시)을 기술하라.

h) 기타(기술): _____ \$ _____ \$ _____

질문 8~11에 대한 답이 모두 예라면 추가로 세부설명을 제공하라.
공사이름 그리고 표시배경이 포함되어 보험 수행인에게 보고되어 왔다.

8. 신청자는 실제 또는 추정된 결점, 또는 결함이 있는 기술 또는 결
점 또는 잘못된 기능을 하는 기구들을 아느냐?

_____ 예 _____ 아니오

9. 신청자는 허락 받지않은 지연, 예산 초과 또는 논의된 변경절차등
을 포함하는 10,000달러가 넘는 미해결의 건설 논쟁을 아느냐?

_____ 예 _____ 아니오

10. 신청자나 어떤 하청업자가 불이행, 계약은 완료하는데 실패하거나
파산 또는 그것들에 대한 유사한 징벌을 받은 적이 있는가?

_____ 예 _____ 아니오

11. 신청자나 어떤 하청업자는 만기된 보상 또는 만기되었다고 추정되
었기 때문에 어떤 구성원에 대하여 1만 달러가 넘는 청구 또는 선
취특권을 누린적이 있는가?

_____ 예 _____ 아니오

12. 신청자의 상업적인 일반책임보험과 포괄 책임보험보장에 기대하여
다음을 제공하라.:

	GGL	Umbrella
회사	_____	_____
기간	_____	_____
한도	_____	_____
공제(가능) 여부	_____	_____

13. 지난 5년 동안 시청자의 사업적 일반책임보험을 잃은 경력에 대한 요약을 추가하여 세부설명하라.

나는 여기에 제출된 정보가 신청자의 전문적 책임보험 신청서가 되고 동일한 유형과 상황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될 것으로 인지한다.

신청자의 공인된 서명

제목

날짜

附錄 II. 美國建設管理協會 標準契約書 中 保險 關聯 條項

가. 시공자가 CM인 경우: CM-발주자 계약(GMP-1호
양식: 1988년)

Article 8: 보험과 상호보상

8.1. CM의 책임보험

8.1.1. CM은 이 계약에 준한 CM의 서비스수행으로부터 일어 나가
나 기인될 수 있는 아래 설명된 크레임으로 부터 CM을 보호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지속할 것이다.

8.1.1.1. 그 공사가 수행되는 적용가능한 노동자 보상, 장애급부 그리고
그와 유사한 고용자 급부에 대한 법에 의한 크레임

8.1.1.2. 적절한 고용주 책임보험법하에 있는 CM의 고용인의 신체적 손상,
직업병이나 질병 또는 죽음때문에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크레임

8.1.1.3. CM의 고용인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의 신체적 손상이나 죽음으
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크레임

8.1.1.4. 일상적 개인적 손상 책임보험 보장에 보험을 든 (1) CM과 직
접 관계되어 고용된 사람의 범법의 결과 또는 (2) 기타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 입은 보통의 개인 손상책임보험의 보장에

의해 보험이 걸인 손해액에 대한 크레임

8.1.1.5. 공사 그 자체 이외에 사용에서부터의 손실을 포함해서 위험한
자산에 대한 손상이나 파괴때문에 생긴 손해액에 대한 크레임

8.1.1.6. 자동차의 소유권, 유지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어떤 사람
의 신체적 손상이나 죽음 또는 재산의 손해때문에 생긴 손해
액에 대한 크레임

8.1.2. 8.1.1.항에 의해 요구된 CM의 포괄적 일반 및 자동차 책임보
험은 적어도 다음의 책임한계 이상으로 성문화 될 것이다.

a. 포괄적 일반 책임

1. 개인적 상해:

_____ 각 발생
_____ 총계

2. 재산 손해:

_____ 각 발생
_____ 총계

b. 포괄적 자동차 책임

1. 신체적 상해

_____ 각 사람
_____ 각 발생

2. 재산손해

_____ 각 발생

8.1.3. 포괄적 일반책임보험은 요구된 모든 한도에 대한 단일 보험증권하에 조정되거나 초과 책임보험증권이나 보호 또는 포괄적 책임보험 증권에 의해 제공된 균형있는 기초적 보험 증권의 조합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8.1.4. 전술한 보험증권들은 그 보험증권하에 해줄 수 있는 보장이 발주자에게 서면통보후 적어도 30일 까지 취소되거나 실효될 없다는 예측을 담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계약을 보장하는 책임 승인 및 발주자를 그 보험 증권하의 부가적 피 보험자로 승인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실시될 그런 보장들을 보여주는 보험 증명서는 CM의 서비스착수에 앞서 발주자에게 보내질 것이다.

8.2. 건설업자의 위험보험

8.2.1. CM은 물리적 손실의 위험으로부터 공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할 책임을 질 것이다. 보험회사는 어떤 손실시에도 모든 공사에 대한 모든 복구비용을 제공할 것이다. 보험회사는 지정된 피보험자들로서 발주자, CM, 시공자, 그리고 그들의 하청업자까지를 포함할 것이며, 화재의 위험들로부터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져 줄 것이며 물리적 손실이나 절도, 만행, 붕괴, 고의의 기술 손괴, 횡단(transit), 홍수, 지진, 실험, 결함이 있는 설계, 난잡한 시공이나 불량자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질 것이다. CM은 평가된 복구비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보장한계를 증가할 것이다.

8.3. 재산보험

8.3.1. 만약 공사가 존재하는 건물에 부가하거나 인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 CM시공자, 하청업자들은 그런 건물 및 그 내용물들에 대하여 발주자의 재산보험보장을 위해 부가적 피보험자들로 지정될 것이다.

8.3.2. 만일 발주자가 그것의 실질적인 완성에 앞서 그 공사의 일부 또는 여러부분을 점유하거나 사용할때 그런 점유는 발주자가 그 구조물에 대한 재산보험을 들어서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증권에 승인함으로써 그런 점유에 동의한 공사에 대한 보험을 제공할때까지 일어날 수없다.

8.4. 발주자 보험

8.4.1. CM은 발주자에 의해 획득될 수도 있는 그 공사를 위한 어떤 보험증권에도 부가적 피보험자로서 지정될 것이다.

8.5. 통보와 회복

8.5.1. 발주자와 CM은 각각 그 공사를 획득함에 따라 모든 보험증권의 사본을 상대방에게 제공 할 것이다. 양측은 상대방에게 취소의 통보와 비갱신 또는 보증의 감축이나 보장의 제한에 대한 통보에 60일을 제공할 것이다.

8.6. 대위의 포기

8.6.1. 발주자와 CM은 서로에 대하여 그리고 기타 계약 당사자들,

설계 전문가와 자문인들, 중개인들 그리고 건설 중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CMAA 문서 GMP-2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재산보험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포기했다. 발주자와 CM은 각각 그들의 시공자들, 설계전문가들, 자문인들과 중개인들로부터 적절히 유사한 포기를 요구할 것이다.

8.7. 보장

8.7.1. 이 결과 CM은 발주자와 그 고용인들, 중개인들과 모든 청구, 수요, 소송과 신체적 손상과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액에 대한 피해액으로 부터 또는 누락에 대응하는 대표자들을 손해없이 유지한다,

8.7.2. 발주자는 이에 의하여 CM과 CM의 고용인들, 중개인과 모든 청구, 수요, 소송 및 발주자, 그 고용인들, 대표자들, 독립시공자, 자재 공급업자들, 시공자 그리고 설계전문가로부터 기인하거나 발생된 신체적 손상이나 재산 손해에 대한 손해액에 대한 대표자들을 보장해주고 손해없이 유지한다.

나. 시공자가 CM인 경우: CM-시공자 계약(GMP-3호 양식: 1993년)

article 10: 보험

10.1. 시공자의 책임보험

10.1.1. 계약자는 포괄적 일반책임 및 기타보험에 가입하거나 유지할

것이다. 그 보험은 공사가 수행되고 제공되는데 적절하며, 시공자, 하청업자, 그 공사를 수행 또는 제공하기 위해 직접, 간접적으로 고용된 자, 또는 아마도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어느 사람에 의해 공사가 수행 또는 제공되든간에 계약서하의 공사와 시공자의 기타의무의 수행 및 제공으로부터 생기거나 기인된 아래 설명된 것과 같은 크레임들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 10.1.1.1. 노동자 또는 근로자재해보상, 장애 급부금, 그리고 기타 유사한 고용자 급부 행위에 대한 크레임
- 10.1.1.2. 시공자의 고용자의 신체적 손상, 직업병 또는 질병 또는 죽음에 의한 손해액에 대한 크레임
- 10.1.1.3. 계약자의 고용인 이외의 사람의 신체적 손상, 병, 질병 또는 죽음으로 야기된 손해액에 대한 크레임
- 10.1.2. (a) 시공자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고용된 사람의 행동결과
(b) 기타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한 기타 다른 어떤 이유로 입은 개인적 손상보장에 가입된 손해에 대한 크레임
- 10.1.3. 공사 그자체 이외에 어느 곳에 있든 기간에 거기서부터 발생된 손실이나 이용을 포함한 위험한 재산의 손상 또는 파괴에 의해 야기된 손해액에 대한 크레임
- 10.1.4. 어떤 사람의 신체적 손상이나 죽음 또는 재산에 입은 손해 때문에 생긴 손해액에 대한 법또는 규정의 집행에서 야기된 크레임
- 10.1.5. 자동차의 소유, 유지 또는 사용으로 인한 어떤 사람의 신체적 손상이나 죽음 또는 재산피해에 기인한 손해액에 대한 크레임
- 10.1.6. 이 문단에서 요구된 보험은 특정한 보장을 포함하고 계약서

에서 제공되거나 법에 의해 요구된 것 중 더 많은 것에 의해 최소한의 책임 한계와 보장이 문서화될 것이다. 포괄적 일반 책임보험은 완료된 운영 보험을 포함하고 있다. 가입해야 할 보험증권에는 CM에게 적어도 3일 이전에 서면통보가 공증된 우편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공되고 있었던 보험 범위의 취소, 사실상의 변경, 갱신거부 될 수 없다는 규정이나 이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보험은 최종대금결제 및 시공자의 하자 보수를 위한 작업이 있을 때에는 그 이후에도 유효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최종불입후에 적어도 2년동안 그러한 완성된 운영보험을 지속할 것이고, 그런 보험을 마지막 불입시점과 그후로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당해보험의 지속에 대한 증거를 CM에게 제공할 것이다.

10.2. 계약적 책임보험

10.2.1. 10.1.항에 의해 요구된 포괄적 일반 책임보험은 이 계약 기간 내에 시공자의 의무(계약서, 책임증권)에 적용가능한 계약적 책임보험을 포함할 것이다.

10.3. 건설업관리자의 책임보험

10.3.1. 건설업관리자는 그들 자신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할 책임을 갖게 될 것이며, 선택적으로 이런 계약서하에 이루어지는 운영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크레임에 대비하여 CM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할 수 있다.

10.4. 재산보험

10.4.1. 시공자는 공사가 그것에 관하여 전액의 보험충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재산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할 것이다. 이 보험은 발주자, 시공자, 하청업자, CM설계전문가, 그 공사에 있어서의 CM과 설계전문가의 자문인, 피보험자나 부가적 피보험자구성원들로서 나열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양이 될 것이다. 시공자는 화재의 위험과 확장된 보장을 보험에 가입할 것이며 물리적 손실과 손해에 대한 “모든 위험”에는 절도, 만행, 고의의 기물 손괴, 붕괴 그리고 수해가 포함될 것이고 모험에 든 재산의 수리나 변위 증에 발생한 보험에 가입된 손실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한 손해, 손실, 비용이 포함된다.

10.4.2. 모든 보험증권이나 증명서 또는 시공자에 의한 가입과 유지에 대한 요구에 대한 기타 증거는 10.5.2.항에 의해 포기준비가 포함될 것이다.

10.4.3. CM이나 발주자는 시공자, 하청업자 또는 기타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재산보험에 가입하거나 유지할 책임이 없을 것이다.

10.5. 대위의 포기

10.5.1. CM과 시공자는 제공된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된 어떤 위험에 기인한 모든 손실 손해액에 대하여 각각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또한 하청업자, CM 그리고 그렇게 기인된 손실과 손해액에 대하여 피보험자라고 지정된 기타 모든 구성원들에 대하여 그런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위의 포기들 중 아무

도 수탁자로서 CM에 의해 유지된 보험을 가질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발행된 보험증권하에 지불가능하게 될런지도 모르는 그 권리를 확장하지 않을 것이다.

10.5.2. CM은 10.4.1항에 대한 답으로 제공된 보험증권에 의하여 보장된 위험에 의해 야기된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한 일차적 보장을 제공하고 보험에 가입한 모든 구성원을 보호하게 할 작정이다. 따라서 그런 모든 보험 증권들은 손실이나 손상의 지급시 효과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나 부가적 피보험자라고 승인된 구성원들에 대하여 회복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다. 만일 보험회사가 CM과 CM자문인들에 의해 그런 포기각서가 요구된다면 CM은 똑같이 획득할 수 있다.

10.6. 보험증권의 전달

10.6.1. 현장에서의 공사가 시작된 후에 시공자는 가입과 유지의 요청을 받은 보험과 보장의 한도에 대한 지시가 있는 보험증권을 CM에 전달해 줄 것이다.

10.7. 재산보험의 부분적 이용

10.7.1. 만약 CM이 그것의 실질적 완성에 앞서 그 공사의 일부 또는 몇몇 부분을 점유하거나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런 이용 또는 점유는 실행 및 제공 될 것이다. 보험회사가 재산보험에 관하여 승인된 통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 보장에 있어서의 변화가 효과적이라고 그런 사용이나 점유는 시작 되지 않을 것이다. 보험회사는 서면화하기전에

보험증권에 승인함으로써 재산보험 제공을 허가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보험은 그런 부분적 사용이나 점유때문에 취소
또는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CM인 경우: 발주자-CM 계약(A-1호양식: 1993년)

Article 9: 보험과 상호 보상

9.1. CM의 책임보험

- 9.1.1. CM은 이 계약에 따른 CM의 서비스 수행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거나 생길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아래에 설명된 크레임으로부터 CM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할 것이다.
 - 9.1.1.1. 노동자의 보상: 수행된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급부 그리고 기타 유사한 고용급부하의 크레임
 - 9.1.1.2. 고용인 책임보험법이 적용할 수 있는 CM의 고용인에 대한 신체적 손상, 직업병, 질병 또는 죽음으로 생긴 손해액에 대한 크레임
 - 9.1.1.3. 기타 CM고용자들이외 어떤 사람들의 신체적 손상 또는 죽음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크레임
 - 9.1.1.4. (1) CM과 직접 관련되어 고용된 사람의 범법의 결과 또는 (2) 기타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 입은 보통의 개인상해책임보험 보장에 의해 피보험자가 된 손해액에 대한 크레임
 - 9.1.1.5. 공사 그자체 이외에, 사용에서부터의 손실을 포함해서 위험한

재산에 대한 손상 또는 그의 파괴 때문에 생긴 손해액에 대한
크레임

9.1.1.6. 자동차의 소유권 유지 및 사용으로부터 야기된 어떤 사람의
신체의 손상 또는 죽음 또는 재산피해때문에 생긴 피해액에
대한 크레임

9.1.2. 9.1.1 문단에서 요구된 것과 같은 CM의 포괄적 일반 & 자동
차 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은 책임보험의 한계이상으로 문서화
될 것이다.

9.1.2.1. 포괄적 일반 책임

1. 개인적 상해:

_____ 각 발생
_____ 총계

2. 재산 손해:

_____ 각 발생
_____ 총계

9.1.2.2. 포괄적 자동차 책임

1. 신체적 상해

_____ 각 사람
_____ 각 발생

2. 재산손해

_____ 각 발생

9.1.3. 포괄적 일반책임보험은 요구된 모든 한계에 대한 단일 보험증
권하에 또는 초과 또는 포괄적 책임보험증권에 의해 제공된

균형있는 기초가 되는 보험증권들의 조합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다.

- 9.1.4. 전술한 보험증권들은 취소되거나 소멸되지도 않을 보장에 대한 예건을 담고 있을 것이며, 적어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서면통보가 주어진다. 그리고 이전 계약이나 그 보험증권들하에 부가적으로 피보험자인 발주자 승인을 보장하는 책임의 승인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보장을 설명되어 보는 보험증권은 CM서비스의 착수에 앞서 발주자로 채울수 있다.

9.2. 발주자의 보험

- 9.2.1. 발주자는 자신소유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할 책임을 갖게된다. 그리고 발주자는 선택적으로 공사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손실청구 또는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하기 위하여 그런 부가적인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할 수 있다.
- 9.2.2. 발주자의 대리인(Agent)으로서 CM은 공사에 대한 발주자와 계약자에 의해 획득된 어떤 보험 증권으로 부가적 피보험자로 지정될 것이다.

9.3. 통보와 회복

발주자와 CM은 각각 공사를 위해 획득한 보험증권들을 감축의 보증 또는 보장의 제한에 대한 서면통보에 30일을 제공할 것이다.

9.4. 대위의 포기

발주자와 CM은 앞서 설명한 계약서에서 어떤 재산보험에 의해

보장된 건설기간동안에 입은 계약자, 디자인전문가, 자문인들 기타 대리인들(Agents)과 기능인의 피해액과 각각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발주자와 CM은 각각 그들의 계약자, 자문인들 그리고 대리인들(Agents)로 부터 유사한 포기를 요구할 것이다.

9.5. 보장

9.5.1. CM은 손해를 배상하고 발주자, 설계전문가 고용인들을 CM이 책임있고,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소홀한 행동으로 신체손상 재산권 손상 등에 대한 크레임, 소송 들로부터 보호한다. 물론 CM의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공백에 따른 문제로부터도 보호한다. 그러나 CM은 그의 관계지역이 아닌 공사지역에서 일어난 재산권 손해배상 또는 직접적 제어가 아닌 공사지역에서의 손해배상은 책임지지 않는다. CM이 손해 배상하는 총량은 발주자가 구매한 총보상의 범위를 넘지 않을 것이다.

9.5.2. 발주자는 디자인전문가를 보상하게 할 것이고 CM, 그의 고용인, 대리인들(Agents) 그리고 CM 9.5.1항에서 설계전문가를 위한 보상으로 제공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범위의 대리인(Agents)와 대표자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

9.5.3. 발주자는 이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CM과 그 고용인, 대리인들(Agents), 대표자들, 독립계약자, 물품공급자, 계약자와 디자인 전문가의 소홀한 행동이나 태만으로 야기된 또는 그 결과로서 생긴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신체적 손상과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액을 손해 없이 책임을 진다.

9.5.4. 발주자는 계약자로 하여금 보상받게 할 것이고 모든 크레임,

수요, 소송 손래 필연의 손해와 개인적 손상이나 재산손해, 비용 그리고 CM에 대하여 주장된 비용 및 요금 그리고 계약자 그의 고용인, 대리인들(Agents)과 그 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대표자들에 의한 태만한 행동이나 태만으로부터 생긴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재산피해에 대한 대표자들을 피해없이 책임을 진다.

라. 발주자의 대리인이 CM인 경우: 발주자-시공자 계약(A-3호 양식, 1993년)

Article 12: 책임 및 재산보험

12.1. 시공자의 책임보험

12.1.1. 계약자는 포괄적 일반책임 및 기타보험에 가입하거나 유지할 것이다. 그 보험은 공사가 수행되고 제공되는데 적절하며, 시공자, 하청업자, 그공사를 수행 또는 제공하기 위해 직접,간접적으로 고용된 자, 또는 아마도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어느 사람에 의해 공사가 수행 또는 제공되든간에 계약서하의 공사와 시공자의 기타의무의 수행 및 제공으로부터 생기거나 기인된 아래 설명된 것과 같은 크레임들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12.1.1.1. 노동자나 기술자의 보상, 장애급부 그리고 기타 유사한 고용자 급부 Acts에 대한 크레임.

12.1.1.2. CM의 고용인의 신체적 손상, 직업병이나 질병 또는 죽음때

문에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크레임

12.1.1.3. CM의 고용인 이외 다른 어떤 사람의 신체적 손상 병 또는 질병이나 죽음때문에 발생한 피해액에 대한 크레임

- 12.1.2. a) 일상적 개인적 손상 책임보험 보장에 보험을 든 시공자와 직접 관계된 고용과 관계된 사람의 행위의 결과 또는
- b) 기타 다른 어떤 이유로 기타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 입은 보통의 개인 손상책임보험의 보장에 의해 보험이 걸인 손해액에 대한 크레임

12.1.3. 공사 그자체 이외에, 사용에서부터의 손실을 포함해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위험한 재산에 대한 손상 또는 그의 파괴 때문에 생긴 손해액에 대한 크레임

12.1.4. 어떤사람의 신체적 손상이나 죽음으로 인한 피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법 집행이나 regulation에서 발생한 크레임

12.1.5. 자동차의 소유권, 유지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어떤 사람의 신체적 손상이나 죽음 또는 재산의 손해때문에 생긴 손해액에 대한 크레임

12.2.1. 12.1항에 의해 요구된 포괄적 일반책임보험은 이 계약기간하에 시공자의 의무(obligations)에 적용 가능한 계약적 책임보험을 포함될 것이다.

12.3. 재산보험

12.3.2. 계약자에 의해서 가입 및 유지 요구된 모든 보험증권이나 증명서 또는 그것에 관한 다른 증거는 12.6항에 따라 포기 예

측을 포함 할 것이다.

12.3.3. 발주자는 시공자, 하청업자 또는 그 공사에 참여한 나머지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할 책임이 없다.

12.3.4. 만약 발주자가 그것의 실질적 완성에 앞서 그 공사의 일부 또는 몇몇 부분을 점유하거나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런 이용 또는 점유는 실행 및 제공 될 것이다. 보험회사가 재산보험에 관하여 승인된 통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 보장에 있어서의 변화가 효과적이라고 그런 사용이나 점유는 시작 되지 않을 것이다. 보험회사는 서면화하기전에 보험증권에 승인함으로써 재산보험 제공을 허가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보험은 그런 부분적 사용이나 점유때문에 취소 또는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12.4. 보험증명서의 전달

12.4.1. 현장에서의 공사가 시작된 후에 시공자는 가입과 유지의 요청을 받은 보험과 보장의 한도에 대한 지시가 있는 보험증권을 CM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12.5. 발주자 보험

12.5.1. 발주자는 자신소유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할 책임을 갖게된다. 그리고 발주자는 선택적으로 공사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손실청구 또는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하기 위하여 그런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할 수 있다.

12.6.1. 발주자와 시공자는 제공된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된 어떤 위

험에 기인한 모든 손실 손해액에 대하여 각각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또한 하청업자, CM, 설계전문가, CM 및 설계전문가의 자문인들 그리고 그렇게 기인된 손실과 손해액에 대하여 피보험자라고 지정된 기타 모든 구성원들에 대하여 그런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위의 포기들 중 아무도 수탁자로서 발주자에 의해 유지된 보험을 가질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발행된 보험증권하에 지불가능하게 될런지도 모르는 그 권리를 확장하지 않을 것이다.

- 12.6.2. 발주자는 10.3.1항에 대한 대답으로 제공된 어떤 보험증권이 모든 피보험 당사자를 보호하고 위험에 의해서 발생된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한 일차적 보상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그런 보험증권들은 어떤 현실이나 손해의 사건에 있어서 그 효과에 대한 예측을 포함할 것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나 부가적 피보험자라고 승인된 구성원들에 대하여 회복할 권리가 없다. 만약 피보험자가 CM, 설계전문가, CM 및 설계자문인에 의해 서명된 별도의 포기 각서를 요구한다면 발주자는 같은 것을 획득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포기 각서가 어떠한 하청업자에 의해 요구된다면 시공자는 똑같은 것을 획득할 수 있다.

마. 발주자의 대리인이 CM인 경우: 발주자-설계자 계약(A-4호 양식: 1993년)

Article 9 보험/상호 손해배상

9.1. 설계 전문가의 책임보험

9.1.1. 일반책임: 설계전문가는 근로자의 보상청구, 근로자 및 근로자 이외의 자의 신체적 상해, 질병, 사망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권의 손상에 따르는 크레임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한다.

9.1.2. 전문책임: 설계 전문가는 부주의 또는 피보험자의 법적의무불이행에 따른 크레임 및 소송에 대해 보호하는 보험을 획득하고 유지한다. : 그러한 책임보험은 발주자가 요구한 기간 및 공제액을 담당한다. 보험 증명서는 발주자에게 전달된다. 설계 전문가는 독립전문기술자, 건축가, 자문역이 발주자가 결정한 양, 공제액, 기간의 일정범위의 책임보험을 보유하게 된다.

9.2. 발주자 보험

9.2.1. 발주자는 책임보험을 구매할 책임이 있다. project에 따르는 소송에 대해 발주자 자신을 보호할 option으로 추가보험을 들 수도 있다.

9.2.2. 설계 전문가는 project 발주자가 가입한 보험증권의 추가적인 피보험자의 하나로서 지정된다. 설계 전문가의 요구에 따라

발주자는 추가된 피보험자로서 설계전문가가 포함되어야한다는
증명서를 주어야한다.

9.3. 대위 포기증서

발주자와 설계 전문가는 공사계약의 일반조건, CMAA서류 A-3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추가상황에 정해진
재산권 보호에 따라 포함되는 손해배상에 대해 서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시공자, CM, 독립된 전문 설계자, 건축가, 자문역, 하
청업자, 조달업자, 대리인 및 피해자의 피고용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발주자와 설계 전문가는 독립 전문설계자, 건축가, 자문
역, 하청업자, 조달업자, 대리인들로 부터 동등한 권리포기를 요구
한다.

9.4. 손해배상

9.4.1. 설계전문가는 발주자, CM과 그 대리인 및 피해자의 피고용인
과 고영인 대리인에게손해배상하고 신의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고 본 계약하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
전문가의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소홀한 행동에 기인하여 설계
전문가의 책임이 있는 신체손상 재산권 손상 등에 대한 크레
임, 소송 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물론 설계전문가의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공백에 따른 문제로부터도 보호한다. 그러나
설계전문가는 설계전문가의 소유하에 있지 아니하는 또한 설
계전문가의 지시가독하에 있지 아니한 공사지역에서 일어난
재산권 손해배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설계전
문가는 손해배상하는 총액은 본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에 의해
지불된 총보상금액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 9.4.2. 발주자는 설계 전문가이 CM에게 9.4.1에서 제공한 손해배상과 같은 범위로 CM이 손해배상하고 설계 전문가 피고용인을 보호하게 한다.
- 9.4.3. 발주자는 손해를 배상하고 설계 전문가, 피고용인, 대변인을 발주자가 책임있고 소홀한 행동 또는 발주자, 피고용인, 조달업자, 시공자, CM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신체상해, 재산손상에 대한 크레임, 소송, 피해보상으로부터 보호한다.
- 9.4.4. 발주자는 시공자가 손해배상하고 설계 전문가를 시공자가 책임있고 부주의 또는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피고용인, 대변인 등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체손상 또는 재산권 피해에 대한 크레임, 소송에 대해 설계 전문가를 보호한다.

Article 10 종료와 변경

10.1. 종료

- 10.1.1. 설계 전문가에게 소유주가 서면통지 7일후 합의는 종료될 수 있다.
- 10.1.2. 계약은 해지하는 측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7일간 서면 통지후에 양편 모두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 Project가 법원의 명령, 사법권 있는 공공기관의 명령 또는 정부의 활동에 의해 전체적 부분적으로 60일이상 정지된다면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 10.1.3. 10.1.1에 의한 해지의 경우, 설계 전문가는 해지일까지의 근무기간동안의 배상을 받는다. 독립 전문엔지니어, 건축가 및 다른 자문역은 종료비용을 배상받는다. 종료비용은 종료이

전, 종료중 및 종료에 따르는 비용 및 종료시 총배상금의 비율로 결정되는 액수이다.

10.1.3.1. 종료가 설계 및 입찰단계 일때는 20%

10.1.3.2. 종료가 공사시행단계 일 경우 10%

10.1.4. 10.1.2의 해지의 경우, 설계 전문가는 종료시까지 근무에 배상을 받는다. 독립도니 전문 엔지니어, 건축가, 자문역은 종료비용을 배상받는다. 10.1.3.1 및 10.1.3.2에서 계산된 액수는 소유주가 해지하더라도 지급되지 않는다.

10.2.1. 발주자는 서면으로 설계 전문가에게 발주자의 편리, 또는 발주자, CM, 설계 전문가의 제어를 넘는 공사의 중단에 따라 부분 또는 전체 설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다.

附錄 Ⅲ. 農業協同組合法 關聯條項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다른 법령의 적용배제)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양곡관리법 제18조 및 제 19조, 잠업법 제4조, 철도소운 송업법 제3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의 2(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58조 제1항 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고자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방법·공제규약·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액의 산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59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나. 농업협동조합공제규정기재사항에 관한 규칙

제2조(공제규정 기재사항)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제사업의 범위·종류, 피공제자, 공제목적과 공제계약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나. 공제금액 및 공제기간에 관한 사항

다. 공제계약의 체결절차에 관한 사항

라. 공제료의 수납·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마. 재공제계약 및 재재공제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바. 공제금액 공제사업의 종류와 공제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제금의 지급사유

나. 공제계약의 무효원인

다. 공제자의 면책사유

라. 공제자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마.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받는 손실

바.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의 원인과 해지할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

3. 공제료에 관한 사항

가. 예정사고율 또는 예정사망율에 관한 사항

나. 예정사업 비율에 관한 사항

다. 예정이율에 관한 사항

라. 공제료(부가공제료·위험공제료 및 적립부분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마. 미수공제료의 계상범위 및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 기타 준비금에 관한 사항

가. 손해공제사업에 있어서는 미경과공제료적립금과 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 나. 장기공제사업에 있어서는 공제료적립금·미경과공제료적립금 및 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 다. 계약자배당준비금에 관한 사항
- 라. 지급준비금액에 관한 사항

다. 보험업법 관련조항

제5조(보험사업의 허가) ① 보험사업(매매·고용·도급 기타의 약관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상호회사와 외국보험사업자에 한하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본다. ③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보험약관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

④ 재무부장관은 보험시장의 안정유지와 경제력집중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여 보험사업의 허가를 하거나 그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208조(공제사업에 대한 협의) ① 재무부장관은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제사업과 이법에 의한 보험사업과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附錄 IV. 建設技術管理法 關聯條項

제41조(罰則)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함으로써 건설업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20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등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1조의 2(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41조 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41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附錄 V. 專門職 責任保險 (監理部門 適用例)

가. 모트 맥도널드 그룹 전문직업인 면책보험 증권

패사는 전문직업인 면책보험이 다음의 세부항목과 같이 발효하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피보험자: 보험자에게 모두 고지된 바와 같이, 해외합작회사를 포함한 모트 맥도널드그룹 주식회사, 합자회사 및 계열회사 들

전문직업: 피보험자의 감리기술자들과 여타 모든 직업인의 활동

보험기간: 1995년 6월 1일부터 1996년 5월 31일까지, 12개월

부보대상: 전문직업인의 업무태만

면책한도: 건당 ???

공 제 액: 매건당 ???

특별약관: 대기오염/환경오염에 대한 위험부담: 재보험자 비용과 경비의 누계액을 포함하여 ???까지 면책됨.

거리상의 범위: 전세계, 단, 계약 해당지역이 미합중국 혹은 캐나다인 경우 면책은 재보험사 비용과 경비의 누계액을 포함하여 ???까지 면책됨. 일반시장 제외조건

보 험 자: 로이드 재보험사 및 여러 보험회사들

단서조항: 보험증권에 포함된 보험계약, 특약, 약관

나. BROKERS' CERTIFICATE OF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피보험자명 및 주소: RENDEL PALMER & TRITTON LIMITED
61 SOUTHWARK STREET, LONDON
SE1 1SA

자문 사업부문: 컨설팅 엔지니어

약정번호: 45C4071

우리 보험중개인들은 상기에 명시된 자문회사가 현재 Lloyd's
와 여러 다른 보험회사에 1996년 5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되
어 있음을 보증합니다.

각각의 청구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최소 ???파운드입니다. 그러
나, 오염위험담보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한도는 위액수의
두번 중복 적용이 됩니다(???파운드).

피보험자에 의한 각각의 청구에 대한 초과액은 ???파운드이며
계약기간 중에는 이 액수가 ???파운드를 넘지 않으며, 이 이후
에는 각각의 청구에 ???파운드입니다.

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의 의무는 여럿이지만 서로 연관되지
않으며 각각의 계약 범위에 한정됩니다. 보험계약자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전부 또는 부분적인 계약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타보험자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이 약정은 이 안에 포함된 보험 합의사항, 제외사항, 조건사항
에 준합니다. 상기내용은 서명당일부터 유효하며, 어떠한 변경
사항에 대한 추후 조연의 의무가 이 서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